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8.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8.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 2018』

I 주요 내용 요약 / 3

II 거시경제 동향(Macroeconomic background) / 5

III 세수 동향(Tax revenue trends) / 8

IV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Tax policy reforms) / 12

1.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SCs) 12
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및 기타 법인세 19
3. 부가가치세(VAT/GST) 및 개별소비세(Excise Taxes) 25
4. 환경세(Environmentally-related Taxes) 32
5. 재산세(Property Taxes) 36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 41

1. 일부 국가의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쿼터 해제 41
2. 각 주정부의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판매세 부과안 도입 42
3. 세법개정안(Tax Reform 2.0) 하원 통과 45
4.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50

II 유럽 / 53

1. 네덜란드 53
 - 가. 숙박공유활동에 대한 과세방안 발표 53
 - 나.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54
2. 노르웨이 - 2019 예산안 발표 57
 - 가. 법인세 57
 - 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58
3. 덴마크 - 국제조세 관련 일부 법령 개정 60
4. 독일 62
 - 가.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62
 - 나. 2018년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 64
5. 룩셈부르크 66
 - 가. 조세회피방지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 66
 - 나.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69
6. 벨기에 71
 - 가. 톤세제도 개정안 공표 71

목 차

나. Action 4 권고사항 시행시기 변경안에 합의	72
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포	73
라.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시행	74
7. 스웨덴	75
가. 조세회피방지 강화 법안 발의	75
나. 2019년 예산안 발표	77
8. 스위스	78
가. 의회 「법인세법 개정안」(TP 17) 최종 채택	78
나. OECD Global Forum의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 초안 채택	80
9. 스페인	82
가. 2018년 예산법안 의결	82
나. 2019년 예산안 초안 발표	85
다. 조세회피 대응 법안 발표	89
10. 아일랜드	92
가. 「법인세법」 개정방향(Corporate Tax Roadmap) 발표	92
나. 2019년 예산안 발표	93
11. 영국	95
가. 2017~2018년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 세수 관련 통계 발표	95
나. 2018년 예산안 발표	98
12. 폴란드	102
가.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102
나. 의무보고규정 도입안 상원 통과	103
다. BEPS Action 5, 12의 권고사항 최종 입법	105
13. 프랑스	106
가.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발표	106
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기	107
다.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108
14. 핀란드	111

가. 2019년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111
나. CFC rule 정부 개정안 발표	112
다. 유한책임회사 과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113
라. 투자펀드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115
15. EU	116
가.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 15% 유지 결정	116
나.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s)에 대한 한시적 부가세 감면	117
다. 2021년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규정 관련 세부내용 발표	117
16. OECD	118
가. G20 재무장관에 대한 조세보고서 발표	118
나. 2018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 출간	122
다.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을 위한 통합 조약문 발표	125
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발표	126
마. G20 정상회의를 위한 국제조세보고서 발간	128
바. 2018년 소비세 동향 보고서(Consumption Tax Trends 2018) 발표	131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36

1. 뉴질랜드	136
가. BEPS 관련 법안 확정	136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138
다. 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부여에 대한 법안 발표	139
2. 중국	139
가. 영세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확대	139
나. 개인소득세 기본소득공제와 세율구간 변경에 관한 통지 발표	141
다.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발표	143
라. 수출재화 증치세 등 환급과정 신속화 조치 및 환급률 조정 발표	143

목 차

다.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에 관한 통지 발표	145
바. 개인소득세 특별공제항목 신설 발표	147
사.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 적용에 관한 통지 발표	148
아.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상향 조정	149
3. 호주	150
가.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국회 제출	150
나. 과소자본세제 개정안 발표	151
다. 원천징수불이행 관련 비용공제 부인 법안 발표	153
라.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대상 제한 법안 총독 재가	153
마.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 의회 통과	154
4. 홍콩 - BEPS 및 이전가격 규정 확정	155

IV

기타 / 158

1. 멕시코 - 디지털세 도입안 발표	158
2.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전자서비스 관련 부가세 과세 수정안 발표	159

제1부

〈표 IV-1〉 2017년과 2018년에 도입된 소득세 세율 개정사항	14
〈표 IV-2〉 2017년과 2018년에 도입된 소득세 과세기반 개편의 국가별 분류	15
〈표 IV-3〉 국가별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개편 현황(2017년, 2018년)	17
〈표 IV-4〉 국가별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개편 현황(2017년, 2018년)	18
〈표 IV-5〉 법인세율 변화(2017년, 2018년)	21
〈표 IV-6〉 법인세의 과세기반 변화	22
〈표 IV-7〉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관련 세제개편 현황	28
〈표 IV-8〉 주요국의 주류 및 담배 제품 인상	31
〈표 IV-9〉 국가별 에너지 사용 관련 세제개편 내용	35
〈표 IV-10〉 국가별 재산세 개편 내용	38

제2부

〈표 I-1〉 미국의 주정부별 외국판매자의 판매세 납세의무자 요건 및 시행시기	43
〈표 I-2〉 미국의 장기자본이득세율 및 일반소득세율(2018년 기준)	46
〈표 II-1〉 2018~2019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4
〈표 II-2〉 2021년 이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55
〈표 II-3〉 법인세율 개정안	55
〈표 II-4〉 소득구간별 세율 비교	59
〈표 II-5〉 독일의 지분율 과다변동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개정사항	65
〈표 II-6〉 사회보장부담금 세부 항목별 요율	77
〈표 II-7〉 스위스의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 TP 17 채택 연혁	79

표 목 차

〈표 II-8〉 현행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84
〈표 II-9〉 개정안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84
〈표 II-10〉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부유세율	87
〈표 II-11〉 아일랜드의 EU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계획	92
〈표 II-12〉 연도별 이전가격 과세 실적	96
〈표 II-13〉 우회이익세 연도별 세수입	98
〈표 II-14〉 소득공제 금액 한도 및 기본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상한	101
〈표 II-15〉 특허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 대상 소득의 산정 방식	110
〈표 II-16〉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126
〈표 II-17〉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 비중	131
〈표 III-1〉 중국의 과학기술기업 판단 기준	141
〈표 III-2〉 개정된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142
〈표 III-3〉 주요 환급률 조정 품목	144
〈표 III-4〉 중국의 환경보호세율	145
〈표 III-5〉 대기 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	146
〈표 III-6〉 호주의 법인세율	154

그림목차

제1부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실업률	6
[그림 III-1] 국가별 국민부담률(2016년)	9
[그림 III-2] GDP 대비 세수 및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2015~2016년) 비교	10
[그림 III-3]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수 구성(2000년, 2007년, 2015년)	11
[그림 III-4] 세목별 세수 비중 증감 추이(2007~2015년)	11
[그림 IV-1]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 추이(2000~2017년)	13
[그림 IV-2]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의 변화	20
[그림 IV-3] 주요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2000년, 2008년, 2016년)	26
[그림 IV-4] OECD 총세수 대비 소비세 세수 비중의 변화(1975~2015년)	26
[그림 IV-5] OECD 평균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의 변화 추이(1975~2018년 1월)	27
[그림 IV-6] 국가별 환경세 부담률(1995년, 2005년, 2014년)	33
[그림 IV-7] 휘발유와 경유 실효세율의 국가별 비교	34
[그림 IV-8] 국가별 GDP 대비 재산세 수입의 비중(2000년, 2016년)	37

제2부

[그림 II-1] APA 체결 건수 및 평균 소요 기간	97
[그림 II-2] MAP 타결 건수 및 평균 소요 기간	97
[그림 II-3] 2018년도 OECD 회원국의 표준부가가치세율	133



제1부

OECD의 『Tax Policy Reform 2018』



I 주요 내용 요약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조세개혁 사례 및 과거 조세정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보고서로 2016년 첫 발간 이후 올해 세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임
 - ▶ 조사대상국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총 35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총 38개국임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 제1장: 조사대상국의 최근 거시경제 상황¹⁾
 - ▶ 제2장: 조사대상국의 최근 세수 추이와 세목별 비중
 - ▶ 제3장: 조사대상국의 최근 주요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

- 최근 주요 세제개편을 한 국가로 아르헨티나, 프랑스, 라트비아, 미국, 벨기에가 있으며, 이들 국가는 주로 투자를 지원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편에 중점을 둠
 - ▶ 투자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하여 개인의 자산 및 자본소득 관련 과세를 개정함
 - ▶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함

-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주요 조세개혁 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득세 감면 추세는 지속되었으며,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경향이 존재함
 - 일부 국가들이 금융소득(financial income)에 대한 세금감면정책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본소득(capital income)과 관련해서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임

1) 세수 및 조세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거시경제 상황을 제시함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CIT)

- 법인세율이 높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가속화하는 추세를 보임
- 투자지원 목적으로 감가상각비 공제 확대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R&D 및 혁신 관련 조세혜택과 관련해서는 미미한 개정이 이루어짐
-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BEPS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이행 상황은 국가마다 상이함
-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경제 과세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나 각국의 견해가 달라 아직까지는 공통된 과세방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조치 도입으로 복잡성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부가가치세 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나, 다수의 국가에서 세무행정 개선 및 탈세방지(anti-fraud measures) 측면에서 조치를 취한 결과 세수가 증대됨

▶ 개별소비세(Excise Tax)

-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소비세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나 대마초 등 유해제품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소비세들이 도입되고 있음

▶ 환경세(EnvIRONMENTALLY-related Tax)

-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처리비용을 기반으로 과세를 균등하게 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짐
- 환경 개선의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닐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세제개혁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재산세(Property Tax)

- 2018년에는 재산세 개정 건수 및 범위에 있어서 소수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미국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면세기준금액 2배 인상, 프랑스의 부유세 폐지, 벨기에의 증권계좌에 대한 부유세 과세가 있음

II 거시경제 동향(Macroeconomic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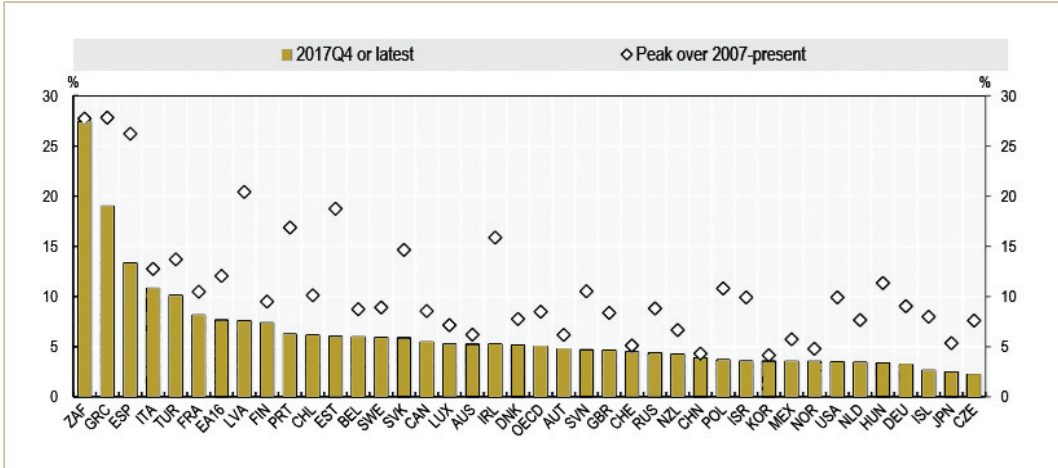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2017년까지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생산성, 투자, 노동시장, 공공재정 및 소득불평등과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세 수입 및 정책의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2017년에는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점차 확대됨

 - ▶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생산성과 임금, 소비 및 투자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임
 -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7% 상승한 값임
 - ▶ 세계 무역의 반등은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들과 긴밀하게 연계된 소규모 개방경제국(Small Open Economy)의 성장에도 영향을 줌
 - ▶ 미국 역시 통화정책, 자산가격의 상승, 꾸준한 실질소득의 증가로 성장률이 반등함
 - ▶ 중국의 강력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신흥시장국(Emerging Market Economies: EMEs)의 상승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상품 수출국들과 같은 외부 수요의 증가를 북돋음
- 2017년에도 실업률 하락과 고용성장으로 노동시장 상황의 개선은 계속 이어졌으나, 국가 및 고용 유형별로 회복 수준이 고르지 못함

 - ▶ 2017년 말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은 5.5%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임
 - ▶ 장기 및 청년 실업,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관련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1-1] OECD 회원국의 실업률

(단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3 database; OECD calculations; OECD, *Tax Policy Reforms*, p. 16, Figure 1. 3, 2018. 재인용

■ 임금 상승률이 다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소비성장이 둔화됨

- ▶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2017년 가계소득 성장은 미미했으며, 이는 소비성장에도 영향을 미침
- ▶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물가는 일시적으로 2017년 가계의 구매력을 감소시켰으나, OECD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수준보다는 낮게 유지됨

■ 투자 증가로 인해 시장이 광범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 수준은 여전히 낮음

- ▶ 2017년에는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액 수준이 회복되었고,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민간 투자 증가율이 2010년 이후 평균을 상회함
 - 선진국의 총투자는 3.6%, 기업 투자는 4.5% 증가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고, 불확실성하에서의 비즈니스 역동성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다수의 국가에서 예산 수지가 개선되고, 공공부채 비율이 안정화되거나 감소함

-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0년 97%에서 2017년 약 111%로 상승하였으나, 지난 3년간 유럽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임

- ▶ GDP 대비 예산적자는 2009년 8.5%에서 2017년 2%로 감소함

- ▣ 2010년 이후 조세 지출 및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확장됨에 따라 경기가 호전되고 실업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1년과 2015년 사이 가처분 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증가함
 - ▶ 소득 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평균 및 최하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실질적으로는 많은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에 미미한 증가만 있었음
 - ▶ 201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시장소득 불평등 정도는 국가별로도 차이가 큼
 -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국가는 핀란드였으며,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멕시코임

III 세수 동향(Tax revenue trends)

- 이 장에서는 35개의 OECD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이하 “국민부담률”) 및 세수 구조 등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세수 동향을 설명하고자 함
- OECD 회원국의 2016년 국민부담률은 34.3%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여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1965년 이후로 50년간 10%p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G20국 중 14개국과 OECD · EU 동시 가입국에서도 국가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 국민부담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건전화 조치(fiscal consolidation measures) 및 재정을 증가시키는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단 최근에는 세금감면을 통해 기업 및 가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익률과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세금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함
- 2016년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45.9%)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1.8%)임(그림 III-1 참조)
 - ▶ 7개국²⁾에서 GDP 대비 조세 수입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국에서 30~40% 가량의 수준을 보임
 - 한국은 GDP 대비 조세 수입이 약 26%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함
 - ▶ 1인당 GDP가 높은 국가³⁾들이 1인당 GDP가 낮은 국가⁴⁾들에 비해 높은 국민부담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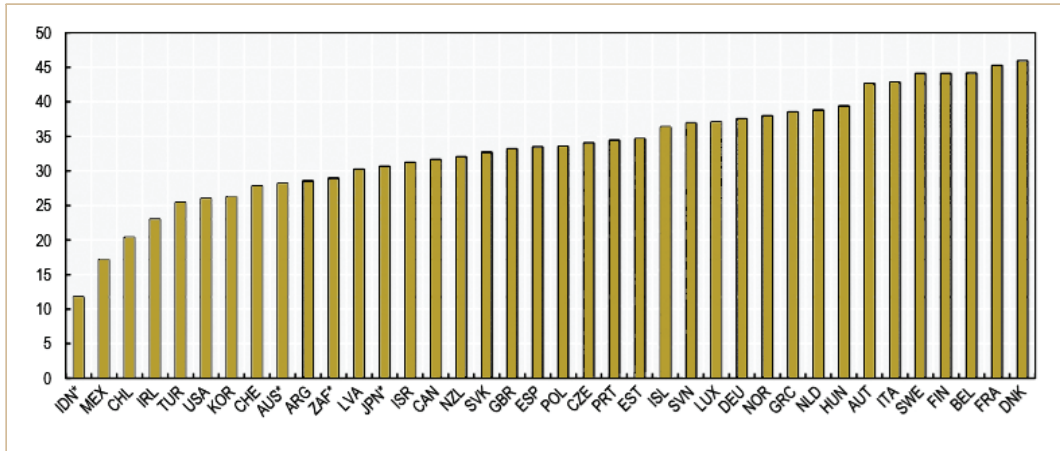
2)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3) 스칸디나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4)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그림 III-1] 국가별 국민부담률(2016년)

(단위: %)



주: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함

자료: OECD an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28, Figure. 2, 1, 2018, 재인용

■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20개국에서 국민부담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부담률 상승세는 그리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 및 재화·서비스에 대한 세수가 증가한 데서 기인함

- 네덜란드, 라트비아, 한국, 폴란드도 국민부담률이 1%p 이상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14개국⁵⁾에서 국민부담률이 낮아졌으나, 그 차이가 1%p를 넘는 감소는 없어서 전반적인 감소폭은 2015년보다 작았음

- 14개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명목 소득세수의 증가폭이 명목 GDP의 증가폭보다 적어 국민부담률이 낮아졌으며, 노르웨이는 세수와 GDP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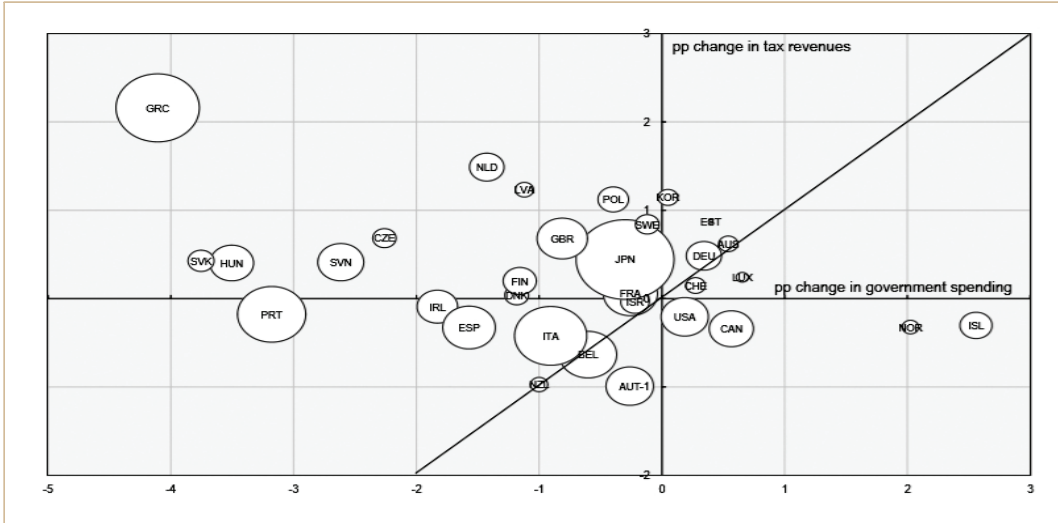
■ 공공지출이 감소하고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정부지출 수준과 수입 수준의 격차가 좁혀져 공공재정 개선에 기여함

▶ [그림 III-2]를 통해 다수의 국가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변화량이 음(-), 세수 비중 변화량이 양(+)⁶⁾인 2사분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5)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그림 III-2] GDP 대비 세수 및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2015~2016년) 비교

(단위: %)



- 주: 1.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량을 x축, 세수 비중의 변화량을 y축에 표시함
- 2. 각국 원의 크기는 2015년 총정부 부채를 의미함
- 3.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의 값은 존재하지 않음
- 4. 호주와 일본은 2014~2015년의 변화값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2 Database and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29, Figure. 2, 2, 20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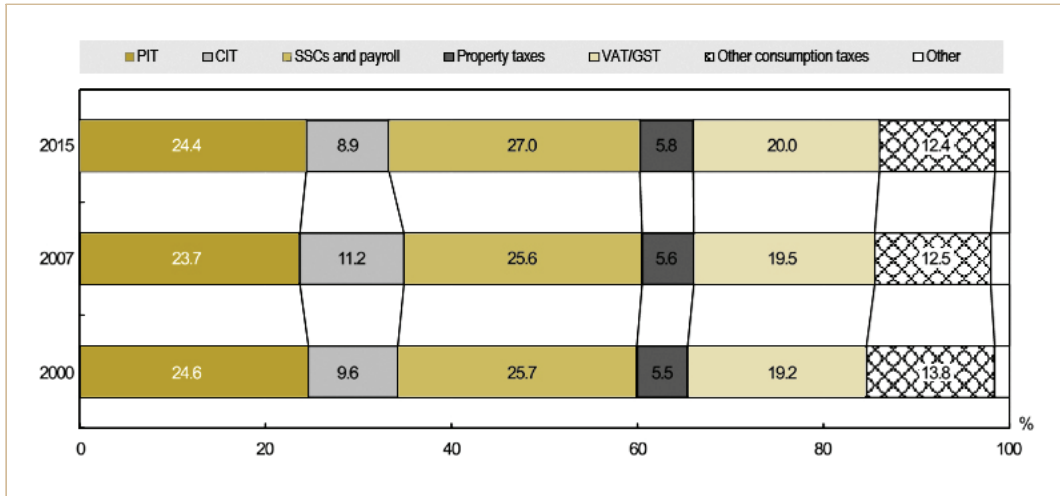
2015년 OECD 회원국의 세수 중 각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보장기여금이 27.0%, 소득세가 24.4%, 부가가치세가 20.0%로 사회보장기여금(SSCs), 소득세(PIT), 부가가치세(VAT)가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그림 III-3) 참조)

- ▶ 금융 위기 직후 2009년에 사회보장기여금(SSCs)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으로 두 세목에 의한 세수가 증대함(그림 III-4) 참조
 - 2010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SSCs)의 세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임
- ▶ 소득세율 인상 및 세수기반 확대 조치로 인해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많은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추세임
- ▶ 이외에도 세수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은 소비세 12.4%, 법인세 8.9%, 재산세 5.8%가 있음

- 법인세 비중은 2007년 11.2%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10년 8.8%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I-3] OECD 회원국의 평균 세수 구성(2000년, 2007년,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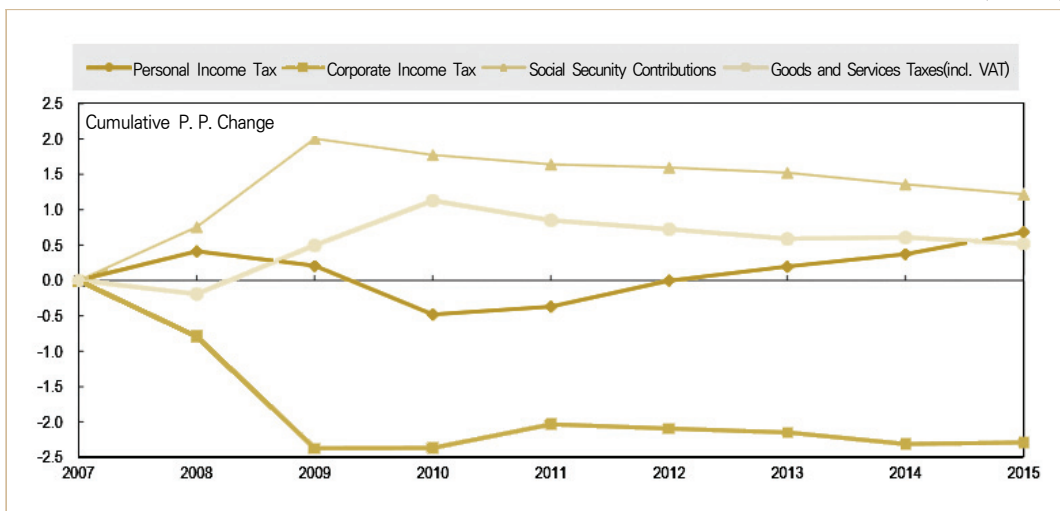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39, Figure. 2. 13, 2018. 재인용

[그림 III-4] 세목별 세수 비중 증감 추이(2007~2015년)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Tax Policy Reforms 2018*, p. 40, Figure. 2. 14, 2018. 재인용

IV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Tax policy re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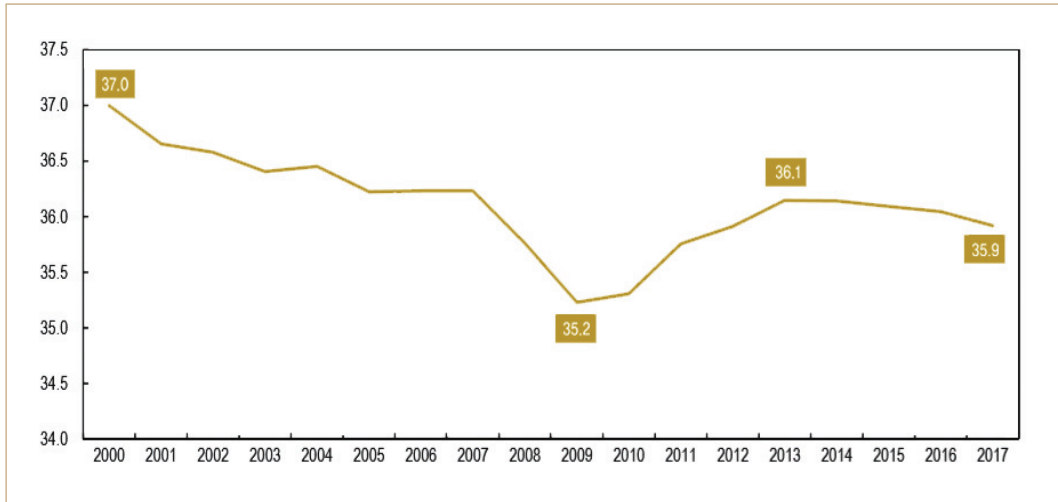
- 이 장에서는 OECD 회원국 및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근 조세 개혁에 대한 개관을 제공함
 - ▶ 최근의 주요 세제 개편과 국가별 조세정책 동향을 파악함
 - ▶ 각국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2018 연간 조세정책 개선 질의서 (2018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해당 질의서는 응답 국가들의 개정내용 및 개정근거, 예상 세수 효과 및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SSCs),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재산세의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논의를 살펴봄

1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 및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SCs)

-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던 소득세는 최근 감소 경향을 보임 (그림 IV-1) 참조
 - ▶ 다수의 국가들이 공정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기반을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줌
 -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함
 -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EITC)의 혜택을 확대함
 - ▶ 일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였으나, 개인 자본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추세는 이어짐

[그림 IV-1]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tax wedge)¹⁾ 추이(2000~2017년)

(단위: %)



주: 1) 조세격차는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소득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금의 합계액인 근로자의 총노동소득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소득세액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OECD Taxing Wages Databas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47, Figure. 3. 3, 2018. 재인용

■ 상위 소득계층의 세율은 국가별로 개정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부터 그 이후까지 7개국⁶⁾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며, 6개국⁷⁾이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임(표 IV-1 참조)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국가는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임

- 미국은 트럼프 세제개혁안(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⁶⁾을 39.6%에서 37%로 인하함
- 네덜란드는 2019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52%에서 49.5%로 인하함
-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은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을 소폭 인하함

▶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인 국가는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캐나다임

- 라트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23%의 단일세율 소득세체계를 20%, 23%, 31.4%의 3단계 누진세율체제로 개정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23%에서 31.4%로 인상함⁷⁾

6) 연방정부 소득세 외에 주정부 소득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

7) 저소득층 납세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율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41%에서 45%로, 한국은 40%에서 42%(과세 표준 5억 이상)로 인상하였음
- 캐나다는 각 주마다 소득세율 개정이 있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CAD 15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6.8%의 세율을 부과하는 새로운 소득구간을 추가함

〈표 IV-1〉 2017년과 2018년에 도입된 소득세 세율 개정사항

구분	세율 증가		세율 감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국가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⁵⁾	캐나다 ²⁾ , 한국,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핀란드, 아일랜드, ³⁾ 노르웨이, ⁵⁾ 포르투갈 ⁶⁾	핀란드, 네덜란드, ¹⁾ 노르웨이, ⁵⁾ 포르투갈, ⁶⁾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 이외 세율 조정 국가	호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한국, 스웨덴 ⁴⁾	아르헨티나,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⁶⁾ 슬로베니아	캐나다, ²⁾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³⁾ 라트비아, 네덜란드, ¹⁾ 노르웨이, ⁵⁾ 포르투갈, ⁶⁾ 미국

주: 1) 네덜란드는 개편안 발표 후 시행 전임

2)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새로운 최고 구간 소득세율이 도입되고, 서스캐처원 주와 퀘벡 주에서는 소득세율 인가가 이루어짐

3) 아일랜드는 사회보장세를 인하함

4) 스웨덴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함

5) 노르웨이는 2개의 과세표준을 운영하며, 개인소득(personal income)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고 일반소득(ordinary income)에 대한 세율은 인하함

6) 포르투갈에서는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부가세(surtax)가 폐지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2 database and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50, Table. 3. 1, 2018. 재인용

▣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이 적용된 것과는 달리,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정책은 전반적으로 감세 경향을 유지하고 있음

- ▶ 미국은 소득 세제개편을 통해 전체 소득구간별 세율 및 소득구간 기준을 인하함
- ▶ 노르웨이는 이원소득세제를 운영하며 일반소득(ordinary income) 세율은 24%에서 23%로 인하하고, 개인소득(personal income) 세율은 각 소득구간별로 소폭 인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한계세율이 감소됨

- ▶ 그리스는 2020년 1월부터 소득세 최저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고 고소득자에 대해 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할 계획임
 - ▶ 핀란드는 모든 소득구간의 한계세율을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기여금(SSCs)의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임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1%p를 인하하였으며, 퀘벡 주는 소득세 최저세율을 1%p 인하함
-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계층의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가 있음
- ▶ 스웨덴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함
 - ▶ 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하는 공익서비스(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세금을 대체하고자 최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많은 국가가 과세 기반을 축소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 소득공제액 인상
 - 미국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적공제를 폐지하고,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함
 - 일본은 2020년 1월부터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기존 38만엔에서 48만엔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임
 - 캐나다 퀘벡 주는 인적공제를 1만 1,635캐나다달러에서 1만 4,890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아일랜드도 개인과 부부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공제를 각각 3만 4,550유로와 4만 3,550유로로 750유로씩 인상함
 - 슬로베니아에서는 1만 1,166유로와 1만 3,317유로의 소득구간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금 감면이 있었음

〈표 IV-2〉 2017년과 2018년에 도입된 소득세 과세기반 개편의 국가별 분류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공제 및 세율 구간 조정	호주, 룩셈부르크, 스웨덴	그리스, 일본,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슬로베니아, 미국

〈표 IV-2〉 의 계속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특정 저소득층 및 근로장려세제	네덜란드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녀 및 기타부양가족			호주, 체코, ¹⁾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미국
노인 및 장애인		네덜란드	네덜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기타 경비 및 공제	호주, 캐나다, 체코, ¹⁾ 에스토니아, 영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멕시코, ²⁾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주: 1) 체코는 개편안 발표 후 시행 전임

2) 멕시코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은 지진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53, Table 3. 2, 2018, 재인용

▶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 저소득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또한 최근 과세기반 개편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함
- 핀란드는 근로장려금을 1,420유로에서 2020년에 1,540유로로 인상할 예정임
- 아일랜드는 원천징수 근로자들의 세액공제를 1,650유로 미만으로 유지한 반면,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950유로에서 1,150유로로 인상함
- 네덜란드의 개편은 과세기반을 축소하는 측면과 확대하는 측면 모두 나타났으며,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대신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축소함

▶ 이외 과세기반 축소 조치

- 미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라트비아는 자녀 및 부양가족세액공제 혹은 양육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함
- 스웨덴, 네덜란드, 라트비아는 2018년 경로자와 장애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기본 수당을 증액하는 등 소득을 지원하는 방향의 개편을 진행함
- 터키는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숙련 노동자의 세금을 공제하고, 슬로베니아는

해외의 고숙련된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기업의 수익에 특별 조세혜택을 적용함

▣ 공정성 및 세수 증대를 위해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이 계속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축과 투자를 지원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됨(〈표 IV-3〉 참조)

▶ 많은 국가에서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 라트비아는 자본소득 및 이득에 대한 세율을 각각 10%, 15%에서 20%로 조정하였으며, 아이슬란드는 소득 인상 효과와 함께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본소득의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함
- 한국은 자본 이득이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함
- 아르헨티나는 금융소득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를 도입함
- 영국은 2018년 4월부터 비과세 배당공제를 5천파운드에서 2천파운드로 축소하고, 네덜란드는 보유 주택의 귀속임대료 가치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 벨기에는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1,880유로에서 960유로로 축소함

〈표 IV-3〉 국가별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개편 현황(2017년, 2018년)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배당 및 이자 소득/ 주식 및 채권 투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¹⁾	아일랜드	프랑스
자본 이득		아르헨티나, 한국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¹⁾	아일랜드 ²⁾	프랑스, 룩셈부르크 ³⁾
연금 및 저축 계좌 세제 혜택			핀란드	
종업원 주식 취득 공제				스웨덴

주: 1) 네덜란드는 개편안 발표 후 시행 전임

2) 아일랜드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감면은 특정 자산을 처분할 때만 적용되는 구제 조치임

3) 룩셈부르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 이득에 적용됨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47, Table 3. 3, 2018. 재인용

- ▶ 일부 국가는 개인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도 함
 - 프랑스는 이자, 배당금 및 자본 이득을 포함하는 자본소득에 대해 30% 단일 세율을 도입함
 - 룩셈부르크는 부동산 자본 이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50%에서 25%로 인하한 조치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

■ 사회보장기여금(SSCs)의 부담률과 징수 기반과 관련한 세제개편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표 IV-4〉 참조)

- ▶ 2018년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SSCs) 부담률 인상이 있었던 국가는 캐나다, 라트비아,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있음
- ▶ 헝가리,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다소 인하됨
- ▶ 프랑스, 일본, 핀란드 등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SSCs)별 부담률의 인상과 인하가 혼재되어 나타남
 - 프랑스는 건강과 실업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SSCs) 부담률을 축소하는 동시에 자본 및 연금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일반사회보장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의 부담률은 1.7%p 인상함
 - 일본은 2017년 근로자의 실업 분담금은 소폭 감소했으나, 근로자 연금 보험료가 인상됨
 - 핀란드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장기여금(SSCs)의 고용주 부담분은 감소하고 직원 부담분이 증가함

〈표 IV-4〉 국가별 사회보장기여금 요율 개편 현황(2017년, 2018년)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고용주 부담분	독일, 영국	캐나다, 라트비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¹⁾ ,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독일,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²⁾
고용인 부담분	독일, 핀란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라트비아,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일본, 헝가리
자영업자의 갑근세			헝가리, 스웨덴, 프랑스	

주: 1) 에스토니아는 개편안 발표 후 시행 전임

2) 노르웨이는 에너지 및 교통 부문에 시행됨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47, Table 3. 5, 201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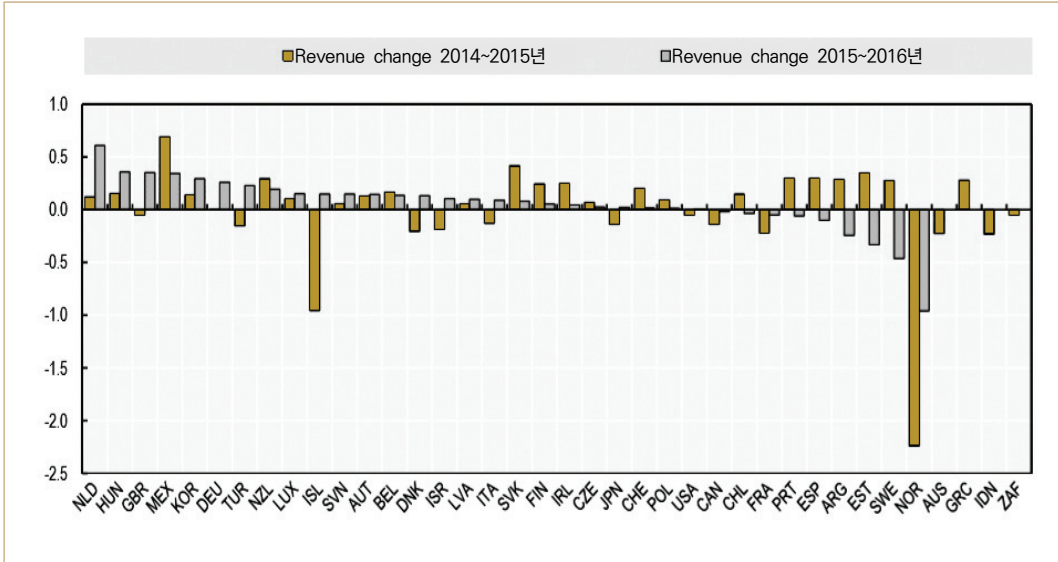
- ▶ 스웨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추세임
 - 스웨덴은 2018년 사회초년생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분 감면 조치를 확대하였음
 - 이탈리아는 청년 및 남부 지역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을 면제함
- ▶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기반을 확대한 국가들도 존재함
 - 라트비아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최대 금액을 5만 2,400유로에서 5만 5,000유로로 인상하였음
 - 호주는 2018년 3월부터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는 건강보험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의 공제를 폐지함

2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및 기타 법인세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은 전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4년~2015년 사이 0.06%p 증가하였음
- ▶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 멕시코, 한국, 독일, 터키가 평균 0.35% 증가하여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그림 IV-2 참조)
 -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는 큰 폭으로 감소함
- ▶ 법인세 세수는 거시경제 상승효과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율의 점진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IV-2]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 OECD an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64, Figure 3. 7, 2018, 재인용

OECD 회원국 중 7개국⁸⁾이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공표하거나 개정하였으며, 201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8개국⁸⁾의 법인세율 평균이 4.8%p 낮아지는 등 법인세율 인하가 가속화되고 있음

- ▶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35%에서 30%, 2020년에는 25%로, 프랑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3.3%에서 25%로, 스웨덴은 2019년에 22%에서 21.4%, 2021년에는 20.6%로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 ▶ 벨기에는 2017년 말 법인세 종합 개편안을 채택하여 2018~2020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본 개편안에는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일반 법인세율을 33.99%에서 25%로 인하하며, 중소기업 법인세도 함께 인하할 예정임
 - 조세회피방지 조치의 이행 등 과세기반 확대 조치를 병행하여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함
- ▶ 미국은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으며 법인의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함

8)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 반면 터키, 캐나다, 포르투갈,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도 존재함

- ▶ 터키는 일반 법인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함
- ▶ 포르투갈은 과세소득이 3천 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부가세율(surtax)을 7%에서 9%로 인상함
- ▶ 한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3천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
- ▶ 네덜란드는 무형자산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5%에서 7%로 인상함
- ▶ 캐나다는 2018년 여러 주에서 법인세율 변화가 있었으며, 퀘벡 주는 11.8%에서 11.7%로 인하하였으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11%에서 12%로, 서스캐처원 주는 11.5%에서 12%로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주정부의 평균 법인세율은 0.1%p 증가한 11.8%임

〈표 IV-5〉 법인세율 변화(2017년, 2018년)

구분	세율 인상		세율 인하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일반 법인세율	슬로베니아	캐나다, ²⁾ 한국, ³⁾ 포르투갈, ⁴⁾ 터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호주, ¹⁾ 아르헨티나, 벨기에, 라트비아, ⁵⁾ 프랑스, 영국, ¹⁾ 그리스, ¹⁾ 일본, 룩셈부르크,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중소기업 법인세율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캐나다
특허박스 세율		네덜란드		

주: 1) 해당 표시가 된 국가는 개정안만 발표하고 아직 시행 전인 국가임
 2) 일부 캐나다 주는 2018년에 법인세율을 개정하였으며, 퀘벡 주는 11.8%에서 11.7%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11%에서 12%로, 서스캐처원 주는 11.5%에서 12%로 개정함
 3) 한국은 대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인상됨
 4) 포르투갈은 과세소득이 3천5백만유로가 넘는 회사에 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도록 개정함
 5) 라트비아는 기존의 기업 소득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인세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기업 이익에 15%, 이익 배분에 20%의 세금을 부과함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64, Table 3. 7, 2018. 재인용

▣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외에 다른 개정안들도 함께 도입됨

- ▶ 많은 국가가 기업에 대한 과세를 속지주의 과세체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하여 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MNEs)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영국, 일본, 뉴질랜드는 2009년부터 속지주의 과세체제로 전환함
 - 미국은 2018년부터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를 통해 미국 기업이 외국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을 때,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100% 공제하도록 개정함
 - 이미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벨기에는 2018년부터 해외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
- ▶ 이윤의 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음
 - 아르헨티나와 라트비아는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분배 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5%p와 6%p씩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함
- ▶ R&D 투자와 관련한 세계개편은 미미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있었음
 - 미국은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용자산 구입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전액 상각하도록 개정함
 - 아르헨티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제도를 도입함
 - 룩셈부르크는 소프트웨어 구매를 일반투자세액공제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
 - 일본은 기업에 전년도 임금 인상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장려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표 IV-6〉 법인세의 과세기반 변화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감가상각 및 일반 투자 인센티브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헝가리, 멕시코, 룩셈부르크, 터키	아르헨티나, 독일, 덴마크, 헝가리, 룩셈부르크, 미국

〈표 IV-6〉 의 계속

구분	과세기반 확대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또는 그 이후	2017년	2018년 또는 그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중소기업 조세 지원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R&D 조세 지원	터키	미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미국
조세회피 방지 조치	호주,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환경 관련 조세 지원			헝가리, 멕시코	룩셈부르크
이자비용 공제 및 채무 지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아르헨티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75, Table 3. 9, 2018, 재인용

■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 ▶ 이월결손금에 대한 규제는 2018년 가장 보편적인 과세기반 확대 조치였음
 - 네덜란드는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연한을 9년에서 6년으로 축소함
 - 미국은 2018년부터 과세소득의 80%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제한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월결손금의 소급 적용을 폐지하고 이월기간을 무기한에서 20년으로 축소함
- ▶ OECD/G20의 BEPS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2018년 현재 110개국에 BEPS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유해한 세제 사례에 대한 조치(Action 5), 조약 혜택의 남용 방지(Action 6), 국가별 보고서(Action 13), 분쟁 해결 방안 향상(Action 14)의 네 가지 액션에 대해 국가 간 상호 평가가 시작됨

- Action 5와 관련하여 1만 1,000건 이상의 조세 판결 정보를 교환한 결과 160개 이상의 유해 규칙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90개가 현재 개정 혹은 폐지가 진행 중임
- Action 13과 관련하여 60개 이상의 국가가 보고와 관련한 국내 법률 체계를 마련함
- 상호 합의 절차의 개선을 다루는 Action 14 관련하여서는 21개 국가에서 이미 국가 간 상호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8개 국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 까지 43개 국가에서 검토가 완료될 예정임
- Action 6은 양자 혹은 다자간 협약을 통해 부적절한 환경에서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법권 설정이 필요한데,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를 2018년부터 시작함

■ 미국에서는 다국적기업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

- ▶ 피지배외국법인(CFC)의 과세대상소득에 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GILTI)⁹⁾도 포함하도록 개정함
 - 단 주주가 일반법인(C-corporation)¹⁰⁾인 경우 5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80%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결과적으로 피지배외국법인 소재국의 세율이 13.125% 이상인 경우 무형자산소득에 대해 미국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없음
- ▶ 무형자산소득(GILTI) 과세와 함께 미국 기업이 해외에 무형자산을 제공 및 판매하고 얻은 소득인 ‘해외원천 무형자산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에 대해 37.5%¹¹⁾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가 도입되어 미국 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감가상각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세원잠식 지급금(base erosion payment)”)이 큰 경우 추가 과세함
 - 세원잠식남용방지세는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원잠식 지급금을 합산하여 10%의 세율¹²⁾을 적용하며, 21%의 세율을 적용한 일반적인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것임

9) 무형자산소득은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 유형자산을 통해 일반적으로 창출하는 수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말함. 이는 미국 법인이 저세율국에 설립된 피지배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이전하여 사용료지급액 등의 방법으로 미국 내 소득을 이전하고, 소득을 해외에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10) 소유주(주주)와 법인이 분리된 형태의 기업

11) 2025년 이후 21.875%

12) 2019년 10%, 2026년 12.5%로 인상할 예정임

- 다국적기업(MNE)에 속하고, 연간 평균 매출액이 5억달러를 초과하고, 세원잠식 지급금이 총지급액의 3%를 초과하는 미국 내 회사 및 고정사업장(PEs)에 적용됨

■ 디지털화로 새롭게 출연한 사업모델에 대한 과세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됨

- ▶ OECD는 2018년 3월 디지털사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서(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를 발간하여, 디지털사업의 주요 특징 및 과세를 위한 ‘연계거점’ 및 ‘수익(profit) 분배’에 대해 논의함
 - 중간보고서에서는 다자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포괄적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임을 발표함
- ▶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사업 과세를 위한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도 함
 - 이탈리아는 사용자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으로 생성하는 경제적 가치에 과세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전자적으로 제공된 디지털용역에 3% 세율로 디지털 거래 부과금 (Levy on Digital Transactions: LDT)을 징수함

3 부가가치세(VAT/GST) 및 개별소비세(Excise Taxes)

■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 [그림 IV-3]에 제시된 37개 국가 중 27개국에 비해 GDP에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 예외적으로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이 현저히 하락하였으나, 아일랜드의 경우 GDP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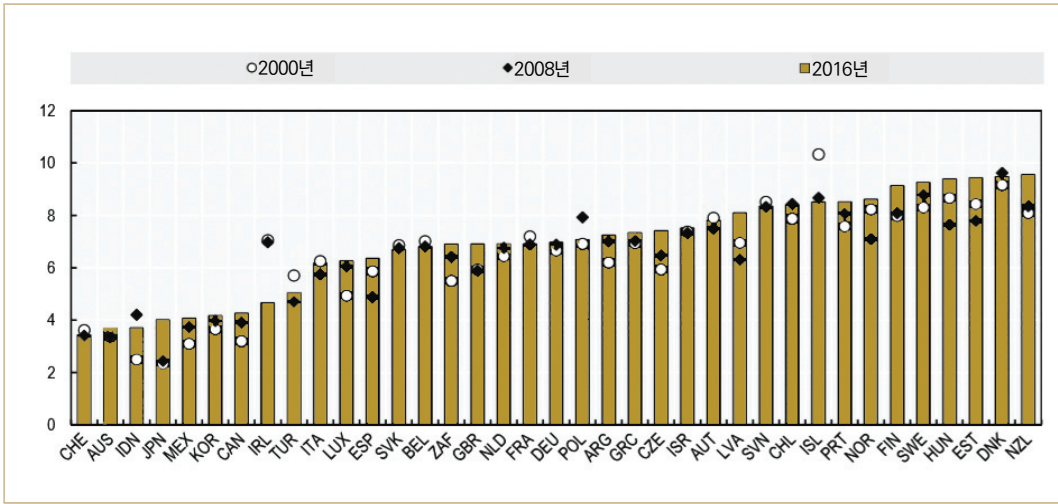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함께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별도로 부과되던 세금들이 점차 부가가치세로 대체되고 있는 것 또한 세수 증가의 원인임

- ▶ 1975년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수는 총세수의 9%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소비세 수입의 주된 원천으로, OECD 회원국 총세수의 20% 가량을 차지함([그림 IV-4] 참조)

- ▶ 반면 개별소비세 및 기타 특정 소비세는 1975년 OECD 회원국 총세수의 약 18%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10%가량으로 그 비중이 하락함

[그림 IV-3] 주요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2000년, 2008년, 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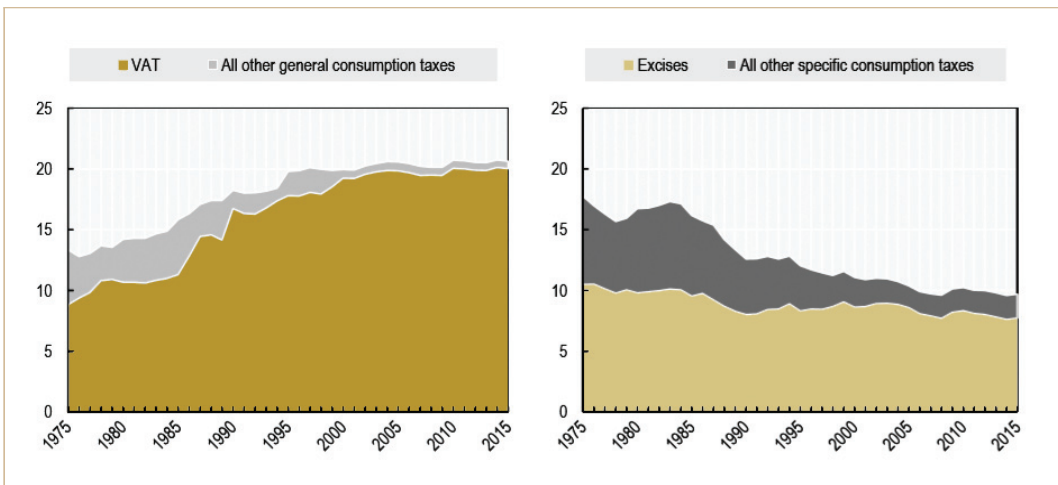


주: 호주, 그리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5년 값임

자료: OECD an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85, Figure 3. 12, 2018. 재인용

[그림 IV-4] OECD 총세수 대비 소비세 세수 비중의 변화(1975~2015년)

(단위: %)



자료: OECD(2017) Revenue Statistics: 1965-2016, OECD Revenue Statistics databas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86, Figure 3. 13, 2018. 재인용

■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으며, 최근 몇 년간 부가가치세 세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함

▶ 부가가치세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보여주며 직접세 인상보다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공통으로 취하는 전략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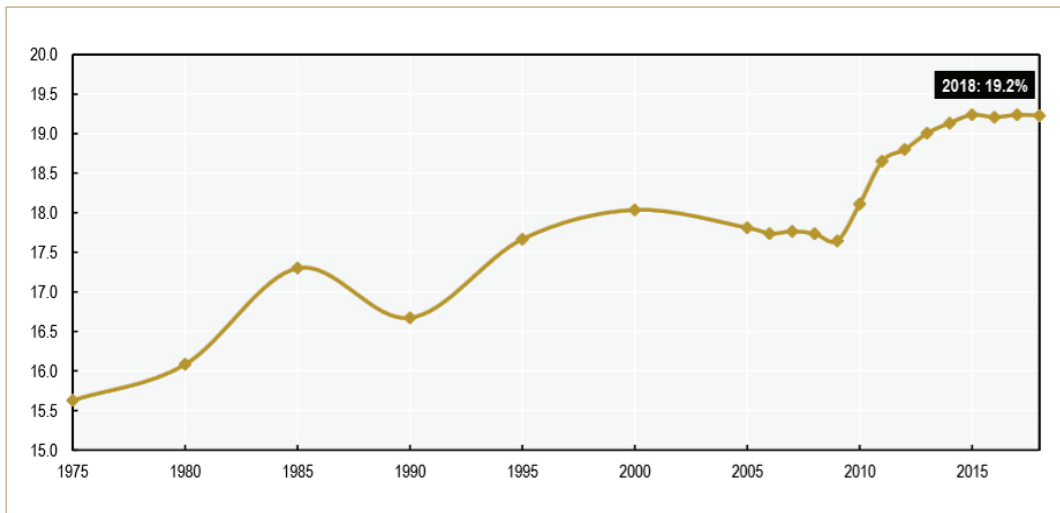
▶ 2008년과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7.6%에서 19.2%로 상승함(그림 IV-5) 참조)

▶ 그러나 이미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다수의 국가들은 추가적인 인상을 제한하고 있어, 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약화됨

- 2018년과 2019년 부가가치세 인상을 발표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¹³⁾, 일본¹⁴⁾ 등에 불과하며, 이탈리아는 2018년 부가가치세 인상안의 시행을 연기함

[그림 IV-5] OECD 평균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의 변화 추이(1975~2018년 1월)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87, Figure 3. 14, 2018. 재인용

■ 부가가치세 관련 개편은 주로 경감 세율(reduced VAT rates) 또는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표 IV-7〉 참조)

13) 25년만의 첫 인상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18년 4월 1일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14%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14) 2019년 10월 기존의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임

- ▶ 필수품이 아닌 사회, 문화 혹은 비분배적인 성격의 재화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은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OECD에서는 위의 재화에 대해 경감세율 적용배제를 권고하고 있음
- ▶ 다수의 국가에서 경감세율을 인상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함
 - 노르웨이는 2016년 영화표, 대중교통, 호텔 숙박, 박물관 및 유원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데 이어 12%로 다시 인상함
 - 네덜란드는 2019년 1월 1일부터 기본 식료품, 책, 약, 골동품을 비롯하여 박물관, 수영장, 동물원, 극장, 스포츠 입장권 등에 적용되던 경감세율을 6%에서 9%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함
 - 폴란드는 특정 위생 및 의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8%에서 23%로 인상함
 - 아일랜드는 선베드에 적용되던 경감세율을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등 경감세율의 적용 범위를 축소함
- ▶ 공정성 혹은 특정 경제 부문 지원을 위해 경감세율을 도입 또는 인하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축소한 국가도 있음
 - 라트비아는 특정 과일 및 채소에 5% 경감세율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헝가리도 우유, 계란 및 가금류에 경감세율 5%를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¹⁵⁾
 - 헝가리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한 경감세율을 18%에서 5%로 낮추고, 스위스는 전자책에 경감세율 2.5%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리아는 2018년 11월 숙박업¹⁶⁾에 대한 경감세율을 13%에서 이전 수준인 1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함

〈표 IV-7〉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관련 세제개편 현황

구분	일반	식료품	호텔/식당	신문/전자책	문화	기타
경감세율 인상 또는 적용범위 축소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경감세율 인하 또는 적용범위 확대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스웨덴

주: ()로 표시한 국가들은 개편안 발표 후 시행 전임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89, Table 3. 10, 2018. 재인용

15) 그러나 최근 OECD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경감된 세율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함

16) OECD 권고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음

■ 행정 개선 및 조세포탈방지조치(anti-fraud measures)는 부가가치세 개편에서 핵심적인 부분임

- ▶ 세금 징수와 조세포탈방지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및 행정 개선이 이루어짐
 - SAF-T(Standard Audit Files for Tax)¹⁷⁾나 세금계산서의 실시간 전송을 통해 납세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함
 - 다수의 국가에서 SAF-T의 채택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사용 중이고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이행할 계획임
 - SAF-T 외에도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예정임
- ▶ ‘Missing Trader Fraud’ 거래¹⁸⁾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를 방지하거나 국가 간 운송이 용이한 고가의 상품에 대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domestic reverse charge mechanism)’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남
 -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금 등 국가 간 운송이 용이한 고부가가치 상품에 적용되며, 최근 그리스와 라트비아에서 도입함
- ▶ 사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업체가 아닌 세무당국이 별도로 징수하는 분리 납부(split payment)도 고려되는 추세임
 - 폴란드에서는 공급 업체가 보유한 부가가치세 계좌¹⁹⁾에 구매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입금해야 하는 시스템이 2018년 8월부터 발효됨

■ 많은 국가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에 VAT 과세를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최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에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VAT 과세를 강화함

- ▶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가 용역의 국제거래 시 OECD의 가이드라인 ‘The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에 따라 과세함
 - 위 가이드라인은 B2C거래에서 국외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공급(디지털 공급물 포함) 시 효과적으로 VAT를 징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17) 기업이 세무 관련 기관에 회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OECD가 개발한 표준화된 전자 형식임

18) 면세로 재화를 수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부과하여 물품을 판매한 후 과세당국의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VAT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등의 방법으로 사라져 VAT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를 말함

19) 세무 당국에서 모니터링하며 공급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으로 사용되는 계좌

- 가이드라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은 소비자의 거주 국가에 있으므로, 공급업자가 해당 국가에 세액을 등록하고 납부할 것을 권고함
 - ▶ 아르헨티나는 비디오, 음악, 게임 등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에 접근 또는 다운로드한 경우 21%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금융기관이 세금 징수 및 납부 대행의 역할을 하도록 함
 -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2014년 6월부터 국외 디지털서비스 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를 등록하고 VAT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함
 - 최근에는 중개인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온라인플랫폼 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개정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액수입재화(low-value goods)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최근 해당 제도가 축소되고 있음
- ▶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액 물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세수 측면에서는 잠재적 손해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 저해됨
 - 소액(low-value)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행정 비용이 세수입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는 잠재적인 세 수입이 과세 행정비용보다 커짐
 - 국내 기업이 부가가치세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
 - ▶ 2015년 발간된 ‘BEPS Action 1’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정부는 소액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 호주는 가장 먼저 소액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한 국가로 2018년 7월 1일부터 1,000호주달러 이하 가격의 제품 수입도 부가가치세(GST)를 과세함
 - 단 소액 판매자의 VAT 징수·납부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VAT가 과세되는 총매출액이 7만 5,000호주달러 이상인 외국 판매자에 한해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함
 - ▶ 스위스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9년 1월부터 스위스에 상품 및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스위스에 제공한 과세 대상 매출액이 10만프랑(CHF)을 초과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VAT를 징수·납부해야 함

▣ 부정적인 내·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상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excise tax)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류 및 담배 제품의 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많았음

- ▶ 2017년과 2018년 모두 각각 4개국에서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있었음
- ▶ 담배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7년 13개국, 2018년 7개국에서 인상이 있었음

〈표 IV-8〉 주요국의 주류 및 담배 제품 인상

구분	세율 / 과세기반 증대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주류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담배 제품	호주, 에스토니아,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¹⁾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 1) 아르헨티나의 증가세율은 75%에서 70%로 낮아졌으나, 담배 한 갑당 최저한세는 인상됨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98, Table 3. 11, 2018. 재인용

- ▶ 새로운 유형의 유해소비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고 있음
 - 그리스와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과 폴란드가 전자 담배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됨
 - 캐나다는 대마초와 관련한 조세제도가 마련됨
 - 영국, 아일랜드²⁰⁾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²¹⁾은 2018년부터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함
 - 벨기에 및 노르웨이는 기존의 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터키는 콜라에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를 과일주스와 모든 탄산음료로 확대함

20) 100ml당 5~8g 사이의 탄산음료에 첫 번째 구간의 세율, 100ml당 8g 이상의 탄산음료에 두 번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됨

21) 100ml당 4g 이상의 탄산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됨

4 환경세(Environmentally-related Taxes)

- 환경 관련 세제는 재정확충 및 환경정책 수단으로써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행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세율이 낮고 과세기반 또한 좁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 과세대상은 에너지, 운송, 폐기물 및 화학 물질까지 포함되나 각국의 조세제도는 주로 에너지 과세에 집중되어 있음

- 금번 OECD 보고서에서 다룬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환경세 부담률은 1995년, 2005년, 2014년 모두 2.2%로 동일하나, 개별 국가로 살펴볼 경우 많은 국가에서 GDP 대비 환경세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임(그림 IV-6) 참조)

 - ▶ 세율 인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등을 환경세 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 8개국에서 환경세 부담률이 증가하였는데, 증가 원인은 높은 세율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환경오염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세수가 환경세 세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연도 및 2018년 환경세 정책변화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한동안은 에너지 관련 세수가 환경세수의 가장 큰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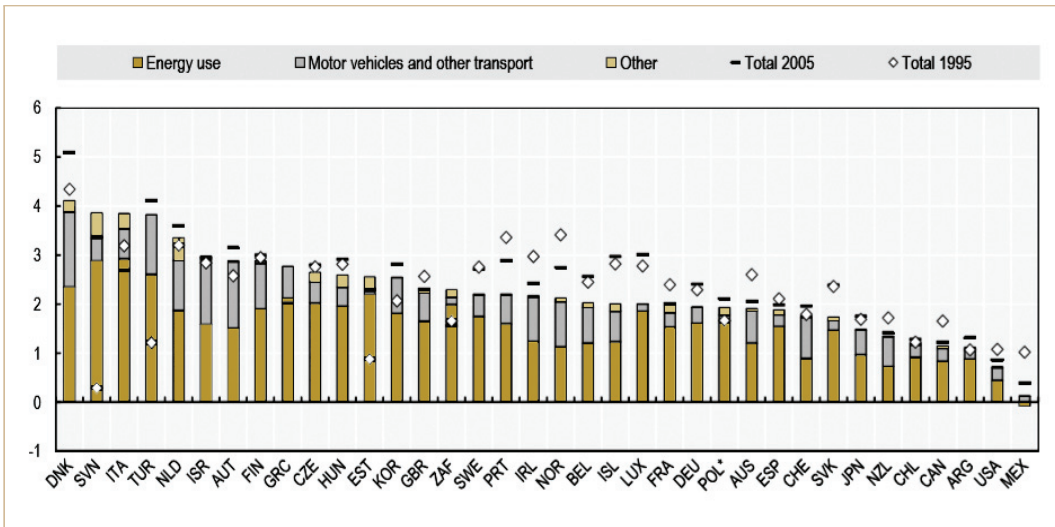
 - ▶ 6개국²²⁾에서 특정연료(specific fuel)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으며, 3개국²³⁾은 탄소세(carbon tax)를 인상함
 - ▶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운송 연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함
 - ▶ 네덜란드는 전기발전 연료에 대한 세율을 2020년 이산화탄소 톤당 18유로에서 시작하여 2030년 톤당 43유로까지 인상할 예정임
 - ▶ 에너지세 세율 인하가 있었던 국가는 스웨덴²⁴⁾, 멕시코, 영국임

22) 벨기에, 프랑스, 대한민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23)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24) 바이오 연료에 대한 요청 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함

[그림 IV-6] 국가별 환경세 부담률(1995년, 2005년, 2014년)



자료: OECD Database on Policy Instruments for the Environment;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102, Figure 3. 16, 2018. 재인용

- 운송연료(road fuel)에 대한 세율은 다른 연료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며, 운송연료 관련 세수는 환경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 ▶ 42개 OECD 및 G20 국가에서는 운송수단을 위한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대부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단 운송연료에 대한 실효세율은 탄소배출 처리비용(climate costs) 추정치²⁵⁾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비용 추정 시 탄소배출 처리비용 외 운송수단 이용으로 인한 혼잡, 공기오염 등 기타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85%가 운송연료 이외 연료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연료 이외 연료에 대한 세율은 훨씬 낮고 개정 또한 더디게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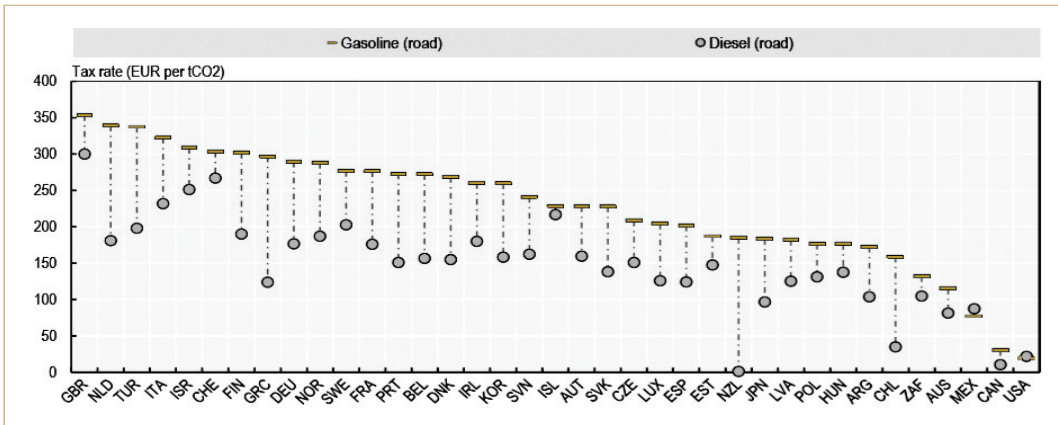
 - ▶ 운송연료 외 연료는 배출량의 81%가 비과세이며, 배출량의 3%로 추정되는 탄소배출 처리비용보다 낮음
 - ▶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남

25) 탄소량 50%에 대한 처리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로 추정됨

- 일부 국가에서 운송연료 이외 연료에도 동일하게 과세하고, 환경처리비용에 따라 환세율을 과세하도록 개정함
 - ▶ 아이슬란드, 프랑스 및 노르웨이는 모든 부문에서 탄소발생에 대한 종량세를 인상했으며, 핀란드에서는 난방 연료에 한정하여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인상함
 -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임
 - ▶ 한국과 인도는 석탄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인상함
 - 한국은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의 과세대상이었던 석탄에 대한 세금을 2018년에 추가로 인상하였음
 - ▶ 스웨덴은 친환경 차량의 사용을 권장하는 세제정책을 도입함
 - ▶ 벨기에와 프랑스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각 연료가 발생시키는 외부 비용과 맞추고자 함
 - 경유는 일반적으로 휘발유보다 리터당 유해물질 배출량과 탄소 함량이 휘발유보다 높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가들 중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휘발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음(그림 IV-7기 참조)

[그림 IV-7] 휘발유와 경유 실효세율의 국가별 비교

(단위: 이산화탄소 톤당 Euro)



자료: Adapted based on OECD(2018d),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106, Figure 3. 19, 2018. 재인용

- 2018년에 두 개의 국가가 물가연동에 따른 환경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함
 - ▶ 물가연동제도의 부재는 점차 환경세 실효세율을 낮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세수 손실을 초래함

- ▶ 벨기에에는 에너지 관련 세금에 대해서만, 스웨덴은 모든 환경세에 대해 물가연동을 실시함

〈표 IV-9〉 국가별 에너지 사용 관련 세제개편 내용

구분	세율 및 과세기반 확대		세율 및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산업별 연료				
발전	한국, 라트비아, 영국 ^{c.1)}	네덜란드 ¹⁾	그리스	
농업		스페인		
난방	핀란드 ^{c)}	핀란드	그리스	
운송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c)} 멕시코, 포르투갈, 노르웨이, ^{c)} 에스토니아 ¹⁾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b)}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멕시코
제동 연료 (전 분야)	에스토니아 ¹⁾	벨기에, ⁱ⁾ 프랑스,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¹⁾ 스웨덴 ⁱ⁾	영국	영국 ⁱ⁾
탄소세	캐나다, ²⁾ 영국 ¹⁾	아이슬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¹⁾ 남아프리카 공화국 ¹⁾		덴마크, 네덜란드 ¹⁾
전력 소비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³⁾	

주: 1) 해당 표시가 된 국가는 시행안 내용만 발표됨

2) Alberta 주의 값에 해당함

3) 경제 성장 효과에 따라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b) 바이오 연료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c)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반한 세금이 부과되는 국가

i)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가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105, Table 3. 12, 2018. 재인용

■ 운송 부문의 환경 관련 세제개편은 차량세 및 항공여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 지난 수년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에서 수소, 전기 또는 연료 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함
- ▶ 노르웨이는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2017년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
- ▶ 스웨덴은 2018년부터 항공여행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였으며, 네덜란드는 항공 부

문의 배출저감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2021년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예정임

■ 에너지세 외에 환경 관련 세제개편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나, 환경 개선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큼

▶ 폐기물, 비닐 봉투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음

- 포장, 비닐 봉투, 대기 및 수질 오염, 살충제 및 비료에 대한 과세는 EU 28개국의 환경세 세수를 GDP 대비 2.6%에서 3.6%로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음

▶ 2017년 네덜란드는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하수오니(sewage sludge)에 대한 세금 감면을 폐지하는 등 매립 및 소각에 대한 세금 인상을 발표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8년 4월부터 비닐 봉투에 대한 세금을 50% 인상함

- 비닐에 대한 과세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국은 2015년 비닐 봉투에 세금을 부과한 후 2014년에 비해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7개의 주요 소매상에서 비닐 봉투 배부량이 약 83%(60억개 이상) 줄어듦

5 재산세(Property Taxes)

■ 재산세 세수는 2016년 OECD 회원국 평균 세수의 6%로, 1965년 8%보다 낮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재산세 세수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보유세로 충당되며, 그 외에 거래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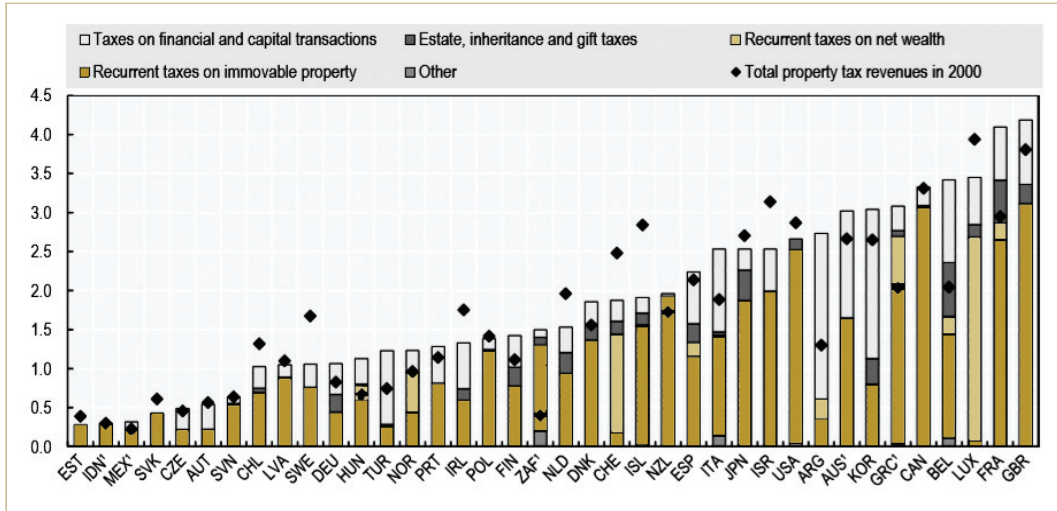
▶ 재산세 세수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GDP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 2016년에 재산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에스토니아의 0.3%에서 영국의 4.3%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는 작은 수익원임

- 2000~2016년 사이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그리스는 GDP 대비 재산세 세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은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IV-8] 국가별 GDP 대비 재산세 수입의 비중(2000년, 2016년)

(단위: %)



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그리스는 2015년 값을 사용함

자료: OECD an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s;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111, Figure 3.20, 2018. 재인용

2017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개정은 주로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일부는 주택 시장에서의 투자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짐

2018년에는 일부 국가에서 주요한 재산세 관련 세제개편이 이루어짐

▶ 프랑스에서는 부유세를 부동산세로 대체하고, 전체 가구의 80%가 납부하던 거주세 (taxes d'habitation)를 3년에 걸쳐 폐지할 예정임

- 프랑스는 2017년까지 부유세를 가진 OECD 회원국 4개국 중 하나였으나, 2018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금융 자산 및 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에 대한 과세기반이 크게 축소됨
- 거주세는 세율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세기준이 되는 명목상 임대 가치가 1970년대 이후 갱신되지 않아 불공정한 과세제도였음

▶ 덴마크는 2002년 이후 재산 가치를 동결하여 실효세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2021년부터는 주택세²⁶⁾에 부동산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세율은 낮출 계획임

-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총주택세가 인상되는 주택 소유주는 환급을 통해 보상받음

26) 재산세와 토지세를 포함함

- ▶ 영국은 청년층이 주거용 부동산을 첫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파운드까지 인지세 (Stamp Duty Land Tax: SDLT)를 전액 환급함
 - 30만~50만파운드는 30만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인지세 5%가 부과되며, 50만파운드 이상은 적용되는 혜택이 없음
- ▶ 아르헨티나는 부동산 양도에 부과하던 1.5%의 세금을 폐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시 부동산 판매에 대한 자본이득에 15%의 세금을 부과함
- ▶ 거래세와 관련하여 아일랜드는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2%에서 6%로 인상하였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토론토 대도시권 비거주자나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비거주자 투기 방지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 15%를 부과함
- ▶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미국은 면세 기준금액을 2배로 인상하여 1천만달러로 변경하는 등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 조항은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증여부터 적용되어 2025년 일몰될 예정임
- ▶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8년 3월 1일부터 부동산과 3천만란드(ZAR) 이상의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함
- ▶ 노르웨이는 부(富)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전의 기조가 이어져 부유세의 과세기반을 계속 축소하였으며, 벨기에는 공정성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에 대해 부유세에 준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함

〈표 IV-10〉 국가별 재산세 개편 내용

구분	요율 및 과세기반 확대		요율 및 과세기반 축소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2017년	2018년 혹은 그 이후
상속증여세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¹⁾	미국
거래세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부동산 보유세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프랑스		프랑스
부유세	룩셈부르크	벨기에 ²⁾	노르웨이	프랑스,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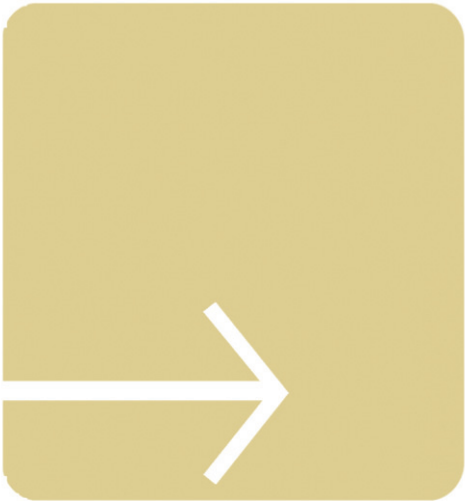
주: 1) 네덜란드는 2013~2014년 임시 조치가 있었으며, 2017년 구조적인 조치가 시행됨

2) 증권계좌에 대한 새로운 세제가 도입됨

자료: OECD Annual Tax Policy Reform Questionnaire; OECD, *Tax Policy Reforms 2018*, p. 112, Table 3. 15, 2018. 재인용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1 일부 국가의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쿼터 해제

[조세동향 18-09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한해 철강, 알루미늄의 수입쿼터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²⁷⁾

 - ▶ 철강의 수입쿼터가 면제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한민국이며, 알루미늄의 수입쿼터가 면제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임

- 참고로 미국은 2018년 3월 23일부터 국가안보 및 무역적자 해소 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일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제외함²⁸⁾

 - ▶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회원국임²⁹⁾

- 기존에 추가 관세 부과가 면제되었던 국가 중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수입쿼터가 적용됨³⁰⁾

 - ▶ 호주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도 부과되지 않고, 수입쿼터도 적용되지 않음

- 수입쿼터 면제를 위해서는 미국 기업이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자가 제공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이 질적 또는 양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며, 보복관

27) Taxnotes, *Trump Provides Targeted Relief from Steel and Aluminum Tariff*, 2018. 9. 3.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3호, 2018. 4. 6.

29) 상동

30)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232-tariffs-aluminum-and-steel>(검색일자: 2018. 10. 1)

세(punitive tariff) 면제 신청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면제 신청이 가능함³¹⁾

- ▶ 미국 기업의 수입쿼터 면제 요청일 이후 소비되거나 또는 창고에서 출고되는 철강부터 수입쿼터 면제가 허용됨
- 이번에 발표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쿼터 면제는 철강 수입제한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철강이 부족하여 공사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미국 기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됨³²⁾

2 각 주정부의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판매세 부과안 도입

[조세동향 18-09호]

- 미국의 14개 주정부는 2018년 9월 10일, 2018년 10월 1일에 각 주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각 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판매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판매세³³⁾를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함³⁴⁾
 - ▶ 이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판매업자에게도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주정부는 일리노이, 테네시, 아이다호, 미시간, 워싱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켄터키, 미시시피, 콜로라도, 메릴랜드, 인디애나주임
- 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주정부는 해당 주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다른 주에 소재하는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물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았음
 - ▶ 해당 주에서 소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각 주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고정사업장이 없는 판매자 간 가격 차이 문제가 발생함

31) EY, *US issues new steel and aluminum proclamations outlining potential relief opportunities for US importers*, 2018. 9. 4.

32) 상동

33)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각 주정부별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연방정부에서 별도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34) D.L. Yetter, *United States - Sales and Use Tax, Topical Analyses IBFD*.(검색일자: 2018. 10. 2)

- 이번 각 주정부의 개정은 2018년 6월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이 물리적인 고정장소가 없어도 소비가 발생한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판결한 것에 의함

 - ▶ 과거 1992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물리적 장소가 없는 판매업자가 물건을 판매한 경우 물건이 소비된 주에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다르게 판결함

- 따라서 각 주에 고정사업장 없이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거주 판매자는 작년 매출액 또는 거래건수가 각 주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면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매출이 발생한 주정부에 판매세를 납부해야 함

 - ▶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판매세 규정을 개정한 14개 주정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1개의 주정부(1개 특별자치구(D.C) 포함) 중 30개 주가 비거주 판매자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함
 - ▶ 각 주정부별 판매세가 부과되는 매출 기준 및 거래 기준과 시행시기는 상이함

〈표 1-1〉 미국의 주정부별 외국판매자의 판매세 납세의무자 요건 및 시행시기

(단위: 달러)

	판매세 납부해야 하는 외국판매자 요건			시행시기
	매출액 기준	거래 기준	조건 모두 충족 여부	
Alabama	250,000	-	하나만 만족	2018.10.1
Alaska	판매세 없음			-
Arizona	-	-	-	-
Arkansas	-	-	-	-
California	-	-	-	-
Colorado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2.1
Connecticut	250,000	200	모두 만족	2018.12.1
Delaware	판매세 없음			-
District of Columbia	-	-	-	-
Florida	-	-	-	-
Georgia	250,000	200	하나만 만족	2019.01.1
Hawaii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07.1
Idaho	-	-	-	-
Illinois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Indian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Iow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9.01.1
Kansas	-	-	-	-

〈표 1-1〉 의 계속

	판매세 납부해야 하는 외국판매자 요건			시행시기
	매출액 기준	거래 기준	조건 모두 충족 여부	
Kentucky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Louisian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9.01.1
Maine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07.1
Maryland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Massachusetts	500,000	100	모두 만족	2017.10.1
Michigan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Minnesota	100,000 (10거래 기준)	100	하나만 만족	2018.10.1
Mississippi	250,000	-	하나만 만족	2018.09.1
Missouri	-	-	-	-
Montana	판매세 없음			-
Nebraska	별도 기준 없음			2019.01.1
Nevada	-	-	-	2018.10.1
New Hampshire	판매세 없음			
New Jersey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New Mexico	-	-	-	-
New York	-	-	-	-
North Carolin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1.1
North Dakot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Ohio	500,000	-	하나만 만족	2018.01.1
Oklahoma	10,000	-	하나만 만족	2018.07.1
Oregon	판매세 없음			-
Pennsylvania	10,000	-	하나만 만족	2018.04.1(유형자산) 2019.04.1(무형자산)
Rhode Island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7.07.1
South Carolina	-	-	-	-
South Dakota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1.1
Tennessee	500,000	-	하나만 만족	2017.07.1
Texas	-	-	-	-
Utah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9.01.1
Vermont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07.1
Virginia	-	-	-	-
Washington	10,000	-	하나만 만족	2018.10.1
West Virginia	-	-	-	-
Wisconsin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8.10.1
Wyoming	100,000	200	하나만 만족	2017.07.1

자료: Sales Tax Institute, <https://www.salestaxinstitute.com/resources/remote-seller-nexus-chart>(검색일자: 2018. 10. 2)

3 세법개정안(Tax Reform 2.0) 하원 통과

[조세동향 18-10호]

- 미국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committee of ways and means)는 2018년 9월 13일 세 가지 법안으로 구성된 세법개정안(Tax Reform 2.0)을 승인하였으며³⁵⁾, 각 법안은 2018년 9월 27일과 28일에 미 하원에서 통과됨³⁶⁾
 - ▶ 세 가지 법안은 Protecting Family and Small Business Tax Cuts Act of 2018(H.R. 6760), Family Savings Act 2018(H.R. 6757), American Innovation Act of 2018(H.R. 6756)임
 - ▶ 이번에 미 하원에서 승인된 세법개정안은 미국 상원의 법안수정 절차를 거친 후 미 상원 전체 표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1) Protecting Family and Small Business Tax Cuts Act of 2018

- ‘Protecting Family and Small Business Tax Cuts Act of 2018’에서는 작년 ‘Tax Cuts and Jobs Act’를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함³⁷⁾
 - ▶ 작년 세법개정은 소득세 과세제도 단순화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음
 - ▶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 각종 공제제도 폐지 및 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부양가족공제 신설 등이 있음³⁸⁾
- 작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사항 중 의료비공제 기준 인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35)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https://waysandmeans.house.gov/committee-passed-tax-reform-2-0/>(검색일자: 2018. 10. 23)

36) 미 하원, <https://www.house.gov/>(검색일자: 2018. 10. 23)

37) 미 의회 양원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134>(검색일자: 2018. 10. 23)

38) 작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7-12호, ‘미국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최종 승인’ 참조

- ▶ 작년 세법개정 시 기준에 의료비가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음
- ▣ 작년에 개정한 세법개정 내용을 영구화하는 규정 이외에 장기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표준 구간을 일반소득세율 1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개정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따르면 일부 소득구간의 경우 장기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문제가 발생함(〈표 I-2〉 참조)
 - 예를 들면, 기혼·부부합산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장기자본이득 과세표준이 7만 300달러이면 15%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나,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2%가 되어 장기자본이득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자본이득세율 0% 또는 1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일반소득세율 22%보다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을 제안함

〈표 I-2〉 미국의 장기자본이득세율 및 일반소득세율(2018년 기준)

(단위: 달러, %)

구분	장기자본이득세		일반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기혼·부부합산 신고	0~77,200	0	0~19,050	10
	77,201~479,000	15	19,051~77,400	12
	479,001~	20	77,401~165,000	22
			165,001~315,000	24
			315,001~400,000	32
			400,001~600,000	35
			600,001~	37
기혼·외벌이	0~51,700	0	0~13,600	10
	51,701~452,400	15	13,601~51,800	12
	452,401~	20	51,801~82,500	22
			82,501~157,500	24
			157,501~200,000	32
			200,001~500,000	35
			500,001~	37

〈표 1-2〉 의 계속

구분	장기자본이득세		일반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미혼	0~38,600	0	0~9,525	10
	38,601~425,800	15	9,526~38,700	12
	425,801~	20	38,701~82,500	22
			82,501~157,500	24
			157,501~200,000	32
			200,001~500,000	35
			500,001~	37
기혼·부부 별도 신고	0~38,600	0	0~9,525	10
	38,601~239,500	15	9,526~38,700	12
	239,501~	20	38,701~82,500	22
			82,501~157,500	24
			157,501~200,000	32
			200,001~300,000	35
			300,001~	37

자료: IBFD, "Country Analyses-United States Individual Taxation," sec. 1, 10, 1(검색일자: 2018. 10. 31)

2) Family Savings Act 2018³⁹⁾

■ 'Family Savings Act'에서는 퇴직연금저축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1)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 2) 개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제한 연령 규정 폐지, 3) 소액 연금저축계좌의 조기인출 시 페널티 부과 제외, 4) 통합저축계좌 신설, 5) 교육비저축계좌의 비과세 인출금액 대상 확대, 6) 육아휴직자의 연금저축 인출 시 페널티 부과 제외 등이 있음

■ 소규모 기업 고용주가 연합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현행 'Multiple Employer Plan: MEP'의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Pooled Employer Plan: PEP'의 도입을 제안함

▶ 현행 MEP는 같은 산업에 속한 소규모 기업이 연합하여 퇴직연금제도 401(k)의 개설 및 운영비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연합기업 중 한 기업이라도 적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기업도 퇴직연금 불입액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

39) 미 의회 양원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134>(검색일자: 2018. 10. 23)

-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PEP 도입을 통해 같은 산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기업 간 연합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기업 중 한 기업이라도 적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기업의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개인의 퇴직연금저축 중 Traditional IRA의 가입 대상을 70.5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은 Traditional IRA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70.5세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저축 잔액이 소액인 경우 최소분배금액에 미달한 금액 인출 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은 70.5세가 되면 퇴직연금저축계좌에서 최소분배금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만큼 인출해야 하며, 인출금액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부과됨
 - ▶ 만약 최소분배금액에 미달하여 인출 시 인출금액과 최소분배금액의 차액에 대해 50% 소비세가 부과되는 페널티가 적용됨
 - ▶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저축계좌의 총합산 잔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 최소분배금액만큼 인출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비과세저축계좌인 통합저축계좌(universal savings account)의 도입을 제안함
 - ▶ 저축금액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2,500달러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의 가입은 제한됨
- 교육비저축계좌(qualified tuition program)에서 인출된 비과세대상 교육비 범위를 확대함
 - ▶ 현행 규정은 교육비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사용 목적으로 인출 시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비과세함
 -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 관련된 책, 물품, 장비구입 비용, 인턴십프로그램 참가비, 홈스쿨링 비용, 초등학교·중학교 등록금 지출 목적으로 인출 시에도 비과세할 것을 제안함

- 개인연금저축(IRA)의 경우 59.5세 이전 조기인출 시 인출금액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10% 추가 소득세를 과세하나, 출산 및 입양비용 충당 목적으로 조기인출 시 추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3) American Innovation Act of 2018⁴⁰⁾

- ‘American Innovation Act of 2018’은 기술혁신지원 목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 창업비용 및 회사조직비용(organizational expenditures)⁴¹⁾의 공제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은 창업회사의 초기창업비용(sec. 195) 및 회사조직비용(sec. 248, 709b)은 각각 5천달러까지 비용공제를 허용하며, 두 비용 모두 5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한도가 감소됨
 - ▶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기창업비용 및 회사조직비용을 통합하여 2만달러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며, 합산비용이 12만달러 초과 시 초과금액만큼 공제한도가 감소됨
 - 또한 공제되지 않은 합산비용은 사업 시작연도부터 15년간 상각을 허용함
-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 교체 시 이전의 결손금 및 세액공제를 한도 제한 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은 스타트업 기업의 경영자 교체 시 이전의 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은 일부만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액 공제할 것을 제안함

40) 미 의회 양원조세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5142>(검색일자: 2018. 10. 23)

41) 회사조직비용은 회사 설립과 관련된 자문료 및 수수료 등을 말하며,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비용으로 처리함

4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1월 20일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⁴²⁾
 - ▶ 2018년 9월 28일자로 기존의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이 종료됨에 따라⁴³⁾ 이후 발생하는 자진신고분에 적용할 목적으로 발표함
 -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신고분부터 적용됨

***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납세자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자의 민사상 가산세 및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임

- 자진신고제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과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VDP)를 통합하여 동일한 절차 및 가산세 제도를 적용함⁴⁴⁾
 - ▶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VDP)는 구체적인 진행 절차 및 가산세제도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자진신고를 처리함
 - ▶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은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명시하였으나 이번 프로그램 종료로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의 진행 절차와 통합하여 새롭게 명시함
 - ▶ 따라서 국내 및 해외에 미신고 소득이 있거나 해외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동일한 절차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42) Taxnotes, Revised Voluntary Disclosure Rules Extend Penalty Framework(검색일자: 2018. 12. 3)

43) 최근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참여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납세자의 해외재산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임.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losing-the-2014-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frequently-asked-questions-and-answers>(검색일자: 2018. 12. 20)

44) Capline & drysdale, <http://www.capdale.com/the-new-voluntary-disclosure-practice-a-fair-compromise>(검색일자: 2018. 12. 20)

■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진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⁴⁵⁾

- ▶ 납세자는 미 국세청의 범칙조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에 자진신고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미 국세청 범칙조사부서는 모든 사전신청을 전수 검토함
- ▶ 미 국세청 범칙조사부서가 사전신청을 승인하면 납세자는 Form 14457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형사상 소추 면제 또는 가산세 경감을 심사하는 심사부서(civil examiner)에 전달됨
- ▶ 심사부서는 표준조사 절차(standard examination procedures)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미납세금, 이자, 가산세를 결정함
- ▶ 납세자는 협의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
 - 만약 납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조사부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미신고 소득 및 해외재산 신고 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civil resolution framework)을 도입하였으며, 과세당국의 자진신고 담당자는 아래 제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결정함

- ▶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액이 가장 큰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개 연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함
 -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1개 연도 이상(최대 6개 연도까지)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 가산세(IRC §6663)⁴⁶⁾, 무신고 가산세(IRC §6651(f))⁴⁷⁾는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함
- ▶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 국세청 실무지침(Internal Revenue Manual: IRM) 4.26.16 및 4.26.17에 따라 10만달러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점의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함

4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검색 일자: 2018. 12. 20)

46) 과소납부세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함

47) 납세자가 사기(fraud)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의 5%를 매달 부과하며, 75%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함

- 또한 자진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가산세 등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 이전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납세자가 부과된 가산세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음⁴⁸⁾
 -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8) Taxnotes, Revised Voluntary Disclosure Rules Extend Penalty Framework(검색일자: 2018. 12. 3)

II 유럽

1 네덜란드

가. 숙박공유활동에 대한 과세방안 발표

[조세동향 18-09호]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8년 8월 30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공유활동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표함⁴⁹⁾
- 해당 주택이 주된 거소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순임대소득의 70%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함
 - ▶ 임대소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함⁵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활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음⁵¹⁾
 - ▶ 네덜란드 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자본과 노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창출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함⁵²⁾
 - ▶ 기타활동소득(income from other activities)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으로, 자산을 특수관계자의 사업용 활동에 활용하거나 재산을 소득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활동으로 획득하는 소득을 포함함⁵³⁾

49) Netherlands - Taxation of Airbnb rental income: State Secretary answers questions, 03 Sep, 2018, News IBFD.

50) M. Veldhuijzen,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Country Analyses IBFD.

51) 자료의 제한으로 임차인이 숙박공유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기술함

52) Ibid.

53) Ibid.

나.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하원에 제출함⁵⁴⁾

- ▶ 본 세법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개정내용을 담음
-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와 EU 지침에 따른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회피방지 규정 도입 등이 있음

1) 개인소득세

■ 2019년 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2021년부터는 현행 4단계 누진세 구조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함

- ▶ 물가연동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각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
- ▶ 2021년부터 현행 4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6만 8,507유로 기준으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함

〈표 II-1〉 2018~2019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단위: 유로, %)

2018년(현행)		2019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142	36.55	~20,384	36.55
20,143~33,994	40.85	20,385~34,300	38.10
33,995~68,507	40.85	34,300~68,507	38.10
68,508~	51.95	68,508~	51.75

자료: Netherlands - Tax plan 2019 - summary, 19 Sep, 2018, News IBFD.

54) Netherlands - Tax plan 2019 - summary, 19 Sep, 2018, News IBFD.

〈표 11-2〉 2021년 이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세율
~68,507	37.05
68,508~	49.50

□ 법인이 종업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해당 자전거 소매가의 7%를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 기존 제도는 종업원의 자전거 개인사용 거리(km), 감가상각,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하였으나,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함

2) 법인세

□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함

▶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만유로 이하는 20%, 20만유로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2021년에는 각 과세표준 구간에 16%와 22.25%의 세율을 적용함

〈표 11-3〉 법인세율 개정안

(단위: 유로, %)

과세표준(유로)	2018년(현행)	2019년	2020년	2021년
~200,000	20	19	17.5	16
200,001~	25	24.3	23.9	22.25

자료: Netherlands - Tax plan 2019 - summary, 19 Sep, 2018, News IBFD.

□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현행 9년에서 6년으로 축소함

▶ 단 지주회사 및 금융기관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 제한을 폐지함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CFC)⁵⁵⁾를 도입함

55) CFC제도는 저세율국에 위치한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에 소득을 유보하여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 ▶ CFC제도 적용 대상 해외 자회사(또는 고정사업장)는 네덜란드 납세자에게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그 지분이 소유되고, 그 법인이 소재한 거주지국의 세율이 7% 미만이거나 EU의 블랙리스트(non-cooperative jurisdiction)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함
- ▶ 단 해당 자회사가 실제적인 경제적 활동(genuine economic activity)을 수행하는 경우 CFC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에 따라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earning stripping rules)를 도입함
 - ▶ 순이자비용(이자비용 - 이자수익)의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EBITDA⁵⁶⁾의 30%와 1백만 유로 중 큰 값으로 함
 - ▶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됨
 - ▶ 동 이자비용공제 제한제도는 금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3) 부가가치세

- 현행 경감세율 6%를 2019년부터는 9%로 인상함
 - ▶ 네덜란드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식료품, 의약품, 도서, 신문, 숙박 및 식당 등이 있음
- 운동경기 훈련 등 스포츠 활동에 대한 면세 범위를 확대함
 - ▶ 기존 제도는 부가가치세 면세단체 소속 회원에게 공급되는 운동 훈련 등의 서비스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공급받는 자의 면세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연간 매출액 2만유로 이하의 사업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도입함
 - ▶ 연간 매출액이 2만유로 이하인 사업자는 면세특례제도를 신청하여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음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모법인 또는 개인 주주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함

56)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2 노르웨이 - 2019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노르웨이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담은 예산법안(Budget for 2019)을 2018년 10월 8일자로 의회에 제출함⁵⁷⁾
 - ▶ 법인세율 인하 및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개정, 법인의 거주지 판정 기준 등을 제시하며, 개인소득세율 일부 조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포함함

가. 법인세

- 법인세율을 현행 23%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함
 - ▶ 다른 국가들과의 조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제안함
 - ▶ 현행 노르웨이의 일반 법인세율은 23%이며, 이를 2019년부터 22%로 1%p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그룹 내 법인에 대하여 이자비용공제 제한을 강화함
 - ▶ 현행 노르웨이 「법인세법」상 관계회사 간 차입금 거래에 한해 세전이익 대비 일정 비율로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공제를 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25%까지만 허용함
 - 다만 납세자의 전체 순이자비용(이자비용 - 이자수입)이 500만노르웨이크로네 이하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제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 노르웨이는 이자비용공제와 관련된 OECD의 방침(BEPS Action 4)에 더욱 부합하는 취지에서 기업그룹 내 이자비용공제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5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09_no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10. 29)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alert-norway-8-october-2018.pdf>(검색일자: 2018. 10. 29)
 노르웨이 정부, <https://www.statsbudsjettet.no/Statsbudsjettet-2019/Artikler/Skattesatser-2019/>(검색일자: 2018. 10. 29)

- ▶ 개정안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연결그룹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포함될 기업
 - ▶ 개정안에 따르면 연결그룹 내 기업의 경우 관계사 간 차입금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자비용공제 제한 비율(EBITDA의 25%)을 적용함
 - ▶ 또한 개정안에서는 연결그룹 내 기업의 경우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의 면제 조항을 개별 납세자 단위가 아니라 연결그룹 내 전체 노르웨이 기업들의 이자비용이 2,500 백만노르웨이크로네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법인의 거주자 판정 요건을 명문의 규정으로 제시함
- ▶ 기존 노르웨이 세법상 법인의 거주지 판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함
 - 노르웨이 판례에서는 이사회 결의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가 노르웨이에 존재할 경우 거주자로 판정함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의사결정 장소가 노르웨이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우에는 거주자 판정이 불분명하였음
 - ▶ 개정안에서는 노르웨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노르웨이 거주자로 간주함
 - 다만 노르웨이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타방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노르웨이 거주자로 보지 않음
 - ▶ 또한 개정안에서는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노르웨이에 있을 경우 해당 법인을 노르웨이 거주자로 간주함
 -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사결정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적 관리활동 (day-to-day management)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 제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 개인소득세 일반세율을 현행 23%에서 22%로 인하하고 소득구간별 세율을 일부 조정함

- ▶ 노르웨이는 개인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 일반 단일세율 및 소득구간별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하는 복합적 과세구조를 적용함
 - 근로, 사업, 투자 등 각종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과세소득(general income)은 단일세율(현행 23%)을 적용함
 - 급여, 연금, 자영업소득 등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소득(personal income)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함
- ▶ 개정안에서는 일반 과세소득의 단일세율을 현행 23%에서 22%로 인하함
- ▶ 또한 개정안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개인소득 세율과 소득구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함

〈표 11-4〉 소득구간별 세율 비교

(단위: 노르웨이크로네, %)

현행		개정안	
소득구간	세율	소득구간	세율
169,000 이하	0	174,500 이하	0
169,000 ~ 237,900	1.4	174,500 ~ 245,650	1.9
237,900 ~ 598,050	3.3	245,650 ~ 617,500	4.2
598,050 ~ 962,050	12.4	617,500 ~ 993,300	13.2
962,050 초과	15.4	993,300 초과	16.2

- ▣ 종이출판물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 현행 세법상 서적 및 일부 출판물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전자서적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 개정안에서는 종이출판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자서적 및 전자출판물(e-books and electronic publications)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 ▣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방침을 제안함
 - ▶ 현행 노르웨이 세법상 배당소득 이외에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할 방침임을 천명하였으며, 관련 세부 법안은 2019년도에 제시할 예정임

3 덴마크 - 국제조세 관련 일부 법령 개정

[조세동향 18-09호]

- 덴마크 의회는 2018년 9월 6일자로 국제조세 관련 개정안을 담은 법률(Bill no. L237 A)을 승인함⁵⁸⁾
 - ▶ 거주자와 비교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에 불리한 조치들을 수정하는 취지를 담음
-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수령하는 배당에 대한 국내·외 법인 간 차별적 과세를 시정함
 - ▶ 현행 덴마크 세법상 외국 법인의 덴마크 고정사업장이 덴마크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공제 없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배당 지급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 해당 고정사업장은 배당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 이에 반해, 덴마크 내국 법인의 경우 배당금 수령 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차감하는 이중과세 배제 장치를 두고 있음
 - ▶ 이와 같이 덴마크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 간에 차등적 조치를 두는 것은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하는 EU 관련 조약⁵⁹⁾에 위배됨
 - ▶ 이에 따라 본 개정법령에서는 외국 법인의 덴마크 내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도 배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를 추가함

58)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Danish_Parliament_amends_certain_international_tax_provisions/\\$FILE/2018G_011075-18Gbl_Denmark%20amends%20certain%20international%20tax%20provisions.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Danish_Parliament_amends_certain_international_tax_provisions/$FILE/2018G_011075-18Gbl_Denmark%20amends%20certain%20international%20tax%20provisions.pdf)(검색일자: 2018. 9. 28)

59) Article 63 of the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및 Article 40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EEA) Agreement

- 비거주자 연금펀드(pension fund)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자에 준하여 개정함

 - ▶ 기존에는 연금펀드가 부동산자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과세상 차이가 있었음
 - 거주자 연금펀드의 경우 부동산소득에 대해 시가법(mark-to-market)을 바탕으로 15.3%의 세율을 적용하였음
 - 비거주자 연금펀드의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실현소득을 바탕으로 22% 세율을 적용하였음
 - ▶ 이러한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방침은 원활한 자본 이동을 위한 EU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됨
 - ▶ 이에 본 개정법령에서는 비거주자 연금펀드의 경우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시가법 및 15.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 단 해당 비거주자 연금펀드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 자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차별적 조치를 수정함

 - ▶ 기존 법령상 과소자본세제는 국내·외 지배주주가 덴마크 자회사에 제공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됨
 - 대여자인 지배주주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주인 경우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 가능함
 - 해당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인 경우 초과 차입금에 상응하는 이자 및 자본손실(capital loss)은 덴마크 자회사 과세 목적상 공제되지 않음
 - ▶ 기존 규정상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어 부인되는 이자비용 등은 국내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부인된 이자비용 또는 자본손실이 국내 주주 또는 외국 주주로서 덴마크 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 이와 달리 국내 주주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은 위와 같은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해외 자회사가 당해 소재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이자비용 및 자본손실이 공제되지 않더라도 이를 수령하는 덴마크 주주 단계에서 여전히 과세소득에 포함됨

- EU 사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차입금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에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법인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에 관한 EU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⁰⁾
- ▶ 이에 따라 개정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자회사 단계에서 이자비용 등이 부인되면 이를 수령하는 국내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
- 당해 해외 자회사가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소재 국가의 거주자일 것
- 해외 자회사가 덴마크의 과소자본세제와 유사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당해 이자비용 또는 자본손실의 비용 공제가 부인될 것
- 해외 자회사가 만약 덴마크 거주자였다 하더라도 국내 과소자본세제에 적용되어 이자비용 등이 부인될 것

4 독일

가.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조세동향 18-07호]

- 독일은 2018년 6월 27일 해외 판매업자가 독일 과세당국에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VAT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가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할 것을 제안함⁶¹⁾
- ▶ 이 제안내용은 「2018년 재정법」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재정법」 통과 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또한 EU 회원국은 2017년 12월 2021년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한 판매업자가 EU 회원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매출액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가 VAT를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지침에 합의한 바 있음

60) C-593/14, *Masco Denmark*, 2016, 12, 21.

61) "Germany -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for Annual Tax Act 2018," 27, June, 2018, News IBFD; TaxNotes, "Germany to Make Online Platforms Liable For Uncollected VAT," 2018, 7. 2.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 판매업자가 독일 법인에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VAT 사업자 등록 및 납부 의무가 없으나, 독일 개인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VAT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함⁶²⁾

 - ▶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charge mechanism)로 매입자인 독일 법인이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함
 - ▶ 독일 개인에게 연간 10만유로 미만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는 VAT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⁶³⁾

-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 정보, 물품인도 및 도착장소, VAT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VAT 납부증명서 등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판매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VAT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가짐⁶⁴⁾

 - ▶ 단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가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의 매출정보를 독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에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음
 - ▶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는 독일 거주자에 국한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통관과 동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연간 판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해외 판매자의 별도 VAT 납부 의무는 없으므로 VAT를 미납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는 관세 면세점과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150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달러)로 동일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이 징수됨
 - ▶ 반면 독일은 관세 면세점은 150유로,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22유로로 관세 면세점이 더 높아 효율적으로 VAT를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외 판매자가 독일 거주자에 연간 10만유로 이상 판매한 경우, VAT 사업자등록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므로 VAT 미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62) EY, *Worldwide VAT/GST and Sales Tax Guide*, 2017, p. 367.

63) J. Müller-Lee, *Germany - Value Added Tax*, Topical Analyses IBFD, section 11. 1. 2. 1.

64) EY,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Annual Tax Act 2018*, 2018. 7. 16.

나. 2018년 세법개정안 의회 통과

[조세동향 18-11호]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2018년 11월 23일에 ‘2018년 세법개정안’⁶⁵⁾을 승인함⁶⁶⁾

 - ▶ 독일 재무부는 2018년 6월 26일 과거 유럽사업재판소(ECJ)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국세법」에 반영하고, 온라인 거래로 발생하는 VAT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 개정안 초안은 2018년 11월 8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서 승인된 이후 이번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됨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 2) 지분을 과다 변동 시 결손금 이월공제 제한 규정 완화 3) 바우처 제공금액의 VAT 과세 시 EU 지침에 따라 바우처 정의 규정, 4)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VAT 대리납부가 있음⁶⁷⁾

- 독일 비거주자가 독일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외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본이득에 과세하도록 비거주자의 자본이득 과세 범위를 확대함⁶⁸⁾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독일에 설립장소 또는 영업장소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과거 5년간 1%라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함
 - ▶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거주자가 독일에 설립장소 또는 영업장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독일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과거 5년간 1%라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자본이득에 과세하도록 과세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과거 1년간 법인의 총자산 중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독일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보유한 법인을 말함

65) Gesetz zur Vermeidung von Umsatzsteuerausfällen beim Handel mit Waren im Internet und zur Änderung weiterer steuerlicher Vorschriften(draft bill to avoid VAT losses in connection with the supply of goods via online trading and to amend further tax provisions)

66) Germany - Federal Council adopts draft bill to avoid VAT losses in connection with supply of goods via online trading and to amend further tax provisions(26 Nov, 2018), News IBFD.

67) 개정안 세부내용은 EY, “German Federal Parliament adopts Annual Tax Act 2018”를 참조하여 작성함,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german-federal-parliament-adopts-annual-tax-act-2018>(검색일자: 2018. 11. 27)

68) PWC, <https://www.pwc.com/us/en/tax-services/publications/insights/assets/pwc-germany-to-extend-non-resident-capital-gains-taxation.pdf>(검색일자: 2018. 11. 27)

- ▶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3조 4항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201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 과거 5년간 지분율이 25~50% 범위 내에서 변동한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50% 이상 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 목적의 변동인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 ▶ 독일은 지난 2008년 세제개편 시 과거 5년 동안 25~50% 범위 내에서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50% 이상의 지분율 변동 시 결손금 전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바 있음
 - 이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결손금을 인수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이번 개정은 지분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한하는 2008년 세법 개정사항이 응능과세원칙(ability-to-pay principle)⁶⁹⁾ 및 과세 일관성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임⁷⁰⁾
 - ▶ 따라서 이번 개정사항은 소급 적용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함

〈표 II-5〉 독일의 지분율 과다변동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개정사항

구분	현행 ¹⁾	개정
최근 5년 이내 지분율 변동률 25% 이상~50% 미만	결손금 중 지분율만큼 이월공제 허용 안 함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 허용
최근 5년 이내 지분율 변동률 50% 이상	결손금 전액 이월공제 허용 안 함	좌동 (예외: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지분율 변동 시 이월공제 허용)

주: 1) 2008년 개정된 사항임

자료: EY, "German Federal Parliament adopts Annual Tax Act 2018"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EU 지침에 따라 단일목적 상품권(single-purpose voucher)과 다목적 상품권(multi-purpose voucher)의 정의 및 각 상품권의 과세시기를 규정함

69)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70) Germany -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inds change-in-ownership rules unconstitutional, 15, May, 2017, News IBFD.

- ▶ EU 지침에 따르면 단일목적 상품권은 발행 당시 사용처가 명확한 상품권을 말하며, 다목적 상품권은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정의함
 - ▶ 단일목적 상품권은 발행 당시 VAT를 과세하며, 다목적 상품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에 VAT를 과세함
 - ▶ EU는 2017년 6월 27일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의 VAT 과세 관련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⁷¹⁾, 독일은 EU 지침에 따라 「내국세법」을 개정함
-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독일 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독일 과세당국에 VAT를 납부하지 않는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하도록 개정함⁷²⁾
- ▶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는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의 정보, 물품인도 및 도착장소, VAT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VAT 납부증명서 등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VAT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 ▶ 이번 최종 승인된 개정안에서는 초안과 달리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체가 10년간 자료보관의무 규정을 추가함

5 룩셈부르크

가. 조세회피방지 관련 세법개정안 발의

[조세동향 18-07호]

-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의 조세회피방지 조치를 입법화한 법안을 2018년 6월 19일자로 의회에 제출함⁷³⁾

71)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16.177.01.0009.01.ENG&toc=OJ:L:2016:177:TOC(검색일자: 2018. 11. 27)

72) 자세한 개정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7호 참조

73)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22_lu_1.html&WT.z_nav

- ▶ 2016년 7월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방지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에 부합하도록 국제거래 및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 대응조치를 입법 화함
-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출국세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
- 출국세(Exit Tax)의 납부 유예 기간을 줄이고 즉시 납부해야 할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출국세 과세를 강화함
 - ▶ 현행 세법상 기간 제한 없이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최대 5년 이내 5차례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
 - ▶ 납세자의 신상 변동이나 의무 위반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분할 납부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제3국으로 매각·이전될 경우
 - 법인의 법적 소재지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경우
 - 납세자가 파산 또는 청산에 이른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후 12개월 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상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매년 소정의 양식을 통해 보고 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목적상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세전이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 ▶ 룩셈부르크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외국 법인의 룩셈부르크 고정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함
 - ▶ 연간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는 아래 둘 중 높은 금액으로 함
 - 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30%
 - 3백만유로
 -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Navigation(검색일자: 2018. 7. 26)

PWC, <https://www.pwc.lu/en/tax-consulting/docs/pwc-tax-200618.pdf>(검색일자: 2018. 7. 26)

- 납세자가 금융기관이거나 관계사 없는 별도기업체(stand-alone entity)일 경우
- 2016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 EU 회원국을 위한 장기간의 공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자

▣ 저세율국 소재 외국 법인의 소득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규정을 도입함

▶ 룩셈부르크 거주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 법인으로서 저세율로 과세되며 비정상거래(non-genuine arrangement)에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이를 룩셈부르크 지배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함

- 외국 법인에 대한 지배 요건: 당해 외국 법인에 대해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의결권 또는 이익 수취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 저세율 해당 여부: 당해 외국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룩셈부르크 세법에 의해 산출될 세액의 50% 미만일 경우
- 비정상거래 여부: 당해 외국 법인에 대한 지배-피지배 관계가 없었다면 동 소득 발생과 관련된 자산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비정상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단 아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당해 외국 법인의 당기 회계상 이익이 75만유로 이하이고 그중 상거래 이외의 이익(on-trading income)이 7만 5천유로 이하인 경우
- 당해 외국 법인의 당기 회계상 이익이 동 법인 운영비용의 10% 이하인 경우

▣ EU 회원국 내 관계회사와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es) 거래로 발생한 이중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함

▶ 룩셈부르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룩셈부르크 고정사업장이 EU 회원국 소재 관계 회사와 수행한 거래를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함

▶ 혼성불일치는 아래와 같이 이중의 손금공제 또는 대응 익금 없는 손금산입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타방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내에서도 법인세 목적상 공제되는 경우
-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관련 타방 EU 회원국 내에서 익금

산입되지 않는 경우

- ▶ 당해 규정 도입에 따라 혼성불일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법인세 목적상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함
 - 비 EU 회원국 소재 관계사와의 혼성불일치 거래 등 보다 세부적인 규정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나.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조세동향 18-08호]

- 룩셈부르크 의회는 연결부가가치세(VAT group) 도입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여 2018년 8월 8일자로 공포함⁷⁴⁾
 -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Article 11 of the EU VAT Directive, 2006/112)을 참고하여 국내 세법에 도입함
 - ▶ 연결그룹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고 구성원들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1) 연결부가가치세제 적용 요건

- 연결부가가치세는 룩셈부르크 내 거주하는 사업실체들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해당 그룹 구성원들은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거나 고정사업장을 룩셈부르크 내에 두어야 함
- 연결그룹 구성원들 간에 지분적 연결관계(financial link)가 존재하여야 함
 - ▶ 연결그룹을 구성하는 실체들 간에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control)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지분적 연결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의결권의 과반 이상을 보유한 경우

7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8-15_lu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8. 29)
 PWC, <https://www.pwc.lu/en/private-equity/newsletters/newsletter-july-2018/news3.html>(검색일자: 2018. 8. 30)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진 또는 감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주이면서 기타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동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 과반을 행사하는 경우
- ▶ 그룹 실체들 간에 지분적 연결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매년 확인받아야 함
- 연결그룹 구성원들 간의 사업활동에 경제적 연결관계(economic link)가 있어야 함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연결그룹 실체들의 사업활동이 상호 유사하거나 보충적, 호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함
 - 그룹 내 모든 실체들이 동일한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그룹 구성원들의 사업활동이 보완적이거나 상호 의존적일 경우
 - 한 그룹 실체의 사업활동이 그룹 내 다른 구성원에게 혜택이 되는 경우
- 연결그룹 구성원들 간에 조직적 연결관계(organizational link)가 존재하여야 함
 - ▶ 그룹 구성원들 간에 관리 조직을 공유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해당 실체들이 동일한 관리조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영되거나 상호간 협력 또는 동일인의 지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

2) 연결부가가치세제 적용

- 해당 연결그룹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그룹 구성원들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음
 - ▶ 그룹 구성원 중 지배적 실체 또는 가장 매출규모가 큰 실체가 대표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되, 각 실체들은 부가가치세 채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짐
 - ▶ 구성원들 간 재화 및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음
 - ▶ 연결그룹으로 지정하면 최소 2년간은 해당 지위를 유지해야 함

■ 연결부가가치세제는 국내 거래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 내 고정사업장과 해외 본사와의 거래와 같이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6 벨기에

가. 톤세제도 개정안 공표

[조세동향 18-08호]

■ 벨기에는 2018년 7월 3일 최종 승인된 톤세제도 개정내용을 공표(official gazette)함⁷⁵⁾

- ▶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한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톤세율을 곱하여 추정한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임⁷⁶⁾
 -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물품·승객 등 해상운송으로 발생한 소득, 선박대차로 발생한 소득, 선박관리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음
 - 해운기업은 톤세제도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톤세제도 적용 시 10년간 유지됨⁷⁷⁾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해운활동 범위 확대, 2) 선박 양도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인하는 요건을 신설함

- ▶ 기존에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선박을 벨기에 선박(해상운송 목적의 선박은 EU 소속 선박)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경제지역(Europe Economy Area) 선박으로 대상을 확대함
- ▶ 또한 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조적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도 톤세제도를 적용함
- ▶ 기존에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은 선박 양도소득에 비과세하는 조세혜택이

75) Belgium - Bill on various VAT amendments gazetted(13 Aug. 2018), News IBFD.

76) KPMG, *Shipping Brochure 2016 - Investment in Belgium*, 2016, pp. 15~18.

77)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9.9, Country Analyses IBFD.(검색일자: 2018. 8. 30)

적용되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배제함

- 톤세제도가 처음 적용된 이후 24개월 내에 선박을 양도함
- 2018년 1월 1일 이후 순 톤수(net tonnage)가 30% 이상 영구히 감소함
- 톤세제도가 적용되는 해운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9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나. Action 4 권고사항 시행시기 변경안에 합의

[조세동향 18-08호]

▣ 벨기에는 2018년 7월 24일, 2018~2019년 예산안에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인 이자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안을 담기로 최종 합의함⁷⁸⁾

- ▶ 기존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변경할 예정임

▣ 벨기에는 2017년 12월 EU 조세회피방지지침을 내국법에 반영하여 손익기준의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⁷⁹⁾, EU 지침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EU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것임

-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은 모든 EU 회원국이 2019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하며, 지침에서 제안한 규정이 내국법에 있는 경우 시행시기의 연장을 허용함
- ▶ 벨기에는 내국법에 규정된 과소자본세제가 EU 지침에서 제안한 규정에 준하는 제도로 보지 않아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결정함

7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belgium-reaches-agreement-on-2018-19-budget-including-on-the-timing-of-interest-limitation-rule-under-eu-atad>(검색일자: 2018. 8. 30)

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02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벨기에-2018년부터-적용되는-법인세-개정안-최종-승인/525264 참조

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공표

[조세동향 18-08호]

- ▣ 벨기에는 2018년 7월 30일 최종 승인된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을 공표(official gazette) 함⁸⁰⁾

 - ▶ 2018년 6월 VAT 개정안 의회 제출, 2018년 7월 의회 승인을 받은 개정사항을 공표한 것임

- ▣ 주요 개정내용으로 1) VAT 면세 대상 확대, 2) 매입세액공제 허용 대상 확대, 3)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자 축소, 4)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청 서류 간소화가 있음⁸¹⁾

 - ▶ 자선 목적으로 음식(주류 제외) 기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VAT를 면세함
 - ▶ VAT가 면세되는 근로자의 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용역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내부에 설치된 기관을 통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VAT를 면세함⁸²⁾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부 기관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담 지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VAT를 면세함⁸³⁾
 - ▶ 견본품, 시음 목적으로 구입한 주류(spirited drink)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 기존 규정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주류 구입액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⁸⁴⁾
 - ▶ 간이과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9년 1월부터 적용하며, 간이과세제도 적용 대상자를 축소하는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간이과세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납세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발표할 예정임
 - ▶ 현재 건물신축 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이번 개정으로

80) Belgium - Bill on various VAT amendments gazetted(13 Aug. 2018), News IBFD.

81) 개정내용은 의회에 개정안 제출 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자료: Belgium - Draft bill on various VAT amendments submitted to parliament(08 June 2018), News IBFD.)

82) 벨기에 기업은 직장 내 문제 상담, 건강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벨기에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자료: OECD, *MENTAL HEALTH AND WORK: BELGIUM*, box 3. 2, 2013).

83) 벨기에 「부가가치세법(VAT code)」 §44(2)(2)

84) M. Govers, Belgium - Value Added Tax, Topical Analyses IBFD, section 9.2(검색일자: 2018. 8. 30)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건축물 형태, 구조 등과 같은 건축과 관련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도록 개정됨

- 이번 개정으로 건축계획, 건축상세내용, 자가건축 또는 특수관계인의 무상건축 등 기타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며, 신축 건물에 대한 첫 재산세 부과일로부터 5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짐⁸⁵⁾
- 과세당국에서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⁸⁶⁾

▣ 위의 개정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간이과세제도 (flat-rate scheme)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라.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의 시범사업 시행

[조세동향 18-11호]

▣ 벨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Co-operative Tax Compliance Program)’의 시범사업을 이행할 계획임⁸⁷⁾

- ▶ 최근 많은 국가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협력을 통해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OECD의 조세행정포럼에서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납세순응제도의 설계를 제안한 바 있음

▣ ‘협력적 납세순응 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뢰, 투명성,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국세청이 제공함⁸⁸⁾

▣ 주요 내용으로 1) 국세청 내 기업전담 담당자 제공 2) 세무조사 간소화 및 기간 단축 3) 기업에 유용한 과세사례 정보 공유가 있음

- ▶ 국세청 내 기업전담 담당자를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조세 이슈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사전 논의를 진행함

85) 벨기에 「부가가치세법(VAT code)」 §64(4)

86) 상동

87) Belgium - Co-operative Tax Compliance Programme initiated(31 Oct. 2018), News IBFD.

88) 벨기에 재무부, <https://financien.belgium.be/nl/ondernemingen/grote-ondernemingen/co-operative-tax-compliance-programme>(검색일자: 2018. 11. 26)

- 국세청 내 대기업 담당부서에 있는 자 중 1명의 코디네이터와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담당자는 5년 주기로 변경함
 - ▶ 세무조사는 과거 거래에 대한 조사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신고서 작성까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시킴
 - ▶ 납세자에게 과세 확실성을 주기 위해 기업에 유용한 과세사례 정보를 제공함
- 프로그램 참여 시 기업은 과세관청과 분쟁 및 과세위험(tax risk)을 줄일 수 있고, 국세청 내 기업 담당자 배정으로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소통 및 과세 확실성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시범사업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임
- ▶ 적용 대상 대기업은 총매출액, 총자산금액, 종업원 수, 세금납부액, 계열사 수와 같은 정량적 요소와 과거 3년간 기한 내 세액납부 여부, 각종 채무 불이행 또는 법규위반 여부와 같은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함

7 스웨덴

가. 조세회피방지 강화 법안 발의

[조세동향 18-09호]

- 스웨덴은 2018년 9월 4일, 조세회피방지 강화 법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함⁸⁹⁾
-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과세제도 등 조세회피방지 및 조세법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조치들을 제시함

89)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9-06_se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9. 2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18/09/skarpta-atgarder-mot-skatteundrandragande-skatteflykt-och-ekonomisk-brottslighet/>(검색일자: 2018. 9. 28)

- CFC 규정 적용이 면제되는 해외 국가 목록(white list)을 일부 조정하여 면제 대상 국가 범위를 축소함

 - ▶ EU의 조세회피방지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CFC 규정을 일부 강화함
 - ▶ 스웨덴의 CFC 규정은 거주자가 지배하는 특정 외국 법인의 소득이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해당 소득을 거주자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 동 규정은 국내 법인 및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개인납세자에게도 적용 가능함
 - 스웨덴 납세자가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는 특정 외국 법인의 실효세율이 12.1%(스웨덴 법인세율 22%의 55%에 해당)보다 낮을 경우 기본적으로 CFC 규정 적용 대상임
 - 다만 스웨덴은 전세계 약 150여개 국가를 white list로 지정하고, 특정 외국 법인이 동 목록에 포함된 국가에 소재할 경우 해당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CFC 규정 적용을 면제함
 - ▶ 동 개정법안에서는 몰타(Malta) 등 일부 국가를 면제 대상 white list에서 제외함으로써 특정 외국 법인이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CFC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
 - 몰타의 자국 세법상 외국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전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등 사실상 저세율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while list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토록 함
 -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로열티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white list에 따른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이 외에도 조세범칙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정보의 자동적 교환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밝힘

 - ▶ 신분 도용, 위조 및 자금세탁 등을 활용한 특정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집행권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명의 도용 및 위조 등 특정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을 적시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독자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 특정 조세범칙에 대한 과세당국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관련 납세자의 기타 과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함
 - ▶ 스웨덴이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상대 국가의 범위를 확대함

나. 2019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스웨덴은 '2019년 예산안(Budget for 2019)'을 2018년 11월 15일자로 의회에 제출함⁹⁰⁾
 - ▶ 의회는 2018년 12월 12일, 전반적인 예산안 체계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향후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표결에 들어갈 예정임
 - ▶ 대규모 세제개편안보다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일부 요율 변경 등 기술적인 수정 사항들을 포함함

- (법인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급율을 조정함
 - ▶ 현행 스웨덴 「법인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총 31.42%에 달하는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하며, 그 세부 항목별 요율은 <표 II-6>과 같음

<표 II-6> 사회보장부담금 세부 항목별 요율

(단위: %)

구분	항목	부담률
(1)	퇴직연금보험(retirement pension insurance)	10.21
(2)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4.35
(3)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2.64
(4)	유족연금보험(survivor's pension insurance)	0.7
(5)	자녀양육보험(parenthood insurance)	2.6
(6)	산재보험(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0.2
(7)	일반급여세(general salary tax)	10.72
	합계	31.42

자료: IBFD, Swede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4. Taxes on Payroll, November 1, 2018.

- ▶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및 유족연금보험에 대한 법인 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일부 인하 또는 인상함
 - 건강보험: 현행 4.35%에서 3.55%로 인하

90)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13_se_1.html(검색일자: 2018. 12. 19)

- 유족연금보험: 현행 0.7%에서 0.6%로 인하
- 일반급여세: 현행 10.72%에서 11.62%로 인상

▣ (개인소득세)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경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장부담금 요율 개정 등의 사항을 포함함

- ▶ 65세 이상 고령자면서 소득금액이 스웨덴크로네 20만 7천 이상 117만 7천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기본소득공제 금액을 일부 인상함으로써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임
-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일반급여세(general salary tax) 항목에 대한 부담률을 일부 인상함
 - 일반급여세: 현행 10.72%에서 11.62%로 인상
-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건강보험과 유족연금보험은 일부 인하함
 - 건강보험: 현행 4.44%에서 3.64%로 인하
 - 유족연금보험: 현행 0.7%에서 0.6%로 인하

8 스위스

가. 의회 「법인세법 개정안」(TP 17) 최종 채택

[조세동향 18-10호]

- ▣ 스위스 의회는 2018년 9월 28일, 「법인세법 개정안」 ‘Tax Proposal 17’(이하 ‘TP 17’)을 최종 채택함⁹¹⁾
 - ▶ TP 17은 2017년 9월 초안 발표 이후 2018년 1월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의회에서 최종안이 채택된 것임

91) Switzerland - Federal parliament adopts corporate tax reform 17(02 Oct, 2018), News IBFD.

- 스위스의 「법인세법」 개정은 칸톤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혜택 운영으로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을 우대하여 EU의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다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적에 따른 것임⁹²⁾
- 과거에도 EU 지적에 따라 「법인세법 개정안」 ‘Corporate Tax Reform III(CTR III)’을 발표하였으나 국민투표 결과 부결되었으며, 이번에 채택된 「법인세법 개정안」 ‘TP 17’은 과거 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 ‘CTR III’ 이후 2017년 9월 새롭게 발표한 것임
 - ▶ 과거 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 ‘CTR III’에서는 칸톤별로 다국적 기업에 제공하는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칸톤의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유해조세제도에 OECD의 BEPS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⁹³⁾
 - 「법인세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있는 것은 세제혜택 외에 기반시설의 이유도 존재하기 때문에 칸톤별 법인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김을 주장함⁹⁴⁾

〈표 II-7〉 스위스의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 TP 17 채택 연혁

구분	내용
2017. 2	「법인세법 개정안」 CTR III의 국민투표 부결
2017. 6	스위스 연방 칸톤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 채택
2017. 9	스위스 의회는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2018. 1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에 대해 의회 논의 진행
2018. 9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 의회에서 최종 채택

-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1) 칸톤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제도 폐지 2) 특허박스제도 도입 3) R&D비용 추가 공제 4) 기업의 이자비용공제 확대가 있음
 - ▶ 칸톤별로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하는 조세혜택제도를 폐지해야 함
 - ▶ 칸톤별로 특허박스제도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특허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90%까지 경감세율을 적용함

92) Taxnotes, “Parliament Close to Passing Corporate Tax Reform Package,” 2018. 9. 24.

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7-2호, ‘스위스 - 법인세율 인하안 국민투표 부결’ 참조

94) 상동

-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범위는 칸톤별로 정할 수 있음
 - ▶ R&D비용 중 인건비의 50%, 기타 R&D비용의 35%, 아웃소싱한 국내 R&D비용의 80%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비용 공제가 가능함
 - ▶ 자본잉여금에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함
 - ▶ 단 특허박스제도에 따른 소득경감액, R&D비용 추가 공제액, 이자비용공제에 따른 공제 합산금액은 과세소득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소득공제 한도비율은 칸톤별로 정할 수 있음
- 위의 개정내용 외에 칸톤정부에 배분하는 연방세수 비중 인상, 지적재산권 보유 및 양도 시 칸톤별로 경감세율 적용, 경영참가주의 배당소득 과세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 ▶ 칸톤정부에 배분하는 연방세수는 현행 17%에서 21.2%로 인상함
 - ▶ 지적재산권 보유로 인한 부유세 및 지적재산권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 연방정부의 경우 경영참가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 60%(사업용 자산으로 보유 시 50%)만 과세하던 것에서 배당소득의 70%만큼 과세하도록 과세범위를 확대함
 - 칸톤정부의 경우 경영참가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소 50% 이상 과세해야 함
- 위의 세법개정안 중 논쟁이 있는 사안은 국민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않으면 세법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유권자 5만명 이상이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거나, 8개 칸톤 모두가 국민투표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⁹⁵⁾

나. OECD Global Forum의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 초안 채택

[조세동향 18-12호]

- 스위스 의회는 2018년 11월 21일, OECD의 ‘과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포럼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⁹⁶⁾의

95) 상동

96) OECD의 글로벌 포럼은 현재 15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목적상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 초안(dispatch)을 채택함⁹⁷⁾

- ▶ 2016년 7월 26일, 스위스의 과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 이행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스위스 기업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 스위스 재무부는 2018년 1월에 OECD 글로벌 포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통과된 개정사항으로 1)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registered shares) 또는 거래소등록주식(intermediated shares)으로 전환, 2) 주식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의 기록 및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⁹⁸⁾

- ▶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함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스위스의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상 보고 의무에 의해 기업주식 소유주의 투명성이 보장됨
 -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의 무기명주식 발행이 가능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비상장기업의 무기명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 주식의 실질적 수익자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과태료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미루어볼 때 최대 1만프랑(약 1,100만원)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 스위스 재무부는 2019년 봄부터 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 또는 거래소등록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⁹⁹⁾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해야 하고, 회원국 간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자료: OECD,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검색일자: 2018. 12. 24)

97)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adopts dispatch on implementation of Global Forum's recommendations(26 Nov. 2018), News IBFD.

98) 개정안 초안은 CMS Law-Now에서 2018년 3월 7일 발표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CMS Law-Now, <http://www.cms-lawnow.com/ealerts/2018/03/farewell-to-bearer-shares-and-introduction-of-criminal-sanctions>(검색일자: 2018. 12. 24)

99) 스위스 재무부,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73051.html>(검색일자: 2018. 12. 24)

9 스페인

가. 2018년 예산법안 의결

[조세동향 18-07호]

- ▣ 세법개정을 담은 2018년 예산법안(Budget Bill for 2018)이 2018년 7월 4일자로 의결· 공포됨¹⁰⁰⁾

 - ▶ 스페인은 2018년 4월 3일자로 관련 예산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 7월 4일자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됨
 - ▶ 무형자산 및 영화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요건 개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개인소득세 경감, VAT 및 물품세 일부 개정 등을 담음

1) 법인세

- ▣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대상인 무형자산 종류를 변경함

 - ▶ 스페인은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를 통해 특허 등 무형자산을 창출한 법인이 해당 무형자산 사용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60%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함
 - ▶ 이번 개정법안은 OECD BEPS Action 5의 권고에 따라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무형자산을 위주로 특허박스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 OECD는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근거하여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특허권, 소프트웨어, 기타 유용성 및 창의성이 높은 무형자산 등이 연계접근법의 취지에 부합함
 - ▶ 동 개정법안에서는 OECD의 연계접근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인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100)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7-10_es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7. 26)

- 특허권 이외에도 고급 소프트웨어, 의약품 및 식물 제제에 대한 보충적 보호 인증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을 특허박스 적용 대상 무형자산으로 추가함
- 상표권(trademark), 문학·예술·과학 작품, 도면(plan), 비밀공식(secret formulas) 및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 등은 특허박스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 특허박스 적용 대상인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총수입(income)이 아니라 개발 원가 등을 공제한 뒤의 순이익(profit)을 바탕으로 산출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영화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의 부대조건으로 영화 관련 정보 및 산출물 제공 등의 협조의무를 부과함
 - ▶ 스페인은 자국 내 영화산업 진작을 위하여 영화 또는 시청각자료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법」상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 스페인 내 영화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첫 1백만유로까지는 25%, 초과부분은 2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부여함(총제작비용의 40%를 한도로 함)
 - ▶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관련 정보 표시 및 영상물 사본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영화 상영본 및 관련 홍보물에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실, 스페인 내 영화 제작 장소, 정부와의 협력관계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영상물 사본 및 기타 관련 영상물을 소정의 기관(Cinematography and Audiovisual Arts Institute)에 제공하고, 문화·관광 진흥 목적상 일부 자료를 복제(reproduc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2) 소득세

- 소득세 과세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기타 세액공제 및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과세부담을 경감함
 - ▶ 개인소득세 면세점(threshold)을 인상하여 과세 면제되는 대상을 확대함
 - 기존에는 연간 총소득 1만 2천유로였으나 이를 1만 4천유로로 인상함
 - ▶ 대가족의 최저 요건¹⁰¹⁾을 초과하는 자녀를 둔 가족에게 추가 자녀 1인당 600유로의

101)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자녀 3명 이상이면 대가족에 해당함

세액공제를 적용함

▶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함

- 2018년: 현행 2,500유로에서 1만유로로 인상
- 2019년: 2만유로
- 2020년: 4만유로

□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가능 금액을 조정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확대함

-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기타 과세소득이 연간 6,500유로 미만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최고 3,700유로에서 5,565유로까지 인상함
 - 기존에는 연간 근로소득 1만 4,450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11-8〉 현행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1,250 미만인 경우	3,700
근로소득이 11,250 이상 14,450 미만인 경우	$3,700 - 1.15625 \times (\text{근로소득} - 11,250)$
근로소득이 14,450 이상인 경우	0

자료: IBFD, "Country Analyses-Spain Individual Taxation," sec. 1, 3, 6.(검색일자: 2018. 7. 10)

- 개정안에서는 연간 근로소득 1만 6,825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11-9〉 개정안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3,115 미만인 경우	5,565
근로소득이 13,115 이상 16,825 미만인 경우	$5,565 - 1.5 \times (\text{근로소득} - 13,115)$
근로소득이 16,825 이상인 경우	0

자료: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7-10_es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7. 26)

- 신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
 - ▶ 기존 법령에서는 개인납세자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30%로 인상함
 -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분 투자액의 최대 한도 또한 연간 5만유로에서 6만유로로 인상됨

3) VAT 등 간접세

- 극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되고,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물품세율을 일부 인하함
 - ▶ 영화 극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1%에서 10%로 경감함
 - ▶ 불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배출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단위당 물품세 적용세율을 현행 0.020%에서 0.015%로 인하함
 - ▶ 아래와 같이 발전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수입 관련 물품세가 면제됨
 - 발전(generation), 전력 생산 장소에서의 자가소비 또는 공동 발전(cogeneration)

나. 2019년 예산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스페인은 2018년 10월 17일자로 2019년 예산안 초안(Draft Budget 2019)을 발표함¹⁰²⁾
 - ▶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고소득 개인소득세 인상,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이번 초안은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발표한 것으로 향후 세부적인 개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102)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17_es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10. 29)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panish-council-of-ministers-approves-anti-tax-evasion-bill-proposal-which-includes-implementation-of-atad-and-creation-of-digital-services-tax-and-financial-transactions-tax>(검색일자: 2018. 10. 29)

1) 법인세

- ▣ 대기업에 과세소득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함

 - ▶ 기존 스페인 「법인세법」상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당해연도 산출세액의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였음
 - ▶ 개정안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함으로써 조세감면 혜택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
 - ▶ 최저한세는 연결과세 대상 기업들 및 개별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2,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됨
 - ▶ 최저한세 적용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이익을 뜻함
 - ▶ 최저한세 적용 비율은 과세소득의 15%로 하되 일부 업종에는 18%가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스페인의 일반 법인세율은 25%이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최저한세율은 15%를 적용함
 - 일부 금융기관, 석유·가스 채광업 등은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18%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 배당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을 수정하여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감면 비율을 기존 100%에서 95%로 축소함

 - ▶ 기존 법령에 따르면 내국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스페인 법인이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소득에서 면제하였음
 - ▶ 개정안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0%에서 95%로 축소하여 적용함
 -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조치를 도입함

 - ▶ 연간 매출액 100만유로 이하인 소규모 기업들에는 현행 법인세율 25% 대신 23%의 경감 세율을 적용함

2) 개인소득세

- 종합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일부 인상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 현행 스페인의 개인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6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게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며, 이는 자본이득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 개정안에서는 과세대상 종합소득 13만유로 이상 소득자의 경우 2%p, 3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게는 4%p만큼 각각 세율을 인상함
 - ▶ 또한 개정안에서는 14만유로 이상의 자본이득세율을 4%p만큼 인상함

- 부유세(net wealth tax) 세율을 일부 인상하여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 과세대상 순재산 과세표준이 1,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부유세율을 1%p만큼 인상함
 - 현행 스페인 세법상 부유세율은 최저 0.2%에서 최고 2.5%까지 누진세율 구조임
 -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이 1,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2.1% 또는 2.5%)은 각각 1%p씩 인상하여 적용할 예정임

〈표 II-10〉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부유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구간	세율
167,129 이하	0.2
167,129 ~ 334,252	0.3
334,252 ~ 668,499	0.5
668,499 ~ 1,336,999	0.9
1,336,999 ~ 2,673,999	1.3
2,673,999 ~ 5,347,998	1.7
5,347,998 ~ 10,695,996	2.1
10,695,996 초과	2.5

자료: Spanish Property Insight, "Spanish Wealth Tax(Patrimonio)."

3) 금융거래세

- 스페인은 주식 취득 시 금융거래세 0.2%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함

 - ▶ EU 회원국의 금융거래세 적용 추세 및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정함
 - ▶ 금융거래세는 간접세 항목으로써 주식구매 주문을 실행하는 기관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거래징수토록 함
 - ▶ 주식 취득가액에 0.2%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금융거래세는 스페인에서 대규모 기업으로 상장된 주식의 취득을 과세대상 거래로 함

 - ▶ 시가총액이 10억유로를 초과하는 스페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써, 스페인 주식시장 또는 EU 회원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취득에 적용됨
 - ▶ 전환사채, 파생상품 등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s) 등의 취득 또한 과세대상에 포함됨

- 금융거래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공개 등 특정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함

 - ▶ 과세표준 금액은 중개수수료 및 기타 거래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거래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거래시장의 최근 종가를 적용할 수 있음
 - ▶ 기업공개(IPO)에 따라 발행된 주식, 동일 기업집단 내 거래된 주식, 기업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거래된 주식,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거래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면제됨

4) 디지털서비스세

- 특정 디지털서비스 거래에 대하여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간접세(digital service tax)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함

 - ▶ 디지털서비스 과세와 관련된 EU의 제안¹⁰³⁾을 참고하여 과세방안을 수립함

103)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 ▶ 디지털경제 과세방안이 확립되기 이전에 일부 거래에 대한 과세를 우선 시행하는 잠정적인 과세조치(interim tax)에 해당함
 - ▶ 특정 디지털용역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사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간접세에 해당함
- 디지털용역세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관여도가 높은 디지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함
- ▶ 온라인 광고 서비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
 - ▶ 온라인 중개 서비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이들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 ▶ 온라인 데이터 제공 서비스: 디지털 인터페이스상에 축적된 사용자 활동정보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 디지털용역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스페인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됨
- ▶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온라인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세금은 제외한 가액으로 함
 - ▶ 해당 디지털서비스 사용자가 스페인 내에 소재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IP 정보 등을 활용하여 스페인 내 소재 여부를 확인함
 - ▶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000만유로 이상이고 스페인 내 과세대상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이 연간 3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과세됨

다. 조세회피 대응 법안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스페인은 조세탈루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measures to prevent and fight tax fraud)을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March 21, 2018.

2018년 10월 23일자로 발표함¹⁰⁴⁾

-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과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출국세(exit tax) 일부 수정사항 등 조세회피방지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시함
 - EU의 조세회피방지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의 취지를 반영함

■ 지주회사에 적용하던 CFC 규정 적용 제외혜택(safe harbor)을 폐지함

- ▶ 현행 법령상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1년 넘게 보유한 지주회사에는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동 지주회사가 단순히 자산만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지분 투자를 관리할 인적 및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함
- ▶ 개정안에서 위 예외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CFC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규정 적용을 받게 됨
 - 단 EU 지역 소재 지주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입증된다면 CFC 예외조항의 적용이 여전히 가능함

■ CFC 규정의 적용 대상 기업 및 소득 범위가 확대됨

- ▶ 외국 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도 CFC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 ▶ CFC 규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수동적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신규로 추가함
 - 당해 외국 법인이 중요한 가치 창출을 하지 않는 매출 및 서비스 소득
 - 보험, 리스 및 금융 관련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경우

■ 출국세(exit tax)의 납부 유예기간을 줄이고 즉시 납부해야 할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출국세 과세를 강화함

- ▶ 현행 세법상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국가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10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1-05_es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11. 26)
 E&Y, <https://taxinsights.ey.com/archive/archive-news/spanish-council-of-ministers-releases-draft-anti-tax-evasion-bill-for-public.aspx>(검색일자: 2018. 11. 26)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최대 5년 이내에 연도별 분할 납부하도록 함

- ▶ 납세자의 신상 변동이나 의무 위반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분할 납부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해당 자산이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 납세자가 파산 또는 청산에 이르게 된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세 투명성, 경제적 실질, 저율 과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조세피난처 개념 범위를 확대함

- ▶ OECD BEPS Action Plan 5 등을 참고하여 조세피난처의 개념 정의와 범위를 확대함
- ▶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 영토 또는 과세체제(tax regimes)를 조세피난처의 범위에 추가함
 - 관련 세법의 규정이나 실제 집행 수준에 비춰볼 때 과세 투명성이 낮고 불명확성이 높은 경우
 - 실질적인 경제활동 없이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또는 투자기구를 설립·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과세만 하는 경우

■ 내국 및 외국 ETF 간 과세형평 제고, 가상통화 관련 정보 제공의무 강화, 수입거래에 대한 VAT 납세의무 강화 등의 기타 개정사항을 포함함

- ▶ 스페인 이외의 EU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펀드 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과세 이연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국내 ETF 펀드와의 과세 일관성을 유지함
- ▶ 납세자들이 해외 보유 자산을 신고하는 서식에 가상통화 보유금액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 ▶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통관대리인 이외에도 수입자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자를 VAT 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VAT의 부차적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함

10 아일랜드

가. 「법인세법」 개정방향(Corporate Tax Roadmap) 발표

[조세동향 18-09호]

-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8년 9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법인세 개정현황 및 향후 법인세 개정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함¹⁰⁵⁾

 - ▶ 향후 법인세 개정방향의 내용으로 2017년 9월에 발표된 「법인세법」 개정 권고사항의 내용¹⁰⁶⁾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의 이행을 담음
 - ▶ 또한 OECD BEPS의 다자간협약, 의무보고규정, 분쟁해결장치지침 등 기타 국제적 기준의 이행 여부 및 향후 도입 계획의 내용을 담음
-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중 피지배외국법인(CFC) 과세제도, 출국세,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내국세법에 도입할 것을 확정함

 -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중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 역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은 「2019년 재정법」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논의를 거친 후 입법할 예정임
 - ▶ 아일랜드 재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사항을 확정된 후 「2019년 재정법 (finance bill)」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표 II-11〉 아일랜드의 EU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계획

구분	조항	조항 내용	지침상 도입기한	도입 여부
ATAD 1	4	이자비용공제제한규정 도입	2019.1.1. (단 OECD 권고사항에 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023년까지 도입 유예)	EC의 컨설팅 이후 도입 예정

105) 아일랜드 재무부, *Ireland's Corporation Tax Roadmap*, 2018. 9.; TaxNotes, Irish Corporation Tax Roadmap Includes Plans for New CFC Rules, 2018. 9. 10. 인용

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아일랜드-「법인세법」 개정 권고사항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표/525091(검색일자: 2018. 10. 2)

〈표 II-11〉의 계속

구분	조항	조항 내용	지침상 도입기한	도입 여부
ATAD 1	5	출국세 도입	2020.1.1	2020.1.1.부터 도입 - 1997년 도입한 제도 대체 - Finance bill 2019에 포함 될 예정
	6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도입	2019.1.1.	이미 지침에 준하는 규정 존재함
	7&8	피지배외국법인(CFC) 제도 도입	2019.1.1	2019.1.1.부터 도입 - Finance bill 2019에 포함 될 예정
ATAD 2	9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2020.1.1	Finance bill 2019에서 도입 예정
	9a	역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2022.1.1	ATAD 지침상 일정에 따라 향후 Finance bill을 통해 입 법할 예정

자료: 아일랜드 재무부, *Ireland's Corporation Tax Roadmap*, 2018. 9.

- 또한 위의 「법인세법」 권고사항 및 EU 지침 이행 외에 이전가격 규정 개정, 원천지과 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2019년 초 논의할 예정임을 발표함

나. 2019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8년 10월 9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개정안 내용을 담음¹⁰⁷⁾
- 소득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1)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인상, 2) 양육자공제액(Home Carer Credit) 및 근로장려세제 인상, 3) 거주용 부동산 관련 대출

107) Ireland - Budget for 2018 - details(12 Oct. 2017), News IBFD.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공제 허용 등이 있음¹⁰⁸⁾

- ▶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만 4,550유로에서 3만 5,300유로로 750유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양육자공제액¹⁰⁹⁾을 현행 1,200유로에서 1,500유로로 300유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2017년의 양육자공제액은 1,100유로였음
-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한도를 현행 1,150유로에서 1,350유로로 200유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거주용 부동산의 구입 및 수리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우 지급한 이자비용을 전액공제할 것을 제안함

■ 법인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EU 지침에 따른 출국세 및 CFC제도의 도입,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및 창업회사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이 있으며, 법인세율 12.5%는 계속 유지할 것을 발표함¹¹⁰⁾

- ▶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는 2015년 1월 신규 도입된 제도로 아일랜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제작업체에 제작비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¹¹¹⁾ 이번 예산안에서는 일몰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함
 -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25만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 지출비용은 12만 5,000유로 이상이어야 함
 -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격 지출비용, 총제작비의 80%, 7천만유로 중 작은 금액의 32%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함¹¹²⁾
- ▶ 창업회사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9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4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창업 이후 3년간 납부세액을 면제하며¹¹³⁾, 일몰기한을 기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함

108) Ireland - Budget for 2019 - individual tax(10 Oct. 2018), News IBFD.

109) 양육자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집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인원 1명당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소득이 5,080유로 초과 시 양육자공제액의 50%만 세액공제를 허용함

110) Ireland - Budget for 2019 - corporation tax(10 Oct. 2018), News IBFD.

111) Ireland - New film withholding tax and new film relief scheme - guidance published(15 Jan. 2015), News IBFD.

112) S. Ruane, Ireland - Corporate Taxation sec. 1.4.9, Country Analyses IBFD(accessed 23 Oct. 2018).

113) Ireland - Budget for 2009(direct tax) - details(15 Oct. 2008), News IBFD.

-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여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 전자책 및 전자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안함¹¹⁴⁾

 - ▶ 여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9%에서 13.5%로 인상함
 - ▶ 전자서적 및 전자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3%에서 9%로 인하함
 - 종이서적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종이신문은 9%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기타 세목의 개정내용으로 일부 담배의 담배소비세 인상, 디젤차량의 차량등록 시 부가세 부과 및 하이브리드·전기차량의 차량등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이 있음¹¹⁵⁾

 - ▶ 필러형 담배(cigarette)의 경우 20개비 기준으로 0.5유로의 소비세를 인상하며, 말아피우는 담배(roll-your-own tobacco)의 경우 개당 0.25유로의 소비세를 인상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201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함
 - ▶ 2019년 1월 1일부터 디젤차량의 차량등록 시 1% 추가 부가세(surcharge)를 부과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세 면제혜택은 2019년 12월 21일로 연장함

11 영국

가. 2017~2018년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 세수 관련 통계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영국 국세청(HMRC)은 2018년 7월 31일자로 2017~2018년 과세연도의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 세수 관련 통계를 발표함¹¹⁶⁾

 - ▶ 이전가격세제 및 우회이익세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114) Ireland - Budget for 2019 - VAT and other tax measures(10 Oct, 2018), News IBFD.

115) 상동

116)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6, 2018, pp. 635~636.

영국 국세청(HMRC),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7 to 2018," Published July 31, 2018.

영국에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짐

- ▶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과세당국의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힘
- 영국 국세청은 2018년 4월 30일 현재 365명에 달하는 국제조세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수

- 2012~2013년도부터 2017~2018년 과세연도까지 이전가격 관련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약 65억 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함
- ▶ 2017~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4%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이전 연도들에 비해 세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전가격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및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도 꾸준히 체결되고 있음

〈표 11-12〉 연도별 이전가격 과세 실적

(단위: 백만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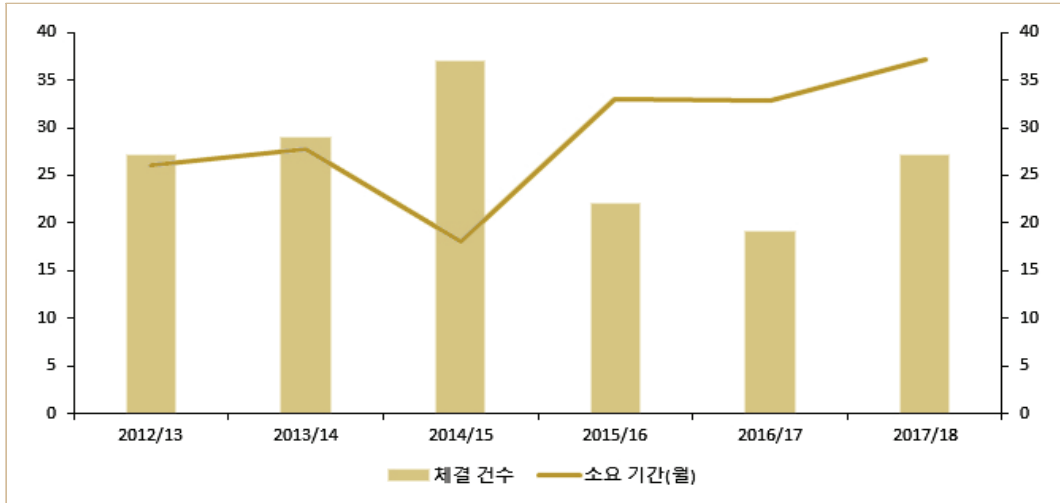
연도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	2015~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과세 실적	504	1,137	707	853	1,618	1,682

자료: HMRC,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7 to 2018*, July 31, 2018, p. 1.

- ▶ 2017~2018년도에 체결된 APA는 27건이며 체결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37개월이 소요됨
- 영국은 쌍방 또는 다자간 APA 추진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 ▶ 영국 국세청은 타방 국가 과세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MAP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건 이상의 MAP를 타결함

[그림 11-1] APA 체결 건수 및 평균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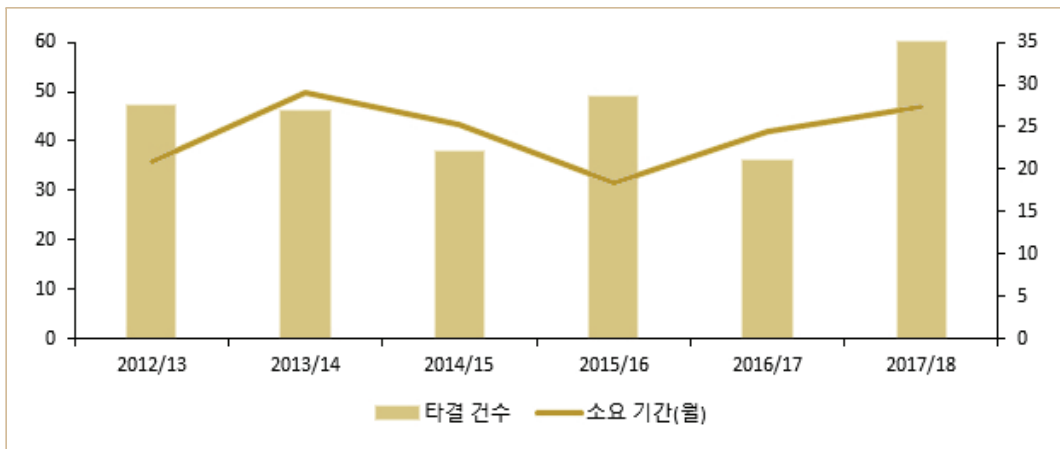
(단위: 건, 개월)



자료: HMRC,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7 to 2018*, July 31, 2018, p. 3.

[그림 11-2] MAP 타결 건수 및 평균 소요 기간

(단위: 건, 개월)



자료: HMRC,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7 to 2018*, July 31, 2018, p. 4.

2)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세수

- 2015~2016년도 이래 우회이익세 관련 세수는 계속 확대되어 2017~2018년도 과세연도에 총 3만 8,800만파운드에 달함

- ▶ 우회이익세 총세수에는 과세통지에 의한 부분 및 기업들의 자발적 납세분이 같이 포함됨
 - 2017~2018년도에 과세통지(charging notice)에 의한 세수는 약 2만 1,900만파운드에 달함

〈표 11-13〉 우회이익세 연도별 세수입

(단위: 백만파운드)

연도	2015~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세수입	31	281	388

자료: HMRC, *Transfer Pricing and Diverted Profits Tax statistics, to 2017 to 2018*, July 31, 2018, p. 5.

- 2017~2018년 과세연도 중 우회이익세 과세통지가 된 경우는 총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건 정도로 다소 제한적임
 - ▶ 우회이익세를 과세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당히 선별적으로(targeted approach)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나. 2018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영국은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2018 예산안(Budget 2018)을 2018년 10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함¹¹⁷⁾
 - ▶ 세부내용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안에 반영될 것이며, 2018~2019년도 일부 개정사항은 2018년 11월 7일에 발표된 재정법안(Finance Bill No.3)에도 포함됨
 - ▶ 소득공제 관련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개정사항,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11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30_uk_3.html&WT.z_nav=Pagination(검색일자: 2018. 11. 23)
 KPMG, <https://home.kpmg.com/uk/en/home/insights/2018/10/autumn-budget-2018-on-a-page.html>(검색일자: 2018. 11. 23)

1) 법인세

-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사업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함
 - ▶ 지난 2015년 세법개정 시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영업권 처분 이전에 상각(amortization) 등을 통해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
 - ▶ 이러한 영업권 상각 제한은 유형자산 이외 무형의 가치가 높은 지식산업과 관련하여 영국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됨
 -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사업양수에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상각 및 비용 공제를 허용함
 - 상각 대상 금액은 해당 영업권의 취득원가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정가치(fair value)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함
 - ▶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등을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을 의미함
 - 특허권, 상표권, 등록 디자인, 저작권, 라이선스 및 기타 산업·상업·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및 기술 등을 포함함
 -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것 등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산은 허용하지 않음
 - ▶ 상각률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거나 연간 4%의 고정상각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영업권 취득에 대해 적용될 예정임

- 이월된 투자손실로부터 공제 가능한 한도를 투자이익의 50%로 제한함
 - ▶ 2020년 4월 1일 이후로는 과거 투자손실(capital loss) 발생분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투자이익(capital gain)의 50% 이내로 제한됨
 - ▶ 다만 동 제한 규정은 매년 500만파운드 이내의 이월결손금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영국 국세청은 일부 대규모 기업 이외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해당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함

- 특정 분야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함
 - ▶ 시설 및 기계장치류에 허용되는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규모를

기존의 20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인상함

- 2019~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임

- ▶ 비주거용 건물 및 구축물을 위한 신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매년 2% 비율로 50년 동안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를 도입함

- 2018년 10월 29일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 건부터 적용함

2) 개인소득세

■ 기업가 세액경감(Entrepreneurs' Relief) 관련 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함

- ▶ 현행 영국 세법상 개인 기업가가 보유한 소정의 사업체 전부 또는 일부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10%의 경감세율로 과세함

- 당해 사업 또는 주식 처분 직전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 주식 및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해야 함

- ▶ 단기 투자 및 자본회수에 대한 혜택을 지양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함

- ▶ 개정안에서는 처분 직전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

- ▶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주식 지분율 요건 이외에 해당 기업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각각에 대해 5%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함

■ 개인소득세 기본소득공제 금액 및 기본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구간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 소비자물가 상승 정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에서 차감되는 기본소득공제액을 현행 1만 1,850파운드에서 2023년 1만 3,310파운드로 인상하고, 기본세율(20%) 적용 대상 과세표준 상한¹¹⁸⁾을 현행 3만 4,500파운드에서 4만 100파운드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118) 현행 영국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금액 중 3만 4,500파운드 이하 부분에는 20%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 부분은 40% 또는 최대 45%까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표 II-14〉 소득공제 금액 한도 및 기본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 상한

(단위: 파운드)

연도	2018~2019년	2019~2020년	2020~2021년	2021~2022년	2022~23년도	2023~24년도
소득공제 한도	11,850	12,500	12,500	12,760	13,030	13,310
기본세율 대상	34,500	37,500	37,500	38,300	39,200	40,100

자료: HMRC, *Income Tax: Personal Allowance and basic rate limit from 2019~2020*, October 29, 2018.

3) 디지털서비스세

- 디지털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함

 - ▶ 현행 국제조세체계상 고도화된 디지털경제하에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가 소재한 국가에 대해 효과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일부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를 우선 시행하는 잠정적 과세방안(interim action)을 제안함

- 특정 디지털 거래에서의 매출액에 대해 2%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 ▶ 특정 디지털용역 거래 및 납세자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온라인 판매나 디지털서비스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과세 조치는 아님
 - ▶ 매출액의 주요 부분이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분야에 한정됨
 - ▶ 과세 시행시기는 2020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됨

- 디지털서비스세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매출액의 주요 원천이 이용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서비스에 한정됨

 -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플랫폼 제공: 사용자 기반을 확충하고 이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 검색엔진(search engine) 제공: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 플랫폼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한 광고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
 - ▶ 온라인플랫폼(online marketplace) 제공: 광범위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평가 및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제공

- 디지털서비스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영국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일부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을 위해 이익률을 감안하여 과세하는 대안도 도입할 예정임
 - ▶ 과세대상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이고 영국 내 사용자와 관련된 해당 서비스 매출액이 연간 2,5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과세됨
 - ▶ 이익률이 매우 낮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과세 시 납세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런 기업들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안을 도입할 예정임
 - ▶ 디지털서비스세는 현행 법인세 산출 목적상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공제 가능함

12 폴란드

가.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조세동향 18-09호]

- 폴란드 재무부는 2018년 8월 24일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인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Action의 권고사항 및 EU 지침의 이행 내용을 담음¹¹⁹⁾
 - ▶ 이번에 발표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2018년 9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임¹²⁰⁾
 - ▶ 의회 통과 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현행 15%에서 9%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119) Poland - New tax package under public consultation - corporate income tax(06 Sep. 2018), News IBFD.

120) Poland - New tax package submitted to parliament(01 Oct. 2018), News IBFD.; Poland - Budget for 2019 - first reading in parliament(08 Oct. 2018), News IBFD.

- ▶ 현행 폴란드 법인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연간 매출액(VAT 포함)이 1,200만 유로미만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하며, 이 외의 기업은 19%의 정상세율을 적용함
- BEPS Action 3과 관련하여 피지배외국법인(CFC)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Action 5와 관련하여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적용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도입안을 포함함
 - ▶ CFC 제도의 경우 기존 CFC 범위에 해외 재단, 신탁,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CFC와 독립적인 그룹 또는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CFC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 ▶ 지적재산권의 보유 및 처분으로 발생한 적격소득에 5%의 우대세율로 과세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Action 5의 권고사항에 따라 연계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연계접근법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과 부합하여 과세하기 위해 실질적 R&D 활동을 판단하여 관련 비용만 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한 것임
- 이 외에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EU 지침 중 출국세 규정 및 특별조세회피방지규정(SAAR)의 개정안도 포함함
 - ▶ 출국세 과세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해외 소재 자산 또는 해외 사업장(legal seat)을 양도하고, 세법상 거주지를 변경하여 폴란드에서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을 출국세 과세대상으로 함
 - ▶ 경영참가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만 적용하는 특별조세회피방지규정을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도 적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즉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폴란드 거주인이 비과세된 소득으로부터 이자소득 또는 로열티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가 허용되는 이자소득 또는 로열티소득에도 비과세혜택을 배제하는 것임

나. 의무보고규정 도입안 상원 통과

[조세동향 18-11호]

- 폴란드 상원은 2018년 10월 26일 EU 지침에 따른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ule) 도입안을 최종 승인함¹²¹⁾

- ▶ 의무보고규정은 OECD BEPS Action 12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공격적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국제거래에 대해 납세자 또는 납세 대리인이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임
 - ▶ EU에서도 2018년 6월 5일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제보고 의무지침(EU Directive 2018/822)을 승인한 바 있으며, EU 회원국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강제보고 관련 EU 지침을 이행해야 함¹²²⁾
- 폴란드의 의무보고규정은 국제거래뿐 아니라 국내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부가가치세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EU 지침보다 보고 범위를 넓게 규정함
- ▶ EU 지침에 따른 보고 대상 거래는 잠재적으로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거래로 다음과 같은 특징(hallmark)이 있는 거래를 말함¹²³⁾
 - 소득을 이전하는 곳에서 비용으로 공제되고 소득을 수취하는 곳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거래
 -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매우 약한 국가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래
 - 조세예규(tax ruling) 교환을 회피할 수 있는 거래
 - 중개인의 자문수수료가 절세금액과 연계되는 거래
 - 같은 자산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인식할 수 있는 거래
 - 같은 소득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
 - EU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전가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
- 폴란드의 의무보고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 대상 거래의 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음
- ▶ 보고기한은 고객이 해당 조세전략을 알게 되거나, 조세전략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거나, 조세전략을 실행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함

121)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eps---5-november-2018>(검색일자: 2018. 11. 27)

122)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eu-publishes-directive-on-new-mandatory-transparency-rules-for-intermediaries-and-taxpayers>(검색일자: 2018. 11. 27)

123) EU Directive 2018/82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8L0822>(검색일자: 2018. 7. 22)

다. BEPS Action 5, 12의 권고사항 최종 입법

[조세동향 18-12호]

- 폴란드 대통령은 BEPS Action 5, 12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세법개정안에 최종 서명함¹²⁴⁾

 - ▶ 폴란드 재무부는 2018년 8월 24일 Action 5의 권고사항인 연계접근법을 적용한 지적재산권제도 도입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 폴란드 상원은 2018년 10월 26일 Action 12의 권고사항인 의무보고규정 도입안을 승인한 바 있음
 - ▶ 이번에는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규정으로 입법됨

- 폴란드는 지적재산권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보유 및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5%의 우대세율을 과세하며, Action 5의 권고사항에 따라 실질적 R&D활동과 관련된 이익에만 우대세율을 적용함

 - ▶ 즉 총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에서 적격지출액¹²⁵⁾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질적 R&D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함

- Action 12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중 잠재적으로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대리인이 해당 거래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함

 - ▶ 보고 대상 거래는 EU 지침에 따르며, 폴란드는 국내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EU 지침보다 보고 범위를 넓게 규정함¹²⁶⁾

- 두 가지 개정사항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24) Poland - President signs law introducing 2019 tax package(22 Nov. 2018), News IBFD.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3-december-2018>

125) 적격지출액은 본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외부에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아웃소싱 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지적재산권 취득원가는 제외됨. 지적재산권 취득원가는 총연구개발 관련 지출액만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발생한 이익에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발생한 이익에만 우대세율이 적용됨

1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0호, 2018 참조

13 프랑스

가.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발표

[조세동향 18-07호]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9일,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발표함¹²⁷⁾

- ▶ 본 특례제도는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요건, 조세특례 대상 소득 및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함

□ 특례제도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특례제도 대상자는 프랑스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연도의 직전 5개년의 과세연도 기간 중 프랑스 비거주자로서 프랑스 법인의 해외 관계사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이거나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함
- ▶ 동 조세특례는 해당 근로자가 ① 가족 또는 주된 거소를 프랑스에 두고 ② 주된 직업 또한 프랑스에 두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적용함
 - 가족 또는 주된 거소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에 배우자 직업,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말까지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적격 파견근로자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 파견 상여금 등과 같이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대가로 추가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100% 감면
- ▶ 해당 근로자가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100% 감면
- ▶ 해외원천 투자소득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득에 대해 50% 감면
 - 프랑스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취하는 해외원천소득에 한해 적용

127) 프랑스 정부, <https://www.impots.gouv.fr/portail/international-particulier/special-expatriate-tax-regime>(검색일자: 2018. 7. 25)

- ▶ 해외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50% 감면
- 동 조세특례는 해당 근로자가 ① 가족 또는 주된 거소를 프랑스에 두고 ② 주된 직업 또한 프랑스에 두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적용함
 - ▶ 가족 또는 주된 거소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에 배우자 직업,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말까지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기

[조세동향 18-07호]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5일과 2019년 1월 1일로 계획되었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¹²⁸⁾
- 프랑스는 2017년 「예산법」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¹²⁹⁾한 바 있으나, 실제 도입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됨
 - ▶ 현재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없이 개별 근로자가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되면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됨
- 금번 연기 결정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보다 간소화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함¹³⁰⁾

128) France - Individual income withholding tax for employees of individuals - postponement announced(10 July 2018), News IBFD.

129)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1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30) <https://www.nouvelobs.com/economie/20180705.OBS9208/le-prelevement-a-la-source-decale-d-un-an-pour-les-salaries-des-particuliers.html>(검색일자: 2018. 7. 25)

다.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프랑스는 2018년 9월 24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함¹³¹⁾
 - ▶ 본 세법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내용을 담음
 -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및 EU 지침에 따른 국제조세 분야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 등이 있음

1) 개인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 현재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개별 근로자가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 2017년 「예산법」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음¹³²⁾

- 기존 출국세(exit tax)제도를 개정하여 과세 요건을 완화함
 - ▶ 프랑스 출국세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전할 때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프랑스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을 12.8%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임
 - ▶ 기존 제도는 프랑스 거주자가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이주하는 경우 실제 주식 처분 시점까지 과세이연하였으나, 개정안은 기존 국가들뿐 아니라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 ▶ 또한 기존 제도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전한 이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납부한 출국세를 환급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2년으로 크게 단축함

- 에너지 효율 증대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함

131) France - Finance Bill for 2019 - summary(02 Oct. 2018), News IBFD.

13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 7.

- ▶ 주된 거소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에너지 효율성 향상 관련 비용에는 에너지 절감 또는 에너지 창출 난방시스템과 단열장치 등이 있음

2) 법인세

- 경영참가 자본이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에서 제외되는 과세소득 범위를 축소함
 - ▶ 기존 제도는 경영참가 자본이득면제에서 제외되는 자본이득을 12%로 과세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과세대상 소득을 전체 자본이득의 5%로 축소함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에 따라 이자비용공제제한제도(earning stripping rules)를 도입함
 - ▶ 순이자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의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EBIDTA¹³³⁾의 30%와 300만유로 중 큰 값으로 함
 - ▶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5년간 이월공제됨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에 따라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도입함
 - ▶ 기존에는 합병·분할·양도 거래 등에 적용되는 특별조세회피방지규정만 존재하였음
 - ▶ 금번 개정을 통해 과세당국은 특정 거래 또는 계약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관련 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부당한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것일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특허박스 관련 특례제도를 OECD/G20 BEPS프로젝트 Action 5에 따라 개정함
 - ▶ 현행 특허박스(patent box) 특례제도는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patentable rights)로부터 창출되는 소득과, 2년 이상 보유한 특허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 금번 개정안에서는 BEPS프로젝트의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따라 프랑스 자국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진 특허권과 저작권에만 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133) Earnings Before Interest,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특허 받을 권리는 특허제도 적용에서 배제함

- ▶ 또한 특허적용 대상 소득을 전체 관련 소득 중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발 및 취득의 총비용에서 납세자와 비특수관계인의 발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개정함

〈표 II-15〉 특허권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 대상 소득의 산정 방식

$$\text{특례 적용 대상 소득} = \text{특허권 등 관련 총소득} \times \frac{\text{납세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의 특허권 등 개발·취득 비용}}{\text{특허권 등 개발·취득 총비용}}$$

자료: France - Finance Bill for 2019 - summary(02 Oct, 2018), News IBFD.

3) 부가가치세

- 전기통신, TV방송,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해외 소규모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프랑스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함
 - ▶ EU 부가가치세지침은 전기통신, TV방송,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하여 소비자 거주지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납세협력 비용을 고려하여 상기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 프랑스는 연간 매출액 1만유로 이하의 소규모 외국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함
- 지방 정부기관의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5%로 인하함
 - ▶ 현행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20%이며, 경감세율은 10%, 5.5%, 2.1%로 구분하여 적용함
 - 5.5%의 경감세율 적용 대상으로는 물, 식료품, 장애인 관련 서비스 등이 있음

14 핀란드

가. 2019년 예산안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핀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년 예산안 계획(2019 Budget proposal)을 2018년 8월 9일자로 발표함¹³⁴⁾

 - ▶ 법인세 이자비용공제 한도 및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개정방향을 발표함
 - ▶ 구체적 개정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련 세법에 대한 세부 개정안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 (법인세) 이자비용공제에 대한 EU 지침을 반영하여 비용 공제 방식 및 한도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 2016년 7월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방지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 중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을 국내 세법에 반영할 예정임
 - 기본적으로 연간 이자비용공제 한도를 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조치임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및 비용 공제 한도 조정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
 - 세율 적용 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2018년도에는 연간 1만 7,200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4개 구간으로 나누어 6~31.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 특별투자저축계좌(special investment savings account)에 대한 세제혜택이 도입함
 - 해당 계좌를 통해 취득하는 상장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양도차익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함

13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8-09_fi_2.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8. 29)

- ▶ 근저당부채무 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 한도를 이자비용의 25% 한도 내로 축소함
- ▶ 거주지와 직장 간의 거리가 멀어 직장 주변의 주거지를 임차하는데 따른 비용 공제를 현행 월 250유로에서 450유로로 인상함
- ▶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차를 봉사활동에 사용한 대가의 면세 한도를 현행 2,000유로에서 3,000유로로 인상함

■ (기타) 담배 관련 물품세 및 자동차 관련 세금이 일부 개정될 예정임

- ▶ 담배 품목에 대한 물품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예정임
- ▶ 자동차세(car tax) 및 자동차이용세(car usage tax)의 산출 기준인 CO2 배출량 집계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일부 세율이 조정됨

나. CFC rule 정부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핀란드 재무부는 2018년 8월 7일자로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CFC rule)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함¹³⁵⁾

- ▶ EU의 조세회피방지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를 반영하여 CFC rule을 일부 강화하는 목적임
- ▶ 동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법안 통과 시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에 해당되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낮춤

- ▶ 기존 제도에서는 지배법인이 피지배법인 주식, 의결권, 또는 이익수령권의 5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것을 CFC 해당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법안에서는 이를 25%로 낮춤
- ▶ 개정안 적용 시 CFC rule의 적용 대상인 피지배회사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35) Tax Notes International, August 6, 2018, pp. 728~729.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inland-issues-draft-bill-for-public-consultation-regarding-changes-to-cfc-rules>(검색일자: 2018. 8. 30)

- CFC rule 적용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
 - ▶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한 외국 법인의 경우 실제 인력, 장비, 자산 등을 보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CFC rule을 적용하지 않음
 - ▶ EEA 이외 국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C rule 적용을 배제함
 - 당해 및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외국 법인이 EU에서 지정한 비협조 국가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외국 법인 소재지국과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해당 외국 법인 소득의 대부분이 당해 거주지국에서 발생할 것

다. 유한책임회사 과세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핀란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대한 과세 개정안을 2018년 11월 29일자로 발표함¹³⁶⁾
 - ▶ LLC 관련 과세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고, 자본손실 및 이월결손금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LLC의 경우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종류별로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이월결손금 통산 등에 제약을 받음
 - ▶ 현행 핀란드 세법상 법인의 소득은 '사업활동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됨
 - 상기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로 동일함
 - 다만 사업활동소득은 「사업소득세법(Business Income Tax Act)」에 따라 과세되는

136) Deloitt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0748/Finland/2018/Corporate-income-tax-proposals-would-affect-LLCs-group-contribution-regime?id=gx:2em:3na:4wta_2018_12_14:5eng:6tax&sfid=7011O000002Do2A(검색일자: 2018. 12. 19)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세부 과세내용이 결정됨

- 비용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소득 종류 간에 통산은 허용되지 않음

▶ 현행 세법상 LLC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 가지 소득 종류별로 세부 적용 법령이 다르고 소득 종류 간 손실 통산 또한 제한됨

■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LLC의 경우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사업소득세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소득으로 취급함

▶ 투자소득, 부동산소득 등 ‘기타소득’으로써 기존의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되었던 소득도 「사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 다만 당해 LLC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주택 소유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LLC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이 허용됨

▶ LLC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사업소득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투자소득 등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활동소득’에서 통산하여 공제 가능하게 됨

- 이월결손금공제 가능 기한은 종전과 같은 10년임

■ 개정안에서는 LLC의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을 사업활동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등 사업활동과는 무관한 기타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도 사업활동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다만 경과규정상 향후 5개년 동안 해당 처분 손실은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만 공제 가능함

라. 투자펀드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핀란드는 투자펀드(investment fund)에 대한 과세 개정안을 담은 법안(HE 304/2018)을 2018년 12월 13일자로 의회에 제출함¹³⁷⁾

 - ▶ 투자펀드 관련 현행 법령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어 외국 투자펀드나 해외투자소득의 과세 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 3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임

- 현행 핀란드 세법상 투자펀드는 별도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투자펀드의 범위는 명확한 세법상 규정이 없음

 - ▶ 투자펀드의 경우 지분 소유자가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펀드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펀드의 의미에 대해 세법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 「민사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로 세법 적용 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 특히 외국의 투자펀드도 국내 투자펀드와 같이 보아 핀란드에서의 원천징수 과세를 면제해 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 수 및 펀드 성격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 투자펀드도 국내 펀드와 같이 취급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함

 - ▶ 당해 외국 투자펀드가 당사자들 간 서면계약관계(contractual arrangement)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어야 함
 - ▶ 펀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함
 - ▶ 해당 투자펀드가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써 개방형 펀드(open-ended)여야 함

- 만약 외국 투자펀드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13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14_fi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12. 19)

- ▶ 당해 외국 투자펀드가 소재 국가 법령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어야 함
- ▶ 해당 펀드 소재 상대방 국가와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비과세 요건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실제로 해당 국가로부터 취득할 수 있어야 함

15 EU

가.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 15% 유지 결정

[조세동향 18-07호]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6월 22일 EU 회원국의 현행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VAT minimum standard rate)을 영구적으로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함¹³⁸⁾
 - ▶ EU의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은 1993년 EU의 시장 단일화 때 임시적으로 15%로 설정된 이후 줄곧 유지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 표준세율 유지를 결정한 바 있음
- EU의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은 EU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율의 지나친 격차와 회원국 간 저세율 정책을 통한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른 일부 재화와 용역에는 5% 이상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¹³⁹⁾
 - ▶ EU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최저한만 규정하며, 세율의 한도(최고세율)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138)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22/vat-minimum-standard-rate-set-permanently-at-15/?utm_source=dsm-auto&utm_medium=email&utm_campaign=VAT+minimum+standard+rate+set+permanently+at+15%25(검색일자: 2018. 7. 26)

13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eu-vat-rules-topic/vat-rates_en(검색일자: 2018. 7. 26)

나.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s)에 대한 한시적 부가세 감면

[조세동향 18-11호]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0월 2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허용함¹⁴⁰⁾

 - ▶ 2018년 6월 22일 유럽이사회는 EU 회원국에 대해서 최저 표준부가세율을 영구히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¹⁴¹⁾
- 전자출판물도 서적, 신문 등 일반출판물과 동일하게 감면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할 수 있음

 - ▶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대한 최저 표준세율은 15%임
- EU 회원국 내 일부 국가들은 일반출판물에 대해 초감면 부가세율(5% 미만) 또는 제로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법안은 새로운 부가세 지침이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다. 2021년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규정 관련 세부내용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2018년 12월 11일 EU 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규정(VAT e-commerce package)’ 관련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음¹⁴²⁾

 - ▶ 위원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국외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VAT 의무를 간소화하고, 최종회원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VAT가 고객 국가에 정확히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함

140) EU,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10/02/electronic-publications-council-agrees-to-allow-reduced-vat-rates/>(검색일자: 2018. 11. 20)

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 7.

142) EU,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6732_en.htm(검색일자: 2018. 12. 14)

- ▶ 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VAT 전자상거래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현 MOSS제도¹⁴³⁾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OSS(One-Stop-Shop: OSS)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확장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¹⁴⁴⁾
 - ▶ 모든 B2C사업(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 관련 사업에 국한하지 않음)
 - ▶ EU 회원국 간 재화 판매¹⁴⁵⁾
 - ▶ 최대 150유로의 가치가 있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EU 회원국 간 판매
- 2021년부터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비거주자 기업이 유럽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부가세 징수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현 규정상 과세가 어려웠던 비거주자가 EU 내에 소재한 저장시설(storage facilities within the EU)을 거쳐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도 이를 과세거래라 명시함
- 현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EU 각 회원국의 '과세당국'이 협조하여 기술적인 조치들을 개발 중이며, 상기 제안된 부가세 규정은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

16 OECD

가. G20 재무장관에 대한 조세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OECD는 2018년 7월 21일, G20 재무장관에 대한 조세보고서¹⁴⁶⁾를 발표함

143) MOSS는 EU 회원국에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로 2015년에 시행됨

144) EU,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digital-single-marke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검색일자: 2018. 12. 14)

145) 특정 유럽연합국가에서 다른 유럽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146) OECD,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18,

- ▶ 동 보고서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OECD 조세 분야 업무에 대한 보고서임
- ▶ 동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BEPS프로젝트 등 국제조세 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경과사항을, 제2부에서는 조세투명성을 위한 글로벌포럼 업무의 경과를 보고함

1) 제1부 - 국제조세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 보고

- 동 조세보고서의 제1부는 BEPS프로젝트, 조세투명성, 조세확실성, 과세당국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 국제조세의 주요 이슈에 대한 OECD 업무 경과현황을 기술함
- BEPS프로젝트는 크게 BEPS프로젝트의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로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 국가별보고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의 업무 경과를 다룸¹⁴⁷⁾
 - ▶ BEPS프로젝트의 포괄적 체계: 현재 116개의 참여국이 있으며,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GDP 합계는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함
 - ▶ Action 5(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175개 조세특례제도가 검토되었으며, 이 중 130개 이상의 제도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관련 시정 절차가 진행 중임
 - 또한 1,700개 이상의 조세예규가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에 교환되고 있음
 - ▶ Action 13(국가별보고서): BEPS참여국의 관련 입법 여부를 검토하는 제1차 상호검토가 95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보고서에서 교환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2차 상호검토의 결과물은 2019년 중에 발표될 예정임
 - 2018년 1월 현재 60개국에서 국가별보고서 신고를 위한 입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58개국이 적절한 국가별보고서 교환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 ▶ Action 1(디지털경제의 조세 문제): 2018년 3월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에서는 디지털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조세 문제를 논의하고,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통해 과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을 밝힘

http://www.oecd.org/tax/oecd-secretary-general-tax-report-g20-finance-ministers-july-2018.pdf?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3-07-2018&utm_term=demo(검색일자: 2018. 8. 27)

147) BEPS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Progress report July 2017-June 2018*, <http://www.oecd.org/tax/beps/inclusive-framework-on-beps-progress-report-july-2017-june-2018.pdf>(검색일자: 2018. 8. 28) 참조

- 2019년 중에 제2차 중간보고서를, 2020년에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조세투명성(tax transparency)은 각 국가의 조세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행 기준으로 (1)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2) 금융정보 자동교환, (3) 정보교환의 실행 등을 제시함

- ▶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포럼의 이행평가에서 “대체적인 이행(largely compliant)”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함
- ▶ 금융정보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일체의 입법이 완료되고 2018년 말까지 정보교환이 시작되어야 함
- ▶ 정보교환 기준은 다자협약을 실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폭넓은 교환 네트워크를 통하여 EOIR과 AEOI를 모두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 상기 3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 조세투명성 기준에 부합함
- ▶ 불이행 국가의 명단 등 각국의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2019년 중 발표할 예정임

■ 조세확실성(tax certainty)은 상호합의절차의 유효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이행 검토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Action 14에 따라 BEPS 참여국 중 21개국에 대한 검토 결과, 2016년 종결된 상호합의의 진행 건수 중 85%가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검토됨
- 60%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부과 권을 해결한 상호합의였으며, 20%는 일방구제(unilateral relief)로 해결되었고, 나머지 5%는 납세자의 상호합의 철회로 종결됨

■ OECD는 개발도상국 과세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IMF, 세계은행,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음

- ▶ IMF, 세계은행 등과 함께 “조세 분야 협력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양한 툴킷(toolkit)을 개발함
- ▶ 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UNDP)과 함께 “국경 없는 세무조사관(Tax Inspector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발도상국 세무조사관의 역량개발을 지원함

2) 제2부 - 조세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 경과 보고

- 조세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에 참여하는 국가는 현재 150개국에 이릅니다

 - ▶ 현재 123개국이 ‘조세행정 상호지원 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참여하며 102개국이 OECD의 ‘공통보고기준 다자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서명하여 조세 관련 정보교환체계를 마련함

- 2017년 현재 50개국에서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을 시작하였으며, 추가 50개국에서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임

 - ▶ 100여개국이 참가하는 금융정보 교환으로 인해 납세자의 행태가 변화하여, 최근 자발적 납세순응과 과세당국의 해외조사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지난 한 해 93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EOIR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제2차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가에서 EOIR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토됨

 - ▶ 24개국에 대한 상호검토 결과 10개국은 ‘이행(compliant)’, 12개국은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2개국은 ‘부분적 이행(partially compliant)’으로 평가됨
 - ▶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정보요청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개발도상국의 조세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 분야의 개선을 위한 국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글로벌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 2018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 출간

[조세동향 18-09호]

- OECD는 2018년 9월 4일, 2018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Tax Policy Reforms 2018)를 출간함¹⁴⁸⁾

 -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조세정책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 비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로 2016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임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외에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조사대상국에 포함함
 - ▶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까지의 거시경제 상황을, 제2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세수 추이와 세목별 비중을, 제3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주요 조세정책 변화를 논의함

- 2017년 글로벌 GDP 성장률은 3.7%로 추정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4%대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 글로벌 차원의 경제성장은 고용증대, 투자 및 무역 규모 확대 등을 동반함
 - ▶ 세계경기가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수준은 성장되지 않아 각국의 소비수준은 크게 회복되지 않음
 - ▶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는 2016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생산성 수준을 회복할 만큼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
 - ▶ OECD 회원국의 재정수지는 개선되었고 공공부채 수준은 안정화되는 것으로 파악됨
 - ▶ OECD 회원국의 소득불균형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위축 현상이 지속됨

- 조사대상국의 최근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

 -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¹⁴⁹⁾에는

148) OEC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policy-reforms-2018_9789264304468-en(검색일자: 2018. 9. 28)

149) 조사대상국의 비교가능한 가장 최신 세수 자료는 2016년도로 본 보고서는 세수 추이와 관련하여서 2016년

34.3%를 기록함으로써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 GDP 대비 세수 비중은 조사대상국별로 큰 편차를 보여 덴마크(45.9%), 프랑스(45.3%) 등 7개국에서는 40%를 초과한 반면, 멕시코(17.2%), 칠레(2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세수 비중을 기록함

■ 세목별 세수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조사대상국의 세수 비중 분석 결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반대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와 법인세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및 급여지불세(payroll tax)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4%와 27%로, 소득세 기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 반면 소비세는 전체 세수의 12.4% 비중을 보인 가운데, 법인세와 재산세는 각각 8.9%와 5.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의 경우 2000년에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조사대상국의 대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은 법인세 인하와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 관련 변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보고서는 주요 세목에 대한 조사대상국의 조세정책 추이를 살펴봄

■ 소득세를 살펴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경감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 소득세 경감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s)를 확대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 반대 자본이득세는 과세를 강화하는 추이를 보임
- ▶ 미국은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장 큰 개편이 이루어졌고, 라트비아는 누진세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는 금융소득에 대해 기존 누진

세계계에서 30% 단일세율로 과세체계를 변경함

- ▶ 우리나라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함

■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 변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소득에 대한 징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부 국가들에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수 대상 소득을 줄이는 등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수를 축소하는 추이를 보임

■ 법인세 경감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세율을 적용하던 일부 주요국에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됨

- ▶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8개국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평균 세율 인하는 4.8%p를 기록함
- ▶ 설비투자확대를 위해 감가상각제도를 확대한 반면, R&D 또는 혁신 활동과 관련한 조세특례 관련 제도변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남
- ▶ 한편 OECD/G20 BEPS프로젝트의 이행 등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신설하여 25%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세행정 개선과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확인됨
- ▶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확대와 경감세율 적용 대상 축소, 징수행정 개선 등의 움직임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남

■ 기타 소비세의 경우 기존 담배와 알코올에 대한 소비세에 더하여 유해소비에 대한 새로운 과세조치들이 나타남

- ▶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의 설탕 함유 음료, 캐나다의 대마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가 대표적인 유해소비활동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동향임
- 환경 관련 과세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주로 이루어지나, 에너지와 차량 이외에도 폐기물, 비닐봉지, 화학약품 등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과세 노력이 필요함

다.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을 위한 통합 조약문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OECD는 2018년 11월 14일, 다자협약¹⁵⁰⁾이 적용된 조세조약(covered tax agreements)을 위한 ‘통합 조약문(synthesised texts)’ 지침을 발표함¹⁵¹⁾
 - ▶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47개(15개 국가)임
 - ▶ 통합 조약문은 다자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해석을 위해 기존 조세조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함
 - ▶ 다자협약 당사자 간에 통합 조약문을 개발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 이 지침에서는 통합 조약문 개발을 위해 사용한 접근법을 포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박스 형태의 예시 조약문안을 제시함
 - ▶ 조세조약서문 앞에 추가하는 통합조약서에 대한 일반면책조항(disclaimer)
 - ▶ 조세조약서문 앞에 추가하는 다자협약의 실제 적용 시 일반면책조항
 - ▶ 다자협약의 조문별로 조세조약의 수정을 요하는 다자협약 조항의 예시문안
 - ▶ 다자협약의 조문별로 다자협약의 실제 적용 시 예시주석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150) 세원잠식과 과세소득 잠식 예방을 위한 조세조약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는 다자협약, 정식 영문 명칭은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며 줄인 명칭으로 다자협약, 또는 ‘MLI’를 사용함

151)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guidance-synthesised-texts-for-providing-clarity-on-the-impact-of-the-multilateral-instrument.htm>(검색일자: 2018. 11. 16)

- 다자협약으로 인해 수정된 2014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을 예시로 제시하여 다자협약이 기존 조세조약 조약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 ▶ 다자협약 조항이 기존 조세조약을 “교체(replace)” 혹은 “수정(modifies)” 한다면 통합 조약서상에 이전 조항에 대한 다자협약의 효과를 기술해야 하며, 기존 조세조약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함

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OECD는 2018년 11월 13일,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관련하여 53개 조세특례제도 검토 결과를 발표함¹⁵²⁾
- 53개 조세특례제도 중 18개는 유해요소를 폐지 또는 개정하였으며, 4개는 Action 5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제도가 구체적으로 고안 중이고, 10개는 개정 또는 폐지의 시정조치를 약속했음

〈표 11-16〉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제도 검토 결과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1	안도라	특정무형자산 개발을 위한 특별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	안도라	지주회사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3	안도라	국제무역 참여 회사	폐지됨
4	안도라	관계회사 간 자금거래 제도	폐지됨
5	아루바	면제 회사(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6	아루바	자유구역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7	아루바	선박 또는 항공	유해하지 않음
8	아루바	산 니콜라스 제도	폐지됨
9	아루바	IPC	검토 중임
10	아루바	투자 유치	검토 중임
11	호주	역외 बैं킹 부서	개정이 진행 중임
12	브루나이	서비스 개척 회사(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152) OECD, <http://www.oecd.org/tax/beps/oecd-releases-latest-results-on-preferential-regimes-and-moves-to-strengthen-the-level-playing-field-with-zero-tax-jurisdictions.htm>(검색일자: 2018. 11. 20)

〈표 II-16〉 의 계속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13	퀴라소	혁신 박스	검토 중임
14	퀴라소	수출 시설(IP 또는 non-IP)	폐지됨
15	퀴라소	E-구역	개정됨(해당 범위 아님)
16	가봉	특별경제구역	검토 중임
17	그리스	세금 특허권 장려제도	검토 중임
18	홍콩	기업 재무센터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19	홍콩	전문 재보험회사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0	홍콩	전속 보험회사에 대한 이익세금 감면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21	요르단	아카바 특별 경제구역(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22	카자흐스탄	AIFC	검토 중임
23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24	케냐	특별경제구역(IP 또는 non-IP)	운영되지 않음
25	리투아니아	IP 제도	유해하지 않음
26	말레이시아	국제통화 비즈니스 유닛	검토 중임
27	몰디브	몰디브 외 원천이익에 대한 감면세금을 적용	삭제 진행 중임
28	모리셔스	자유무역항(freeport) 구역	개정됨(해당 범위 아님)
29	모리셔스	전속 보험회사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30	모리셔스	글로벌비즈니스라이선스1(IP 또는 non-IP)	폐지됨
31	모리셔스	글로벌비즈니스라이선스2(IP 또는 non-IP)	폐지됨
32	모리셔스	부분면제제도	유해하지 않음
33	모리셔스	2004 은행법에 따른 자격보유은행(B부분)	폐지됨
34	모리셔스	2004 은행법에 따른 자격보유은행	유해하지 않음
35	몽골	자유무역구역(IP 또는 non-IP)	삭제 진행 중임
36	몬트세랫	국제비즈니스 회사	삭제 진행 중임
37	파나마	일반 IP제도	검토 중임
38	파라과이	해외자본투자(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39	파라과이	자유구역	해당범위 아님
40	파라과이	투자보증	검토 중임
41	필리핀	지역 운영 본사들	삭제 진행 중임
42	세인트키츠네비스	네비스 LLC	검토 중임
43	세인트키츠네비스	네비스 비즈니스 회사	검토 중임
44	세인트키츠네비스	회사법	검토 중임
45	세인트키츠네비스	재정장려제도법	해당 범위 아님

〈표 11-16〉의 계속

No	국가	조세제도	검토 결과
46	세인트루시아	국제비지니스 회사(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7	세인트루시아	국제 신탁(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8	세인트루시아	국제 파트너십(IP 또는 non-IP)	삭제/개정이 진행 중임
49	산마리노	IP 제도	유해하지 않음
50	산마리노	신규회사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1	산마리노	첨단기술 신생회사에 대한 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2	스페인	특정무형자산소득에 대한 부분면제제도	개정됨(유해하지 않음)
53	미국	국외원천무형자산소득(IP 또는 non-IP)	검토 중임

자료: OECD, 『유해조세제도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2018. 11, pp. 1~2.

- 유해조세포럼(FHTC)은 Action 5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46개 조세특례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후에도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마. G20 정상회의를 위한 국제조세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18-12호]

- OECD는 2018년 11월 30일,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를 위한 국제조세보고서(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를 발간함¹⁵³⁾
 - ▶ 동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OECD 국제조세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2부에서는 조세투명성, 과세목적 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한 글로벌 포럼 논의 내용을 다룸
- 제1부에서는 OECD 국제조세 주요 현안인 BEPS프로젝트, 조세투명성 기준, 개발도상국 과세행정 역량강화, 조세확실성에 대한 경과사항을 보고함
- BEPS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최소기준(Action 5,6,13,14)에 대해 참여국 간 첫 번째 상호검토(peer reviews)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디지털경제하의 조세 문제에 대한 장기 해결책을

153) OECD, <https://www.oecd.org/g20/summits/buenos-aires/oecd-secretary-general-tax-report-g20-leaders-argentina-dec-2018.pdf>(검색일자: 2018. 12. 14)

2020년에 제시할 예정이라 밝힘

- ▶ 포괄적 이행체제의 참여국은 124개국으로 세계 GDP의 95%를 차지함
-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 5)과 관련된 상호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까지 243개 조세특례제도가 검토되었으며, 134개 조세제도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개정 또는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임¹⁵⁴⁾
 - 과세행정의 투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1만 6천건 이상의 예규가 정보교환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교환이 진행 중임
- ▶ 조세조약남용¹⁵⁵⁾방지(Action 6)와 관련해서는 현재 첫 번째 상호검토가 진행 중이며,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통해 1,400개 조세조약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됨
- ▶ 국가별 보고서(Action 13)와 관련 상호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BEPS 참여국의 관련 입법여부를 검토하는 제1차 상호검토가 9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보고서에서 교환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2차 상호검토 결과물은 2019년 중에 발표될 예정임
 - 올해 6월 첫 번째 국가별 보고서 교환이 이루어졌음
- 조세투명성 기준이 이행됨에 따라 930억 유로(한화 약 120조)의 추가 과세수입이 확인되었으며, 수천억유로의 가치가 있는 계좌정보가 2017년에 교환되었음
- 이전 2018년 7월 G20 재무장관 조세보고서에서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에 대해 강화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비협조국 명단 등 각국의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2019년 중 발표할 예정임
 - ▶ 조세투명성 기준으로는 특정정보교환(EOIR), 자동정보교환(AEOI), 다자협약에 참여하거나 위 두 기준을 허용하는 교환네트워크 실행이 있음
 - ▶ 자동정보교환(AEOI)¹⁵⁶⁾과 관련하여 83개 국가가 정보교환을 실시하였으며, 15개 비

154) 이로 인해 하나의 IP제도를 제외한 모든 IP제도가 BEPS 최소기준을 충족하였음

155) 조세조약남용이란, 특정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가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조약쇼핑이 대표적인 조약남용의 형태임. 홍성훈·정훈·홍민욱,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pp. 3~4.

협조국에 대해 추가 조치사항을 제시함

- ▶ 현재 특정정보교환(EOIR) 기준과 관련하여 글로벌포럼에서 2차 상호검토가 진행 중이며, 포럼 참여 국가의 90% 이상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는 6개국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2019년도 상반기에 제2차 상호평가 실시 예정¹⁵⁷⁾

■ OECD는 과세협력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PCT)과 국경 없는 세무 감시반(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과세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

■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포럼의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함

- ▶ 2017년 금융계좌의 자동정보교환제도가 폭넓게 시행됨에 따라 2018년에 80개 국가가 비거주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교환하였음

- 2017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 국가가 자동정보교환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51개 국가가 시행하였음

- ▶ 특정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정보교환제도에 수집된 정보의 추가자료, 국가별보고서 및 조세예규 등의 교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현재 특정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하여 2차 상호검토가 실시 중이며¹⁵⁸⁾,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접근(access to), 실질 소유권 정보 등을 확보하고자 함

- ▶ 현재 글로벌포럼 회원국은 154개국으로 작년 대비 12개 개발도상국 국가가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 현재까지 조세 문제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다자협약¹⁵⁹⁾에 서명한 국가는 126개국으로, 앞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통해 동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나가고자 함

156) 자동정보교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일체의 입법이 완료되고, 2018년 말까지 정보교환이 시작되어야 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7호, 2018.

157) 주오이디시대한민국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343847&srchFr=&srchTo=&srchWord=조세정보&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검색일자: 2018. 12. 21)

158) 특정정보교환제도 2차 평가에서 현재 기준으로 약 40개 국가가 평가 완료되었음

159) 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tance in Tax Matter

바. 2018년 소비세 동향 보고서(Consumption Tax Trends 2018)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OECD는 2018년 12월 5일, 2018년 소비세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음¹⁶⁰⁾

 - ▶ 2년마다 출판되는 보고서로 OECD 회원국의 소비세 관련 국가 간 비교자료와 정책 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음
 - ▶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반 소비세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Tax)로 나뉨

-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는 총세수입의 30.4%, GDP의 10.3%로 1975년 이래로 세수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소비세 비중은 증가하고, 반면에 개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¹⁶¹⁾

 - ▶ 총세수입 비중: 일반소비세는 1975년 13.4%에서 2016년 20.8%로 증가하였으며, 개별 소비세는 1975년 17.7%에서 2016년 9.8%로 감소하였음
 - ▶ GDP 비중: 일반소비세는 1975년 4.1%에서 2016년 7.0%로 증가하였으며, 개별소비세는 1975년 4.6%에서 2016년 3.3%로 감소하였음
 -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소비세는 총세수입의 26.4%, GDP의 6.9%를 차지함
 -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1975년 자료¹⁶²⁾와 비교했을 때 감소함

〈표 11-17〉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 비중

(단위: %)

구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975	2005	2010	2015	2016	1975	2005	2010	2015	2016
호주	6.6	7.6	6.5	6.6	6.4	25.8	25.4	25.7	23.8	23.2
오스트리아	12.3	11.0	10.7	10.8	10.9	33.9	26.8	26.2	25.1	25.9
벨기에	10.1	10.1	10.1	10.1	10.2	26.0	23.3	23.8	22.5	23.2

160) OEC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consumption-tax-trends-2018_ctt-2018-en;jsessionid=1Z--c6vA6jhxAjOzdTADi.ip-10-240-5-60(검색일자: 2018. 12. 14)

161) 대략적으로 소비세의 총과세수입 중 2/3는 일반소비세이며, 나머지 1/3은 개별소비세가 차지함

162) 총세수입의 60%, GDP의 8.9%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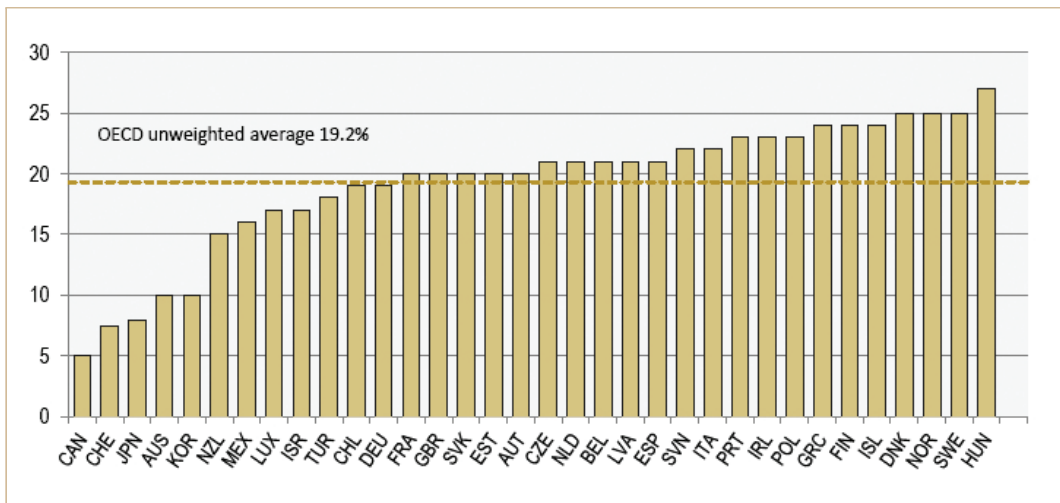
〈표 11-17〉의 계속

구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975	2005	2010	2015	2016	1975	2005	2010	2015	2016
캐나다	8.1	7.8	7.0	7.0	7.1	26.0	23.7	22.5	21.5	21.8
칠레	..	10.1	9.4	10.3	10.3	..	48.7	48.2	50.8	51.1
체코	..	10.0	10.1	10.6	10.8	..	29.0	31.2	31.8	31.4
덴마크	12.0	15.1	13.8	13.3	13.6	32.6	31.4	30.8	28.8	29.5
에스토니아	..	12.0	13.0	13.5	13.9	..	40.0	39.1	40.6	41.3
핀란드	11.4	12.9	12.6	13.7	13.9	31.6	30.6	30.8	31.2	31.5
프랑스	11.3	10.6	10.2	10.7	10.8	32.4	24.8	24.1	23.5	23.7
독일	8.7	9.5	10.0	9.7	9.5	25.4	27.9	28.4	26.1	25.5
그리스	7.9	9.9	11.2	12.1	13.3	42.2	31.9	34.9	33.0	34.2
헝가리	..	14.2	15.6	16.6	16.2	..	38.8	41.8	42.9	41.3
아이슬란드	18.6	15.0	11.0	11.2	11.3	62.2	37.8	33.1	30.8	21.9
아일랜드	12.4	10.6	9.0	6.8	6.9	44.4	36.2	33.3	29.4	29.7
이스라엘	..	11.1	11.2	11.0	11.0	..	32.8	36.5	35.2	35.2
이탈리아	6.9	9.3	9.9	10.4	10.5	28.3	23.8	23.6	24.2	24.7
일본	3.0	4.5	4.4	6.0	5.8	15.1	17.2	16.7	19.5	18.9
한국	8.9	7.5	7.6	6.6	6.9	60.0	33.3	32.6	26.2	26.4
라트비아	..	11.2	10.6	11.5	12.1	..	39.9	37.7	39.2	39.7
리투아니아	..	10.7	11.2	11.2	11.3	..	36.5	39.7	38.6	37.8
룩셈부르크	6.5	10.7	10.0	9.3	9.4	20.6	28.4	26.8	25.2	24.8
멕시코	..	4.2	4.7	6.0	6.3	..	37.1	36.7	37.9	38.1
네덜란드	8.5	10.0	9.8	9.7	10.1	22.5	28.6	27.4	26.3	26.3
뉴질랜드	6.8	10.8	11.2	11.5	11.3	22.8	30.0	37.1	36.3	35.7
노르웨이	14.2	11.1	11.0	11.0	11.5	36.6	26.1	26.2	28.6	29.7
폴란드	..	12.1	12.1	11.2	11.7	..	36.8	38.6	34.6	35.1
포르투갈	7.6	13.2	11.8	12.7	12.9	40.1	42.7	38.8	36.9	37.7
슬로바키아	..	11.4	9.3	9.9	9.8	..	36.5	33.0	30.9	30.3
슬로베니아	..	12.5	13.2	13.6	13.4	..	33.1	35.7	37.4	36.8
스페인	4.3	9.1	7.7	9.2	9.0	24.0	25.8	24.7	27.3	27.2
스웨덴	8.8	11.8	12.2	11.7	11.9	22.7	25.3	28.2	27.1	27.0
스위스	4.6	5.4	5.3	5.1	5.1	20.6	20.3	19.9	18.7	18.4
터키	4.8	11.1	11.4	10.7	10.6	40.9	47.4	45.8	42.7	42.1
영국	8.1	9.4	9.5	10.2	10.2	23.7	28.8	29.4	31.8	31.1
미국	4.2	3.8	3.6	3.8	3.7	17.1	14.8	15.4	14.4	14.4
OECD 산술평균 ¹⁾	8.7	10.2	9.9	10.1	10.3	31.1	31.2	31.2	30.6	30.4

주: 1) 2016년도 OECD 평균수치 계산 시 아이슬란드의 특정 일회성 수익은 제외
 자료: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s://doi.org/10.1787/rev_stats-2018-en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2%임
 - ▶ 미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은 모두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은 유일하게 판매세(Retail sales tax)제도를 채택함
 - ▶ 표준부가가치세율이 22%를 초과하는 국가는 10개국이며, EU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1.8%로 OECD 평균을 상회함
 - ▶ 우리나라 표준부가가치세율은 10%로, 캐나다¹⁶³⁾, 칠레, 일본 다음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 국가임

[그림 11-3] 2018년도 OECD 회원국의 표준부가가치세율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p. 46.

- 많은 OECD 국가는 소득형평성을 이유로 다수의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감면 부가세율 적용 범위도 확대하였음
 - ▶ 일반 필수품, 약품류, 의료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경기 등¹⁶⁴⁾에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163)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캐나다 주에서 연방 부가가치세 5% 이외에 별도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

164) 특정 과일, 야채 및 주택 관련 공사, 학교에 납품하는 음식, 레스토랑 서비스, 인터넷 사용료, 유제품류, 돼지고기와 생선류, 전자출판물, 전시 및 농촌개발공사 용역 등

- VRR지수(VAT Revenue Ratio)를 통해서 볼 때, 2016년 OECD 평균지수는 0.56으로, 나머지 0.44 비중만큼 징수되지 않은 부가세 수입이 존재함을 시사함

 - ▶ VRR란 잠재적인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실제 부가세 징수금액을 이론상으로 어떠한 감면혜택 없이 계산한 부가세 예상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됨
 - ▶ 우리나라의 VRR지수는 0.7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일본 다음인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임

- 또한 많은 OECD 회원국이 국제 VAT/GST 지침과 BEPS Action 1 보고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판매와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조치들을 발표하거나 실시함

 - ▶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소액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 조치를 포함함
 - 호주는 2018년 7월 이후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 GST를 과세하는 OECD 첫 번째 국가임
 - 뉴질랜드와 EU도 비슷한 법안을 2019년 10월과 2021년에 각각 실시하고자 발표함
 - ▶ 온라인시장 및 기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판매자를 대신하여 VAT를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와 신고 절차들을 포함함

- 매입자부가세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 분할납부제도(split payment mechanism) 등과 같이 부가세 과세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

 - ▶ 매입자부가세납부제도는 일정 공급에 대해 매입자(소비자)가 스스로 과세당국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며, 공급자는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임
 - ▶ 분할납부제도는 공급자에게 부가세 납부 책임이 존재하나, 공급 대가에서 부가세(혹은 그 일부)는 과세당국 또는 특정 부가세전용계좌로 이체되는 제도임
 - ▶ OECD 회원국 중 부가세 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31개국이며,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¹⁶⁵⁾를 포함하여 총 5개국임

165)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말함

- 개별소비세의 세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송용 유류세, 건강증진 목적으로 담배세를 부과하는 등 점차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됨

 - ▶ 이번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의 알코올음료, 광유(mineral oil), 담배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중점적으로 다룸
 - ▶ 대부분 OECD 회원국의 담배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소비자가격의 50%를 초과하며, 심지어 조세부담률이 80%를 초과하는 국가들은 8곳이 존재함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가. BEPS 관련 법안 확정

[조세동향 18-07호]

- 2018년 6월 27일, 2018년 BEPS 법안[Taxation (Neutrali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 2018]이 확정되었으며, 혼성불일치, 고정사업장, 이자비용, 이전가격 등에 관한 소득세 규정이 개정됨¹⁶⁶⁾

 - ▶ BEPS 법률은 뉴질랜드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이 적정 세금을 납부하고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 BEPS 법률을 통해 연간 2억뉴질랜드달러 상당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2017년 12월에 법안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급(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이하 D/NI결과)과 두 관할 지역에서 모두 공제받는 지급(Double Deduction outcome, 이하 D/D결과)에 대해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을 도입함

 - ▶ BEPS Action 2(혼성불일치 거래효과의 해소)의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임
 -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D/NI결과는 우선규정 도입으로 지급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거래 상대국이 우선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의 소득에 가산하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166)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91, Number 2, *Parliament Passes BPES Bill*, 2018.07.02. 및 뉴질랜드 정부,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0016/latest/DLM7505806.html>(검색일자: 2018. 7. 23)

- ▶ 지급자의 소득과 수취자의 소득에서 모두 공제되는 D/D결과는 우선규정 도입으로 혼성불일치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모회사의 소득에 가산하고, 모회사에서 소득에 가산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 조세회피 의도를 갖고 외국 법인이 뉴질랜드 소재 관계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관계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 ▶ 국내나 국외에서의 소득세 감축을 목적으로 외국 법인이 관계회사인 뉴질랜드 내국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 법인을 위한 판매 활동을 수행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뉴질랜드에 외국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 ▶ 전 세계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0백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만 적용함
 - ▶ 이는 BEPS Action 7(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의 대리인에 대한 권고사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도입 취지가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Action 7과 동일함
- 금융거래와 관계회사 간 대부거래에 적용할 적정 이자율을 제시하여 관계회사 사이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함
 - ▶ 거주자나 내국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10백만뉴질랜드달러 이상을 대출받고,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신용등급에 기반한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내국 법인의 이자율은 그룹 내 제3자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아래(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2단계 아래)의 신용등급을 적용함
 - ▶ 이는 관계회사 간 이자비용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어 취지는 BEPS Action 4(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와 관련 있으나,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과 일치하지는 않음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의 기준인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기존 '부채/총자산'에서 '부채/순자산'으로 변경하여 과소자본세제 기준을 강화함
 - ▶ 기존 뉴질랜드 과소자본세제는 비거주자가 지배(50% 이상 지분 보유)하는 뉴질랜드 내국 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적용하며, 그룹 부채비율(a New Zealand entity or group's debt percentage)¹⁶⁷⁾의 60%와 국외지배주주 그룹의 전 세계 부채비율(the worldwide

group's debt percentage)의 110%를 모두 초과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을 불공제함

- ▶ 부채비용 계산에 사용할 자산을 총자산에서 순자산으로 개정한 것임

▣ 그 밖에 국가별보고서, 일반적인 이전가격 규정과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관련 개정사항 등이 포함됨

-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BEPS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사업연도 부터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그룹 매출액이 750백만유로 이상이면 국가 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2017년 OECD의 이전가격지침서(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맞춰 뉴질랜드 이전가격 기준을 조정함
 - 특히 계약관계와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전가격 거래구조를 부인 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뉴질랜드 국세청은 10월 25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s) 개정안을 발표함¹⁶⁸⁾

- ▶ 세액공제액: 적격연구개발비(eligible expenditure)의 15%(기존은 12.5%)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자격 최소 지출액은(minimum threshold) 5만뉴질랜드달러이며, 최대 1억 2천만뉴질랜드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¹⁶⁹⁾
 -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 적격연구개발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향상된 프로세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창출하고,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활동 등에 지출된 금액으로 연구개

167) 내국 법인이 속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총부채/총자산

168) 뉴질랜드 국세청, <http://taxpolicy.ird.govt.nz/news/2018-10-25-rd-tax-bill-introduced>(검색일자: 2018. 11. 16)

169) 1뉴질랜드달러=767원(2018. 11. 26. 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받을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 임금, 자산, 소모품 비용 및 간접비 등을 포함함

- ▶ 기업 적격성 심사: 내국 법인(상장기업은 제외)
- ▶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5만 5천뉴질랜드달러까지 환급 가능
 - 당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적격연구개발비는 환급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인력비가 최소 총임금지출액의 20%는 충족해야 함
- ▶ 시행일: 2019/2020년 회계연도

다. 역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부여에 대한 법안 발표

[조세동향 18-12호]

- 뉴질랜드 의회는 12월 5일 온라인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간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이 있는 역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GST)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함¹⁷⁰⁾
 - ▶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재화거래에 해당되며, 역외 사업자는 비거주자로 재화는 공급 당시 뉴질랜드 역외에서 제공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1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동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2 중국

가. 영세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확대

[조세동향 18-08호]

- 중국 재무부는 2018년 7월 11일, 영세기업과 과학·기술 관련 기업에 조세혜택을 제공

170) 뉴질랜드 의회, <http://taxpolicy.ird.govt.nz/>(검색일자: 2018. 12. 17)

하는 통지(Circular No.76, 77)를 발표함

- ▶ 영세기업에 대해 실효세율을 낮추는 조세혜택을 연장하고, 첨단산업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 영세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로 연장함과 동시에 영세기업 판단 기준을 개정함¹⁷¹⁾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세기업은 과세소득의 50%만 과세하고, 과세소득에 경감세율 20%를 적용하여 실효세율이 10%가 되도록 함
 - ▶ 중국은 세법개정을 통해 2008년 1월부터 소기업의 과세소득에 2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경감세율 적용 외에 과세소득의 50%만 과세하도록 조세혜택을 확대하고¹⁷²⁾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함¹⁷³⁾
 - 일몰기한 연장과 동시에 영세기업 판단 기준 또한 개정해옴¹⁷⁴⁾
- 영세기업은 과세소득, 종업원 수, 총자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 공업기업(industrial enterprise)과 기타 산업 간 영세기업 판단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번 발표에서는 과세소득 기준을 인상하여 영세기업 대상을 확대함
 - ▶ 과세소득 기준을 기존 50만위안화 미만에서 1백만위안화 미만으로 인상함
 - ▶ 개정된 기준에 따른 공업기업과 기타 산업의 영세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업기업: 연간 과세소득 1백만위안화 미만, 총종업원 수 100명 미만, 총자산 3천만위안화 미만
 - 기타 산업: 연간 과세소득 1백만위안화 미만, 총종업원 수 80명 미만, 총자산 1천만위안화 미만

171) China(People's Rep.) - Tax incentive for small low-profit enterprises extended(17 July 2018), News IBFD.

172) EU SME Centre, Guideline: China Enterprise Income Tax, 2012.

173) 각 연도별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 2016, 2017, 2018 참조

174) 2017년 이전에는 과세소득이 30만위안화 미만인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과세소득이 50만위안화 미만인 경우 영세기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자료: 각 연도별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 2016, 2017, 2018 참조)

〈표 III-1〉 중국의 과학기술기업 판단 기준

고급·신규 기술 기업(HNTEs)	과학기술 중소기업(TS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된 지 1년 이상 •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 R&D, 매매, 증여, 합병 등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권 보유 • 기업의 주요 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로 정부에서 정한 기술에 해당 •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어야 함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5% 이상이어야 함. 작년 연간매출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위안화 미만인 경우: 5% - 5천만위안화~2억위안화인 경우: 4% - 2억위안화 이상인 경우 3% • 총연구개발비용 중 중국에서 발생한 비용이 60% 이상이어야 함 • 안전, 품질 또는 환경 관련 법의 위반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주기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 종업원 수 500명 이하 •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총자산 2억위안화 이하 •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은 주법에 의해 금지·제한되지 않음 • 안전·품질 사고,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음 • 과학연구 관련 불법을 행하지 않고 부정기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중소기업 평가지수에 기초한 기업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학기술 인력 점수는 0점이 되면 안됨 • 중소기업 평가지수 = 과학기술 인력(20점), R&D 투자(50점), 과학기술 성과(30점) 지표 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과학기술 인력 지표는 총직원 수 대비 과학기술인력 비중으로 판단함 • R&D 투자지표는 총매출액 대비 R&D 비용 또는 총비용 대비 R&D 비용으로 판단하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함 • 과학기술성과 지표는 기업 주요 제품의 지적재산권 등급 및 수량으로 판단함(단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없어야 함)

자료: S. (Shiqi) Ma, China (People's Rep.) - Corporate Taxation sec. 1.9.4.5, Country Analyses IBFD. 중국재무부,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7/201705/t20170510_132709.html(검색일자: 2018. 8. 30)

▣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조세혜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영세기업에 대한 세율감면 조세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임

나. 175) 개인소득세 기본소득공제와 세율구간 변경에 관한 통지 발표

[조세동향 18-09호]

▣ 중국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와 세율별 적용되는 월 과세대상소득 구간을 조정하여 9월 7일 발표함

175)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722680/content.html>(검색일자: 2018. 9. 13)

▣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소득공제를 확대함

- ▶ 2018년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실제 취득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소득공제를 5,000위안/월으로 개정함
- ▶ 2018년 9월 30일 이전 취득한 근로소득은 종전 규정(3,500위안/월)에 따름

▣ 중국의 개인소득세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 발표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대상 소득구간을 조정함¹⁷⁶⁾

- ▶ 근로소득의 경우 저세율(3~20%)을 적용받는 1~3등급 소득구간을 확대함
-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역시 저세율(5~10%) 적용구간을 확대함

〈표 III-2〉 개정된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율표

(단위: 위안, %)

	개정 전				개정 후			
	등급	월 과세대상소득	세율	공제액	등급	월 과세대상소득	세율	공제액
근로소득	1	1,500 미만	3	0	1	3,000 미만	3	0
	2	1,500 초과 4,500 미만	10	105	2	3,000 초과 12,000 미만	10	210
	3	4,500 초과 9,000 미만	20	555	3	12,000 초과 25,000 미만	20	1,410
	4	9,000 초과 35,000 미만	25	1,005	4	25,000 초과 35,000 미만	25	2,660
	5	35,000 초과 55,000 미만	30	2,755	5	35,000 초과 55,000 미만	30	4,410
	6	55,000 초과 80,000 미만	35	5,505	6	55,000 초과 80,000 미만	35	7,160
	7	80,000 초과	45	13,505	7	80,000 초과	45	15,160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등	개정 전				개정 후			
	등급	월 과세대상소득	세율	공제액	등급	월 과세대상소득	세율	공제액
	1	15,000 미만	5	0	1	30,000 미만	5	0
	2	15,000 초과 30,000 미만	10	750	2	30,000 초과 90,000 미만	10	1,500
	3	30,000 초과 60,000 미만	20	3,750	3	90,000 초과 300,000 미만	20	10,500
	4	60,000 초과 100,000 미만	30	9,750	4	300,000 초과 500,000 미만	30	40,500
5	100,000 초과	35	14,750	5	500,000 초과	35	65,500	

자료: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722680/content.html>(검색일자: 2018. 9. 13)

176) 중국의 도급경영이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도급경영자에게 경영 위탁하고 도급경영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운영 위험과 수익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다.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 발표¹⁷⁷⁾

[조세동향 18-10호]

- 중국 국세청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비율 인상에 관한 통지」를 9월 20일 발표함
-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가 가능한 적격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신상품, 신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함¹⁷⁸⁾
 - ▶ 연구개발에 직접 소모한 연료 및 재료, 직접 종사하는 연구 인력의 임금과 수당,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이 공제됨
- 신제품, 기술, 공정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적격연구개발비는 자본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 공제함
 - ▶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 비용에 반영된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실제 발생금액의 75%(현재 50%)를 기준으로 세전 추가 공제함
 - ▶ 무형자산화되는 경우 상기 기간 내에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175%(현재 150%)를 기준으로 세전에 상각처리함

라. 수출재화 증치세 등 환급과정 신속화 조치 및 환급률 조정 발표

[조세동향 18-10호]

- 중국 국세청은 수출재화의 증치세 등 환급과정 신속화 조치를 10월 15일 발표함¹⁷⁹⁾
- 수출기업의 분류와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유형별 평가기준을 조정하고, 관리유형 연도평가 제한을 폐지함

177) China(People's Rep.) - Super deduction for R&D activities increased(21 Sep. 2018), News IBFD(검색일자: 2018. 10. 16)

178)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81362/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0. 29)

179)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10281/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0. 22)

- ▶ 생산기업 평가기준 중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의 수출관세액(면제와 공제세액 불포함)보다 크다’를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의 수출관세액(면제와 공제세액 불포함)의 60%보다 크다’로 변경함
 - ▶ 기존에 수출기업의 관리유형 평가는 1년에 한 번 실시하였으나, 수출기업이 관리유형 조정 신청 시 세무당국은 적시에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15일 이내 평가 및 조정 작업을 완료하도록 변경함¹⁸⁰⁾
- 전자 환급신청서의 완전한 이행과 적극적 수출관세 환급 서비스 수행 등 수출 환급행정 절차의 조치를 시행함
- ▶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자 환급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이 적시에 편리하게 수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에 환급 신고, 심사, 신고 기한 등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
 - ▶ 중국 국세청에 의하면 해당 조치를 통해 세금환급 처리 시간이 평균 13일에서 1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함
-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11월 1일부터 수출재화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함¹⁸¹⁾
- ▶ 증치세 기본 세율은 16%로 수출재화 증치세를 면세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함
 - ▶ 일부 품목의 수출재화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라 1,172개 품목의 환급률이 인상됨

〈표 III-3〉 주요 환급률 조정 품목

(단위: %)

주요 품목	환급률
종이, 플라스틱 제품, 강화안전 유리, 램프 등	16
윤활유, 항공기 타이어, 탄소섬유 등	13
일부 농산물, 벽돌, 타일, 유리섬유 등	10
기존 환급률 9%에 해당하는 수출재화	10
기존 환급률 15%에 해당하는 수출재화	16

자료: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43788/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0. 29)

180) 중국은 수출기업을 수출환급 세무위험 통제 시스템 확립 여부, 기업 운영기간, 인보이스 오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함

181)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43788/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0. 29)

마.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에 관한 통지 발표¹⁸²⁾

[조세동향 18-11호]

- 중국 국세청은 「환경보호세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에 관한 통지’를 10월 25일 발표함

 - ▶ 중국의 환경보호세는 기존에 시행하던 환경보호비를 환경보호세로 전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종류를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산업 소음으로 구분하여 과세함¹⁸³⁾

 - ▶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생산경영자가 납세의무자임
 - ▶ 과세 기준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임
 - ▶ 오염물질의 당량(當量)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함¹⁸⁴⁾

〈표 III-4〉 중국의 환경보호세율

구분	세금 단위	세율	
대기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2위안	
수질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량	1.4위안	
고체 폐기물	석탄 맥석(煤矸石)	5위안/톤	
	미광(尾矿)	1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분말연탄재, 슬래그, 기타(반고체, 액체폐기물 포함)	25위안/톤	
산업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dB	월 350위안
		4~6dB	월 700위안
		7~9dB	월 1,400위안
		10~12dB	월 2,800위안
		13~15dB	월 5,600위안
		16dB	월 11,200위안

182)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50019/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1. 12)

18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7-10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중국-환경보호세-도입-예정/525141(검색일자: 2018. 11. 21)

184) 「환경보호세법」 제24조: 오염당량은 오염물질의 환경유해성 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 단위를 의미함

▣ 대기 오염물질의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여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기로 함¹⁸⁵⁾

- ▶ 석면 분진, 유리섬 분진, 카본블랙 분진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고, 비산 먼지, 공업 분진 등은 일반 분진으로 간주하여 환경보호세를 부과함

〈표 III-5〉 대기 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

오염물질	오염당량치(kg)	오염물질	오염당량치(kg)
1. 이산화유황	0.95	23. 자일렌	0.27
2. 질소산화물	0.95	24. 벤조아필렌	0.000002
3. 일산화탄소	16.7	25. 포름알데히드	0.09
4. 염소가스	0.34	26. 아세트알데히드	0.45
5. 염화수소	10.75	27. 아크릴알데히드	0.06
6. 불화물	0.87	28. 메탄올	0.67
7. 시안화수소	0.005	29. 페놀류	0.35
8. 황산 미스트	0.6	30. 아스팔트 증기	0.19
9. 크롬산 미스트	0.0007	31. 아닐린류	0.21
10. 수은 및 수은 화합물	0.0001	32. 클로로벤젠류	0.72
11. 일반 분진	4	33. 니트로벤젠	0.17
12. 석면 분진	0.53	34. 아크릴로니트릴	0.22
13. 유리섬 분진	2.13	35. 클로로에틸렌	0.55
14. 카본블랙 분진	0.59	36. 포스겐	0.04
15. 납 및 납 화합물	0.02	37. 황화수소	0.29
16.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0.03	38. 암모니아	9.09
17.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0.0004	39. 트라이메틸아민	0.32
18. 니켈 및 니켈 화합물	0.13	40. 메틸메르캅탄	0.04
19. 주석 및 주석 화합물	0.27	41. 디메틸설파이드	0.28
20. 검댕	2.18	42. 디메틸디설파이드	0.28
21. 벤젠	0.05	43. 스티렌	25
22. 툴루엔	0.18	44. 이황화탄소	20

자료: 중국 전인대, http://www.npc.gov.cn/npc/flcazqyj/2016-09/02/content_1996531.html(검색일자: 2018. 11. 16)

185)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850019/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1. 12)

바. 개인소득세 특별공제항목 신설 발표¹⁸⁶⁾

[조세동향 18-11호]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특별소득공제항목 개정안’을 10월 20일 발표함

 - ▶ 2019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특별소득공제항목은 자녀교육비공제, 본인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중병 치료비), 생애 첫 주택 대출이자공제, 주택임대료공제, 노인부양지출비공제임
 - 현재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거공적지원금의 특별소득공제 항목만 시행되고 있음
- 자녀교육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자녀 1인당 유아교육에서 대학원까지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¹⁸⁷⁾을 공제할 수 있음

 - ▶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육비에 해당됨
- 본인교육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학위과정 교육비 지출에 대해 연간 4,800위안(약 78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 기능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출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3,600위안(약 5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개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중 1만 5천위안(약 24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연간 6만위안(약 9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 ▶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에 사회의료보험 시스템에 기록된 1만 5천위안을 초과하는 개인 부담 치료비 중 중병 치료를 위한 지출에 대해 공제할 수 있음
- 생애 첫 주택 대출이자공제는 납세의무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적립금을 이용하여 첫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 ▶ 대출상환 기간 동안 매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186) 국세청, <http://hd.chinatax.gov.cn/hudong/noticedetail.do?noticeid=1701566>(검색일자: 2018. 11. 15)

187) 1위안=162원(2018. 11. 26. 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 무주택 납세의무자는 임대주택 소재지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두어 주택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 직할시, 성회(省會)도시 등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1만 4,400위안 (약 233만원)임
 - ▶ 직할시와 성회도시 등을 제외한 인구가 100만을 초과하는 기타 도시의 주택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1만 2천위안(약 194만원)임
 - 인구가 100만 미만 도시의 주택임대료 공제한도는 연간 9,600위안(약 155만원)임
- 납세의무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등 법정 부양가족의 부양비용을 노인부양지출비공제 항목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 납세의무자가 외동일 경우 연간 2만 4천위안(약 389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함
 - 납세의무자가 외동이 아닐 경우 형제자매와 2만 4천위안을 분할하여 각각 공제 가능함

사.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 적용에 관한 통지 발표¹⁸⁸⁾

[조세동향 18-12호]

- 중국 국세청은 국무원의 ‘사회적 신의성실 확립과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실행하고, 위법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을 제정하여 발표함
-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 납세자가 장부 등 세무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은닉 등 조세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이 100만 위안(약 1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¹⁸⁹⁾
 - ▶ 미납부세액이 있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세금추징을 방해하고, 그 미납부세액이 10만위안(약 1,600만원) 이상인 경우

188)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14071/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2. 13)

18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1위안=164원) 환율 적용(2018. 12. 17)

- ▶ 세금계산서를 100장 이상 또는 40만원(약 6,600만원)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 ▶ 탈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중 도피가 확인된 경우
-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주요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성(省) 과세관청 홈페이지와 공유하도록 함
- ▶ 납세자 번호, 이름, 성별, 신분증번호
 - ▶ 법인의 경우 해당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주소지, 법정대표인 등
 - ▶ 주요 위법 사실, 세무처리 및 처벌 상황 등
-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아.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상향 조정¹⁹⁰⁾

[조세동향 18-12호]

- 중국 국세청은 관세의 경우 '0'세율 적용 및 수입 증치세, 소비세 경감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함
- ▶ 단일 거래 1건당 금액한도는 현행 2천위안(약 33만원)에서 5천위안(약 8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 연간 거래금액 한도는 현재 2만위안에서 2만 6천위안으로 상향함
 - 관세포함 가격이 단일거래 한도금액인 5천위안을 초과하지만, 연간 한도금액인 2만 6천위안보다는 낮고 단 1개의 상품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창구에서 수입할 수 있음
 - ▶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별 한도 내에서 관세의 경우 '0'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납부세액의 70%를 부과함¹⁹¹⁾
-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매 수입제품이 허용되는 시범지역이 기존 15개에서 22개로 확대됨¹⁹²⁾

190)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29562/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2. 14)

191) 해외 전자상거래 한도금액에 따른 세계혜택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됨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044092/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2. 24)

- ▶ 상하이, 톈진, 항저우, 광저우 등 기존 15개 지역에서 베이징, 난징, 우한, 시안, 샤먼, 선양 7개 도시를 추가하여 22개 도시에 적용하기로 함
- ▣ 소비수요가 높아진 스파클링 와인, 맥아맥주, 피트니스 장비 등 63개 상품을 추가하여 소매 수입목록은 총 1,321개로 확대됨¹⁹³⁾
- ▣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3 호주

가. 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국회 제출

[조세동향 18-07호]

- ▣ 호주 정부는 2018년 5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원에서 검토 중임¹⁹⁴⁾
 - ▶ 2018년 1월 호주 정부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발표했으며¹⁹⁵⁾ 2018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하원에서 검토하면서 일부 규정이 수정됨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 현재 하원의 검토를 마치고 상원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함
-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D/NI결과, 동일 납세자가 두 관할 지역에서 모두 공제받는 D/D결과와 이전 혼성불일치(imported mismatches) 거래로 인해 간접적으로 D/NI결과가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을 소개

192) 국무원, http://www.gov.cn/guowuyuan/2018-11/21/content_5342252.html(검색일자: 2018. 12. 24)

193)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29521/content.html>(검색일자: 2018. 12. 21)

194) 호주 정부,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Other-topics/International/Implementation-of-the-OECD-hybrid-mismatch-rules/> 및 호주 국회,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page=0;query=BillId%3Ar6116%20Reconstruct%3Abillhome>(검색일자: 2018. 7. 31)

195) 조세동향, “호주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입법 초안 발표,”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호주-혼성불일치-해소를-위한-입법-초안-발표/525236(검색일자: 2018. 1. 5)

하였음

- ▶ D/NI결과의 경우 지급자의 공제를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가산함
 - ▶ D/D결과의 경우 모회사의 관할국에서 지급을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하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 ▶ 이전 혼성불일치 거래의 경우 지급자의 지급을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함
- 또한 다국적기업이 혼성불일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도관체를 설립하고 거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에서 성실조항(integrity provision)을 마련하고, 호주 내국 법인의 비용공제를 제한함
- ▶ 성실조항은 호주와 최종모법인의 거주국 사이에 도관체를 설립하여 호주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이나 파생상품 비용 등이 도관체에 귀속되도록 거래를 구성하여, 호주에서는 과세소득으로 공제받고 도관체가 소재한 경유국에서는 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임
 - ▶ 도관체는 호주에서 지급한 동일 지급액에 대해 1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장 높은 부담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로, 혼성불일치를 통한 조세회피가 목적인 법인임
 - 도관체의 주된 목적을 고려할 때 도관체가 실질적인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가와 호주 내국 법인으로부터 비용 지급 대가로 제공된 서비스(금융서비스 등)가 실제 존재하는가를 조사함

나. 과소자본세제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호주 재무부는 2018년 8월 1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개정안을 발표함¹⁹⁶⁾

196) Australia - Proposed changes to thin capitalization(03 Aug. 2018), News IBFD;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alias-treasury-releases-draft-law-on-thin-capitalization-asset-valuations-and-inbound-outbound-measures>(검색일자: 2018. 8. 29)

- ▶ 동 개정안은 호주의 2018~2019년 연방예산 후속 조치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될 예정임

■ 호주의 과소자본세제는 타인자본(부채 자금조달)을 활용한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로 세원잠식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부채 대 자본 비율이 1.5:1을 초과하는 법인의 초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공제를 불허함

- ▶ 금융업의 경우 15:1의 부채 대 자본 비율까지 허용함

$$\text{이자비용 불공제액} = \text{전체 이자비용} \times \frac{\text{초과 부채가액}}{\text{연중 평균 부채가액}}$$

- ▶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이자비용 불공제액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음

■ 본 개정안은 과세자본세제 적용과 관련한 (1) 자산의 재평가와 (2) 부채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함

■ 기존 규정은 자산의 재평가를 인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과소자본세제 목적상 자산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자산 재평가는 허용되지 않음

- ▶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18~2019년 연방예산 공포일인 2018년 5월 8일 이전에 재평가된 부분은 인정됨

■ 기존 규정은 재무제표상 채무(financial liabilities)로 계상된 금액만을 과소자본세제 목적상 부채로 인식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재무제표상 분류에 상관없이 그 성격상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수단을 부채로 간주함

- ▶ 부채에 대한 재평가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사용하여야 함
- ▶ 법률 및 세무자문 비용, 인지세, 관련 신고비용 등 부채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세무목적상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융수단은 과소자본세제 계산 시 부채에 포함하여야 함

다. 원천징수불이행 관련 비용공제 부인 법안 발표

[조세동향 18-08호]

- 호주는 2018년 7월 23일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급분에 대해서 손금부인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¹⁹⁷⁾

 - ▶ 동 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될 계획임
- 동 법안에 따르면 종업원, 임원, 종교단체, 사업자 등에게 임금 또는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호주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원천징수세 과소납부 같은 단순 계산착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상기의 이유로 손금불산입된 비용은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고, 해당 원천징수세를 다시 신고·납부하는 경우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세무조사 중에 적발된 사항은 다시 신고·납부할 수 없음

라. 법인세 경감세율 적용 대상 제한 법안 총독 재가¹⁹⁸⁾

[조세동향 18-09호]

- 법인세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entities)의 매출액 기준을 변경하고 수동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법인세 경감세율 개정 법안이 2018년 8월 31일 총독의 재가를 받음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2,500만호주달러에서 2018~2019년도에는 5천만호주달러로 인상되고, 수동소득(passive income) 보유 제한 기준이 적용됨

 - ▶ 법인세 경감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수동소득은 80% 미만이어야 하며, 동 규정은 2017/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3/2024년도까지 적용됨

197) Australia - Proposed non-deductibility rules on withholding tax payments not paid(07 Aug. 2018), News IBFD.

19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latest-news-on-tax-law-and-policy/>(검색일자: 2018. 9. 14)

- 배당금, 이자소득, 로열티 및 임대료 등이 수동소득임

- ▶ 향후 10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점차 인하될 예정이며, 2026/2027년 과세연도에는 25% 세율이 적용됨

〈표 III-6〉 호주의 법인세율

(단위: 호주달러, %)

연도	대기업 법인세율	중소기업 법인세율	
		매출액(AUD)	세율
2017/2018	30.0	2,500만 미만	27.5
2018/2019년부터 2023/2024		5,000만 미만	27.5
2024/2025		5,000만 미만	27.0
2025/2026		5,000만 미만	26.0
2026/2027		5,000만 미만	25.0

마. 혼성불일치 해소 규정 의회 통과¹⁹⁹⁾

[조세동향 18-09호]

- 호주 의회는 혼성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OECD 권고사항에 따라 8월 16일 동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혼성불일치 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 ▶ 이번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전 혼성불일치 규정(Imported mismatch rule)은 예외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해당 지급이 비용으로 공제되나, 지급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D/NI)

 - ▶ 지급자의 공제를 부인(지급자 공제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령자의 정상소득에 가산(수취자 익금산입)함

199) tax notes(2018, 8, 27), Australian Parliament Passes OECD Hybrid Mismatch Rules

- 두 관할 지역의 동일한 납세자가 이중공제되는 경우(Double Deduction outcome: D/D)

 - ▶ 모법인의 관할국에서 이중공제를 부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차감한 지급을 부인하도록 함

- 이전 혼성불일치 거래(imported mismatches)로 간접적으로 D/DI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 지급자의 지급을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함

- 다국적기업이 혼성불일치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관체를 설립하고, 거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성실조항(integrity provision)을 도입함

 - ▶ 성실조항은 호주와 최종모법인의 거주국 사이에 도관체를 설립하고 호주 내에서 지급한 이자비용 또는 파생상품 비용이 도관체에 귀속되도록 거래를 구성하여 호주에서 과세소득으로 공제받고, 도관체 소재지국에서는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
 - 도관체는 혼성불일치를 통한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인 법인으로, 호주에서 지급한 동일 지급액에 대해 1개국 이상의 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장 높은 세율부담이 10% 이하인 경우임

4 홍콩 - BEPS 및 이전가격 규정 확정

[조세동향 18-07호]

- 2018년 7월 4일 홍콩에서 BEPS 및 이전가격 법안(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transfer pricing Bill)이 확정되었으며, 7월 13일 재무부가 고시함²⁰⁰⁾

 - ▶ BEPS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의 권고사항인 마스터파일, 로컬 파일과 국가별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법률에서 규정함
 - ▶ 그 밖에 BEPS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권고사항인 실질활동 요건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서의 제안을 법률에 반영함

200)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ppr/archives/18071302.htm>, 및 EY, Hong Kong passes tax and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to counter BEPS,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hong-kong-passes-tax-and-transfer-pricing-legislation-to-counter-beps>(검색일자: 2018. 7. 31)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연결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68억홍콩달러 이상인 경우 홍콩 내 거주자인 다국적기업의 본사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다국적기업에 속한 홍콩 내국 법인은 최종모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 홍콩은 과세당국 간 다자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참여함²⁰¹⁾

- 납세자의 사업규모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를 초과한 홍콩 내국 법인은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 이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4억홍콩달러 이하, 총자산 3억홍콩달러 이하와 평균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부합하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이 면제됨
 -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기준에 따르면 각 거래 유형별로 2억홍콩달러 상당의 재산(금융자산과 무형자산 제외)을 이전, 1억 1천만홍콩달러 상당의 금융자산 이전, 1억 1천만홍콩달러 상당의 무형자산 이전과 그 밖의 4천 4백만홍콩달러 상당의 거래 이하인 경우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이 면제됨

- BEPS프로젝트 Action 5의 유해조세제도나 EU의 비협조적 세금관할 구역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OECD에서 제안한 “실질적 활동 요건”에 부합하도록 홍콩의 관련 제도를 개정함

 - ▶ 기업 자금 센터(Corporate Treasury Center: CTC), 재보험(reinsurance business) 및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business), 선박업(shipping business), 항공리스, 항공리스 관리산업에 제공되는 조세혜택에 대해 홍콩 내에서의 실질적 활동을 추가함
 - ▶ 실질적 활동 여부를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필요한 자질을

201) OECD,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MCAA-Signatories.pdf>
(검색일자: 2018. 7. 31)

갖추고 홍콩 내에서 풀타임으로 업무한 직원 수, 홍콩에서 실제 발생한 운영 비용 등임

- 한편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 사용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서가 제안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 ▶ 주요 내용은 홍콩 내 거주자가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 사용에 공헌하였으나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이 해외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홍콩 내 거주자가 공헌한 부분에 대한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그 밖에 상호합의와 중재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기한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면서 공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기준을 강화함

IV 기타

1 멕시코 - 디지털세 도입안 발표

[조세동향 18-11호]

- 멕시코 의회는 2018년 11월 현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 중임²⁰²⁾
-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목으로 디지털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추가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과세함²⁰³⁾

 - ▶ 하지만 디지털서비스 이용으로 이용자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과세대상 활동이라는 정의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없으며, 디지털세 과세 근거는 논쟁의 여지가 존재함
- 과세대상자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멕시코 거주자 및 멕시코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임

 - ▶ 디지털세 과세대상 서비스는 디지털 광고 제공, 온라인플랫폼 운영,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용자데이터 전송 서비스임
- 디지털세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3% 세율로 과세함²⁰⁴⁾

 - ▶ 디지털세는 1억멕시코페소(약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과세함
- 디지털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인지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발견하지 못함

202) Mexico - Proposal for taxation of digital economy under discussion(08 Nov. 2018), News IBFD.

203)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6384a5f-b664-4886-b9d0-bc06ae05b9b0>(검색일자: 2018. 11. 27)

204) 상동

2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전자서비스 관련 부가세 과세 수정안 발표²⁰⁵⁾

[조세동향 18-11호]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24일, 전자서비스 관련 부가세 과세 수정안을 발표함
- 부가세 과세대상인 전자서비스의 범위를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대리인, 전자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함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²⁰⁶⁾

 - ▶ B2B, B2C 거래 과세대상임
 - ▶ 교육, 통신, 관계회사 간 거래, 면세서비스²⁰⁷⁾에 대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지라도 부가세 과세를 제외함
-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다음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 VAT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 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주자인 경우
 -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등록된 은행으로부터 용역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 ▶ 전자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소재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경우
 - ▶ 과세대상 용역대가가 12개월 동안 총 100만랜드(ZAR, 원화 약 8천만원)를 초과한 경우²⁰⁸⁾
- 상기 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05)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0-29_zs_1.html&WT.z_nav=Navigation(검색일자: 2018. 11. 19)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za>(검색일자: 2018. 11. 19)

KPMG,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xx/pdf/2018/11/tnf-sa-nov15-2018.pdf>(검색일자: 2018. 11. 19)

206) 해설에 따르면, 인적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금(using minimal human intervention) 제공되는 전자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함, 따라서 해외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자문 또는 법률적 조언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 전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최소한의 인적개입’의 개념을 부가세 과세법안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해설을 통해 설명하였기에 논쟁의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207)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 등

208) 이번 개정으로 과세기준점이 총용역대가 5만랜드(ZAR)에서 100만랜드(ZAR)로 상향됨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8년 제2호

2018년 12월 31일 인쇄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